목 차

정 정 신 고 (보고) 1
투 자 설 명 서 26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33
【 본 문 】 34
요약정보 34
1. 핵심투자위험 34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2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4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44
1. 공모개요 44
2. 공모방법 4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49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66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77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80
Ⅲ. 투자위험요소 81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32
Ⅴ. 자금의 사용목적 162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65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166
Ⅰ. 회사의 개요 166
1. 회사의 개요 166
2. 회사의 연혁 169
3. 자본금 변동사항 170
4. 주식의 총수 등 171
5. 의결권 현황 172
6. 배당에 관한 사항 172
Ⅱ. 사업의 내용 174
Ⅲ. 재무에 관한 사항 216
1. 요약재무정보 216
2. 연결재무제표 218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22
4. 재무제표 268
5. 재무제표 주석 274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303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315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317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317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321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325
Ⅵ. 주주에 관한 사항 326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330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330
2. 임원의 보수 등 333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335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336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38
【 전문가의 확인 】.....345
1. 전문가의 확인.....345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345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9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9월 11일

3. 정정사유 : 발행조건 및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 : 24,500원~28,0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 99,995,770,000원 ~ 114,280,880,000원 희망공모가액 : 24,500원~28,000원	모집(매출)가액 : 26,000원 모집(매출)총액 : 106,117,960,000원 확정공모가액 : 26,000원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3)	주3)
	주4)	주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5)	주5)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6)	주6)
Ⅲ.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가.	주7)	주7)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주8)	주8)
	주9)	주9)
Ⅴ. 자금의 사용목적	주10)	주10)

주1)

[정정 전]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4,081,460	500	24,500	99,995,77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4,081,460	99,995,770,000	1,749,936,55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09.17 ~ 2018.09.18	2018.09.20	2018.09.17	2018.09.19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4,5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8년 09월 1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8년 09월 17일 ~ 18일 (2일간)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경우 일반청약자가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18년 6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년 8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4,081,460	500	26,000	106,117,96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4,081,460	106,117,960,000	1,841,769,4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09.17 ~ 2018.09.18	2018.09.20	2018.09.17	2018.09.19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확정**공모가액인**26,000원**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8년 09월 1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8년 09월 17일 ~ 18일 (2일간)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경우 일반청약자가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18년 6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년 8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주2)

[정정 전]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 고
일반공모	3,265,168주	8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816,292주	20.0%	우선배정
합계	4,081,46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816,292주	20.0%	24,500원	19,999,154,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816,292주	20.0%		19,999,154,000원	-
기관투자자	2,448,876주	60.0%		59,997,462,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합계	4,081,460주	100.0%		99,995,77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4,081,460주	100.0%	24,500원	99,995,770,000원
합계		4,081,460주	100.0%		99,995,77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816,292주(20.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	미래에셋대우	816,292주	100.0%	24,500원	19,999,154,000원
합계		816,292주	100.0%		19,999,154,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6)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9)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하에 개별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4,5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정 후]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 고
일반공모	3,265,168주	8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816,292주	20.0%	우선배정
합계	4,081,46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816,292주	20.0%	26,000원	21,223,592,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816,292주	20.0%		21,223,592,000원	-
기관투자자	2,448,876주	60.0%		63,670,776,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합계	4,081,460주	100.0%		106,117,96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4,081,460주	100.0%	26,000원	106,117,960,000원
합계		4,081,460주	100.0%		106,117,96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816,292주(20.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	미래에셋대우	816,292주	100.0%	26,000원	21,223,592,000원
합계		816,292주	100.0%		21,223,592,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주6)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9)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하에 개별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26,0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는 발행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4,5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하나제약㈜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는 발행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4,5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	**26,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하나제약㈜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기재사항 없음)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47	20	69	296	15	127	674
수량	52,756,000	2,708,000	12,813,000	52,135,000	22,088,381	106,053,000	248,553,381
경쟁률	21.54 : 1	1.11 : 1	5.23 : 1	21.29 : 1	9.02 : 1	43.31 : 1	101.50 : 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4	1,704,000	2	8,000	5	3,224,000	29	15,391,000	-	-	49	76,836,000	89	97,163,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44	19,053,000	6	2,537,000	19	5,045,000	66	21,920,000	-	-	16	16,000	151	48,571,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1	10,000	1	11,000	3	9,000	11	4,922,000	-	-	3	7,200,000	19	12,152,000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10	305,000	1	37,000	3	18,000	11	190,000	-	-	7	9,000	32	559,000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51	14,208,000	7	59,000	24	4,022,000	120	4,437,000	-	-	5	55,000	207	22,781,000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1	2,448,000	-	-	1	98,000	-	-	-	-	-	-	2	2,546,0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1	15,000	2	44,000	2	4,000	6	64,000	-	-	-	-	11	127,000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6	3,985,000	1	12,000	6	338,000	27	1,021,000	1	2,448,000	7	7,000	58	7,811,000
밴드하단미만	16	10,893,000	-	-	5	35,000	20	4,146,000	-	-	-	-	41	15,074,000

미제시	3	135,000	-	-	1	20,000	6	44,000	14	19,640,381	40	21,930,000	64	41,769,381
합계	147	52,756,000	20	2,708,000	69	12,813,000	296	52,135,000	15	22,088,381	127	106,053,000	674	248,553,38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28,000원 초과	89	97,163,000	39.09%
26,000원 초과 28,000원 이하	203	61,283,000	24.66%
24,500원 초과 26,000원 이하	219	25,453,000	10.24%
24,500원 이하	99	22,885,000	9.21%
가격미제시	64	41,769,381	16.80%
합계	674	248,553,381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구분	신청수량(주)	비고
6개월 확약	270,000	-
3개월 확약	-	-
1개월 확약	30,000	-
15일 확약	-	-
합계	300,000	-
총 신청수량 대비 비율(%)	0.1%	-

주) 상기의 확약 신청수량은 수요예측 참여결과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배정내역은 이와는 상이합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5)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4,081,46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4,500원 (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99,995,77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7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8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8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8년 09월 20일

주1)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하나제약㈜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9월 2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전 영업일(2018년 9월 19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9월 2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④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 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4,081,46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4,500원 (주1)
		확정가액	26,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99,995,770,000원
		확정가액	106,117,960,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7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8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8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8년 09월 20일

주1)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하나제약㈜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9월 2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전 영업일(2018년 9월 19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9월 2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④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 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1,749,936,550	-
	합계	1,749,936,550	

주)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1,841,769,400원	-
	합계	1,841,769,400원	

주)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주7)

[정정 전]

(전략)

【 하나제약㈜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34,11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8.3% ~ 18.0%
공모희망가액 밴드	24,500원 ~ 28,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	-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후략)

[정정 후]

(전략)

【 하나제약㈜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34,11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8.3% ~ 18.0%
공모희망가액 밴드	24,500원 ~ 28,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	26,000원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후략)

주8)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제약㈜가 협의하여 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공모희망가액	24,5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	-
확정 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하나제약㈜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요예측을 실시한 이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인 하나제약㈜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제약㈜가 협의하여 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공모희망가액	24,5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	**26,000원**
확정 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하나제약㈜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9)

[정정 전]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하나제약㈜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제약㈜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34,11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8.3% ~ 18.0%
공모희망가액 밴드	24,500원 ~ 28,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	-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정 후]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하나제약㈜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제약㈜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34,11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8.3% ~ 18.0%
공모희망가액 밴드	24,500원 ~ 28,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	26,000원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하였습니다.

주10)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모집 및 매출총액 (1)	99,996
발행제비용(2)	1,951
매출대금(3)	-
순조달금액 [(1)-(2)-(3)]	98,045

주1) 모집총액, 발행 제비용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24,5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4,5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비고
인수수수료	1,749.9	공모금액 500억원 이하 2.0%, 500억원 초과 1.5%	주2)
발행분담금	18.0	공모금액의 0.018%	주3)
등록세	8.2	증가 자본금의 0.4%	-
교육세	1.6	등록세의 20%	-
상장수수료	23.6	1,475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5만원	-
기타 비용	150.0	당사가 부담하는 IR비용 등 제반 비용	-
합 계	1,951.3	-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 제비용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24,5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4,5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 등을 포함한 발행제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대표주관회사에게지급합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시설투자	생산시설의 확장 및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	73,200
연구개발	연구시설 확장 및 장비/인력 투자	14,845
차입금 상환	-	10,000
합 계	-	98,045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24,500원 ~ 28,000원 중 최저가액인 24,500원 기준입니다.

당사 공모자금의 사용 우선순위는 시설투자, 연구개발, 차입금상환 순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의 최저가액인 24,500원에 미달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시설투자자금(1순위)과 연구개발자금(2순위)에 활용할 예정이며, 자금조달의 부족부분은 2019년~2020년에 걸쳐 당사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활용하거나 추가적인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조달자금을 하기 기재한 시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사용시기까지의 조달금액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1) 시설투자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EU-GMP 수준 주사제공장 신축	200	10,000	10,000	20,200
레미마졸람 동결건조라인 증설	-	2,000	5,000	7,000
생산량 확장을 위한 신규 정제, 주사제 생산시설 확충	4,000	2,000	-	6,000
BFS 시스템 도입	8,000	12,000	-	20,000
통합물류시스템 자동화	6,000	14,000	-	20,000
합 계	18,200	40,000	15,000	73,200

당사는 본 공모자금으로 현재 생산시설 중 생산량의 밀집도가 높은 주사제의 신규 공장을 신축하여 EU-GMP 수준의 인증을 받고 당사의 주력 주사제 제품들과 함께 신약 레미마졸람을 대량생산할 예정입니다. 레미마졸람은 동결건조제품으로서 신규 주사제 공장의 2개층을 레미마졸람 전용 동결건조라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기존의 정제, 주사제 및 일부 노후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추가설비를 신규로 도입하여 총 생산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PP(폴리프로필렌) 재질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시 PP용기를 외부에서 매입하여 약품을 주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 및 생산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BFS(Blow-Fill-Seal) 시스템을 도입하여 PP용기 제조에서부터 약품의 주입 및 밀봉까지 원스톱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와 함께,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생산/판매량의 증대로 인해 현재 통합물류시스템의 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시스템의 완전자동화를 통해 물류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고 처리속도를 증대시켜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룰 것이며, 늘어나는 판매물량을 흡수하고 도매상을 통한 거래의 상당부분을 직접거래로 전환함으로써 마진율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센터 확장/이전	-	11,000	-	11,000
우수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개발장비 도입	1,845	2,000	-	3,845
합 계	1,845	13,000	-	14,845

현재 당사의 연구센터는 합성연구에 주력하는 향남중앙연구소와 DDS 및 신약개발에 집중하는 향남R&D 연구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신약개발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HNP-2006', 'HNP-6002', 'HNP-6003'의 연구개발속도를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소화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할 것이며, 현재의 약 66여명의 연구개발인력을 90명까지 늘리고 신규 연구개발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차입금 상환

(단위: 백만원)

차입처	내역	만기	금리	상환예정액	상환예정일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8-11-17	4..14%	495	2018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8-12-31	3.37%	4,505	2018년
하나은행	운영자금대출	2019-08-16	3.70%	1,000	2019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9-09-15	2.43%	1,000	2019년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	2020-06-15	3.07%	500	2019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04-14	3.78%	420	2020년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06-30	3.70%	1,000	2020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10-02	3.03%	1,080	2020년
합 계				10,000	-

당사의 차입금은 2007는 하길공장 건립으로 인해 발생한 차입금이 대부분으로서 2018년 반기 현재 약 214억원입니다. 해당 차입금의 일부를 해소하여 자본비율을 업계수준보다 높이는 동시에 이자비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억제하여 수익성 또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모집 및 매출총액 (1)	106,118

발행제비용(2)	2,045
매출대금(3)	-
순조달금액 [(1)-(2)-(3)]	104,072

주1) 모집총액, 발행 제비용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비고
인수수수료	1,841.8	공모금액 500억원 이하 2.0%, 500억원 초과 1.5%	주2)
발행분담금	19.1	공모금액의 0.018%	주3)
등록세	8.2	증가 자본금의 0.4%	-
교육세	1.6	등록세의 20%	-
상장수수료	24.8	1,475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5만원	-
기타 비용	150.0	당사가 부담하는 IR비용 등 제반 비용	-
합 계	2,045.5	-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 제비용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 등을 포함한 발행제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대표주관회사에게지급합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시설투자	생산시설의 확장 및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	79,200
연구개발	연구시설 확장 및 장비/인력 투자	14,872
차입금 상환	-	10,000
합 계	-	104,072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당사는 조달자금을 하기 기재한 시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사용시기까지의 조달금액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1) 시설투자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EU-GMP 수준 주사제공장 신축	200	13,000	13,000	26,200
레미마졸람 동결건조라인 증설	-	2,000	5,000	7,000
생산량 확장을 위한 신규 정제, 주사제 생산시설 확충	4,000	2,000	-	6,000
BFS 시스템 도입	8,000	12,000	-	20,000
통합물류시스템 자동화	6,000	14,000	-	20,000
합 계	18,200	43,000	18,000	79,200

당사는 본 공모자금으로 현재 생산시설 중 생산량의 밀집도가 높은 주사제의 신규 공장을 신축하여 EU-GMP 수준의 인증을 받고 당사의 주력 주사제 제품들과 함께 신약 레미마졸람을 대량생산할 예정입니다. 레미마졸람은 동결건조제품으로서 신규 주사제 공장의 2개층을 레미마졸람 전용 동결건조라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기존의 정제, 주사제 및 일부 노후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추가설비를 신규로 도입하여 총 생산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PP(폴리프로필렌) 재질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시 PP용기를 외부에서 매입하여 약품을 주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 및 생산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BFS(Blow-Fill-Seal) 시스템을 도입하여 PP용기 제조에서부터 약품의 주입 및 밀봉까지 원스톱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와 함께,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생산/판매량의 증대로 인해 현재 통합물류시스템의 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시스템의 완전자동화를 통해 물류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고 처리속도를 증대시켜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룰 것이며, 늘어나는 판매물량을 흡수하고 도매상을 통한 거래의 상당부분을 직접거래로 전환함으로써 마진율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센터 확장/이전	-	11,000	-	11,000
우수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개발장비 도입	1,872	2,000	-	3,872
합 계	1,872	13,000	-	14,872

현재 당사의 연구센터는 합성연구에 주력하는 향남중앙연구소와 DDS 및 신약개발에 집중하

는 향남R&D 연구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신약개발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HNP-2006', 'HNP-6002', 'HNP-6003'의 연구개발속도를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소화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할 것이며, 현재의 약 66여명의 연구개발인력을 90명까지 늘리고 신규 연구개발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차입금 상환

(단위: 백만원)

차입처	내역	만기	금리	상환예정액	상환예정일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8-11-17	4..14%	495	2018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8-12-31	3.37%	4,505	2018년
하나은행	운영자금대출	2019-08-16	3.70%	1,000	2019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9-09-15	2.43%	1,000	2019년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	2020-06-15	3.07%	500	2019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04-14	3.78%	420	2020년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06-30	3.70%	1,000	2020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10-02	3.03%	1,080	2020년
합 계				10,000	-

당사의 차입금은 2007는 하길공장 건립으로 인해 발생한 차입금이 대부분으로서 2018년 반기 현재 약 214억원입니다. 해당 차입금의 일부를 해소하여 자본비율을 업계수준보다 높이는 동시에 이자비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억제하여 수익성 또한 개선하고자 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2018년 09월 11일

(발 행 회 사 명)

하나제약 주식회사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4,081,460주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106,117,96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8년 09월 11일

2. 모집가액 : 26,000원

3. 청약기간 : 2018년 09월 17일 ~ 2018년 09월 18일

4. 납입기일 : 2018년 09월 2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하나제약㈜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3) 미래에셋대우㈜

-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주 관 회 사 명)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

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지 사항 ♣

"당사", "동사, "회사", "하나제약 주식회사", "하나제약㈜", "하나제약",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하나제약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를 말하며 "미래에셋대우㈜" 또는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회사", "인수인"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인수 업무를 맡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코스피", "코스피시장",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을 말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본・지점망 현황

[미래에셋대우㈜ 본・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콜센터	1588-3322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지점명	도로명 주소
IWC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2 (삼평동, 판교미래에셋센터 5층)
IWC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2·8층 (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IWC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1층 (대치동, 오로라월드빌딩)

IWC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1층 (금남로5가, 미래에셋대우빌딩)
IWC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26, 1·2층 (봉산동, 대성빌딩)
IWC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97, 1·2층 (둔산동, 영남빌딩)
IWC부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2·3층 (수안동, 미래에셋대우빌딩)
IWC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WM강남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강남센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3·4층 (서초동, 홍우빌딩)
관악WM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17, 3층 (봉천동, 동진빌딩)
교대역W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2·3층 (서초동, 삼하빌딩)
금천WM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15, 3층 (독산동, DDS빌딩)
디지털구로WM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2층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반포WM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26, 4층 (반포동, 쌍동빌딩)
방배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95, 1층 (방배동, 서경빌딩)
방배중앙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8, 3층 (방배동, 범양빌딩)
보라매WM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3층 (신대방동, 보라매아카데미타워)
서초남WM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85, 2층 (서초동, 일복빌딩)
신반포WM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4층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중심상가)
역삼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3층 (역삼동, 아주빌딩)
가락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플라자)
강남구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3층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갤러리아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4·5층 (청담동, 더트리니티플레이스)
대치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3층 (대치동, 대원빌딩)
도곡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3층 (도곡동, 삼성SEI타워)
방이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길 10, 3층 (오금동, 삼아빌딩)
송파WM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4, 3층 (석촌동, 대준빌딩)
압구정WM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2층 (신사동, 융기빌딩)
잠실새내역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19, 3층 (잠실동, 잠실파인애플상가)
한티역WM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2층 (대치동, 디마크빌딩)
훼미리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문정프라자)
강릉WM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9, 6층 (임당동, 문선빌딩)
건대역WM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3층 (자양동, 스타시티더클래식500)
광나루WM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5층 (광장동, 대한제지빌딩)
구리WM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 1층 (수택동, 우진빌딩)
동해WM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56, 2층 (천곡동, 동해빌딩)
명일동WM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4, 4층 (명일동, 이화빌딩)
성동WM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34, 3층 (행당동, 나래타워)
속초WM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3, 2층 (교동, 보광빌딩)
올림픽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78, 2층 (방이동, 올림픽선수촌APT상가 C동)
원주WM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6층 (무실동, 정한프라자)
잠실WM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2층 (신천동, 타워730)
장한평WM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1층 (용답동, 금풍빌딩)

청량리W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1층 (청량리동, 성일빌딩)
춘천WM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4, 2층 (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테헤란밸리W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1·2층 (대치동, 해성빌딩)
WM센터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35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광화문WM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2층 (당주동, 로얄빌딩)
노원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4층 (상계동, 교보빌딩)
돈암동WM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2, 2층 (동소문동5가, 강윤빌딩)
마포WM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2층 (공덕동, S-oil빌딩)
명동WM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3길 6, 6층 (명동1가, 개양빌딩)
상계WM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7, 1·2층 (상계동, 은성빌딩)
상암WM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6층 (상암동, 전자회관빌딩)
서울역WM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2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센터원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B1층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수유WM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5, 3층 (수유동, 수성타워)
신촌W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67, 2층 (창천동, 거촌빌딩)
용산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3층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용산타워WM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3층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의정부WM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2층 (의정부동, 구성타워)
일산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 3층 (주엽동, 한솔코아)
일산중앙WM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7, 2층 (주엽동, 화성프라자)
중앙우체국WM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B2층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서울중앙우체국)
홍제동W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64, 2층 (홍제동, 홍제빌딩)
화정W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72, 2층 (화정동, 케이탑리츠빌딩)
강서WM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47, 3층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
강서중앙WM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1, 2층 (화곡동, 원풍빌딩)
개봉동WM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23, 2층 (개봉동, 도루코빌딩)
남인천WM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8, 3층 (구월동, 오아시스빌딩)
목동WM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9, 3층 (목동, 광장종합상가)
목동중앙WM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99, 3층 (목동, 목동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
부천WM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5, 3층 (중동, 금영프라자2차)
부평WM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 5층 (부평동, 금남빌딩)
송도WM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2층 (송도동,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223-227호
신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2층 (노형동, 세기빌딩)
여의도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2층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연수WM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89, 2층 (청학동, 소망빌딩)
영등포W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8, 3층 (영등포동4가, 뉴포트빌딩)
인천WM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72, 1·2층 (신생동, [舊] 미래에셋대우빌딩)
제주W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4, 2층 (일도1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주안WM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07, 3층 (주안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중동W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5층 (중동, 부천농협빌딩)

동탄WM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163, 4층 (반송동, 위너스타)
미금역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3층 (금곡동, 금산젬월드)
분당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26, 1·2층 (서현동, 센트럴타워)
분당우체국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1층 (서현동, 성남분당우체국)
분당중앙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2층 (정자동, 인텔리지I킨스타워)
산본WM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78, 3층 (산본동, 유공프라자)
수원광교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2층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수원W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2층 (인계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수지WM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12번길 11, 4층 (성복동, 성복프라자)
안산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1, 2층 (고잔동, 거풍스카이팰리스)
안산중앙WM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 3층 (고잔동, BYC빌딩)
영통W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0, 2층 (영통동, 밀레니엄프라자)
정자동W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4, 2층 (정자동, 태남프라자)
평촌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층 (호계동, 평촌스포츠센터)
평촌중앙WM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3층 (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A동)
평택WM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5, 2층 (평택동)
경산WM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2층 (중방동, 도륜빌딩)
경주WM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1층 (성동동, KT경주지사)
구미WM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2층 (송정동, KDB산업은행)
대구W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35, 2층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상가)
상인WM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260, 2층 (상인동, 상인프라자)
서대구WM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2, 3층 (감삼동, 죽전메디빌)
서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52, 1층 (무거동, 대로빌딩)
성서WM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4층 (이곡동, 국민연금관리공단빌딩)
안동WM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25, 1층 (동부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울산WM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51, 3층 (달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칠곡WM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11, 2층 (태전동, 스카이빌딩)
포항WM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71, 1층 (죽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포항남WM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8, 1층 (대도동, 태영빌딩)
거제WM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로 54, 2·3층 (옥포동, 아주비즈니스텔)
거제고현WM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925, 2층 (고현동, GJ빌딩)
김해WM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4, 2층 (내동, 밝은메디칼센터)
남천동WM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33, 1층 (남천동, 한진빌딩)
마산WM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2층 (석전동, 무학빌딩)
범일WM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29, 1층 (범일동, 미래에셋대우빌딩)
부산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 1층 (부전동, 부전이빌딩)
북부산WM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9, 2층 (덕천동, 구포빌딩)
사상WM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0, 4층 (괘법동, M-City빌딩)
서면WM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74, 7층 (부전동, 아이온시티빌딩)
센텀시티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2층 (우동, 트럼프월드센텀1차상가)
중앙동WM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5층 (중앙동2가, KDB산업은행빌딩)

진주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6, 3층 (동성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진주중앙WM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8, 2층 (동성동, 동성아트홀)
창원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2층 (중앙동, 미래에셋대우빌딩)
창원시티W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2층 (대원동, 더시티세븐교육문화센터)
창원중앙WM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61번길 4, 1층 (중앙동, 캔버라호텔)
통영WM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대로 33, 2층 (무전동, 동인빌딩)
사하W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3층 (하단동, 삼성전자빌딩)
해운대W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7층 (우동, 마리나센터)
군산WM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70, 2층 (나운동, 유앤미프라자)
대전WM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2층 (은행동, 한솔빌딩)
동대전WM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36, 5층 (송촌동, 대덕메디칼빌딩)
두암동WM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52, 5층 (두암동, 동강빌딩)
둔산WM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2층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목포WM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60, 3층 (상동, 썬시티)
상무W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3층 (치평동, 아주청연빌딩)
서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3층 (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세종WM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205호 (어진동, 중앙타운)
수완WM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40, 2층 (수완동, 동원빌딩)
순천WM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319, 5층 (조례동, 세븐빌딩)
여수WM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1·2층 (학동, KDB산업은행)
온양WM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22, 5층 (온천동, 유엘시티)
익산WM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26, 4층 (어양동, 엘드타운)
전주WM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2층 (서신동, 국민연금전북회관)
제천WM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3, 2층 (중앙로2가, 대명빌딩)
천안W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60, 2층 (쌍용동, 하이렉스타운)
천안아산역WM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층 (우성메디피아)
청주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2층 (북문로1가, 미래에셋대우빌딩)
청주중앙WM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6, 1층 (서운동)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서명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임원으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9월 14 일

하나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윤 하 (서명)

신고업무담당이사 윤 홍 주 (서명)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매출 성장성 정체 가능 위험** 당사는 2015년 매출액 1,089억원, 영업이익 154억원, 당기순이익 4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매출액 1,245억원, 영업이익 237억원, 당기순이익 174억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매출액 1,393억원, 영업이익 319억원, 당기순이익 2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반기에는 매출액 743억원, 영업이익 158억원, 당기순이익 114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5년부터 외형은 물론 질적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2017년 매출의 22% 비중을 차지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의료마약 1개 품목 당 해외수입 5개와 국내제조 5개까지만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추가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신규 제약사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 마취류 약물 분야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소화기, 순환기 등 타과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영업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역량과 더불어,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높은 비율로 확대되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급증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긍정적 환경변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며,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획기적인 신약이 출시되어 마약, 마취류 시장에 대한 당사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거나, 약가규제 심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매출성장성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효율적인 생산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경쟁심화로 인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약개발 및 R&D 비용 증가 위험** 국내 제약사들은 내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기댄 기존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R&D를 활용한 신약이나 개량신약,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퍼스트제네릭 등의 개발·출시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대형사 및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량신약 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사업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어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국내 내수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레미마졸람 및 조영제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연구개발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임상 비용 등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 2021년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전임상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상업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예상하는 만큼의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국내 제약업계는 주요 생산원료의 조달을 주로 외국의 제약회사와 기술 도입선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자급도가 낮은 편입니다. **당사의 재료비 비중은 2015년 25.9%, 2016년도 26.5%, 2017년 23.2%, 2018년 반기 기준 23.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체 원료 합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량 매입처의 지속적인 발굴 및 주요 매입처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대부분의 원재료 매입가격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환기 품목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매입가격은 주요 원료 매입처들간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원재료 수입지역 환율의 급격한 변동, 국제 경제 급변 및 주요 매입처들과의 계약조건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주요 원재료의 매입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재료비에 영향을 주어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 의약품 시장 규모 축소 위험**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성장하였으며,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3.1%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산업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구조적 요인에 따른 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 국가 차원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서의 육성 의지 등에 따라 향후 성장성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산업으로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 전반의 매출 및 수익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제약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경험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실거래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시행중인 가운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시장의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약가 규제 심화 등의 부정적인 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6년 기준 353개에 이를 정도로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대부분은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능력 및 연구개발능력과 같은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 역시 아직까지 제네릭의약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제약업체 간 경쟁심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같은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효과와 안정성이 업그레이드 된 다른 대체제품이 출현하거나,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지속 진입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생산, 판매, 관리 등의 정부규제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의약품의 개발에서 제조, 유통, 판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역시 타 산업 대비 엄격한 정부의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 및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장의 최근 GMP 적합판정일은 하길공장의 경우 2017년 04월 28일이며, 상신공장의 경우 2016년 07월 22일입니다.(GMP 적합판정은 3년 주기로 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관리 등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해당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의 생산공정이 GMP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GMP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의 품목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리베이트 규제 관련 위험

정부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산업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약가인하제' 및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등 다양한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이 같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취지에 발맞춰 제약회사들은 대내외적으로 리베이트 정화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CP(Compliance Program)의 철저한 운영 및 CP담당자를 배정하여 영업직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통제를 통해 허용가능한 금품류 제공행위를 규정하며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시행된 경제적이익제**

	공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위한 시스템을 연초 구축완료하였으며 CP팀의 감독하에 안정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행정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이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제약업계 전반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부 규제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험**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판매금지 조항등)로 인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전 허가제도 하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와 무관하게 제네릭의 허가가 이루어진데 반해 해당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제네릭의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게 되므로 신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위해선 특허 전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당사는 특허 만료가 임박한 오리지널의약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제품 발굴 및 검토, 특허소송 및 특허 방어 등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팀을 운영하는 등 우선판매 품목허가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특허무효 5건, 특허회피13건을 승소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당사를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 사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거나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을 경우 신제품 등의 출시가 지연되어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인력 유출 위험** 제약산업의 전문화된 기술들은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바, 당사는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본부는 현재 합성연구실, 제품개발연구실, 분석연구실, 바이오약리실 및 연구기획실 총 5개 연구파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의 연구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49명으로 판교의 R&D센터와 중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적극적인 우수 연구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회사의 비전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우수인력 스카우트 등에 따라 핵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경우, 당사의 핵심 기술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R&D 경쟁력이 약화되어 당사의 영업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세무조사 위험 당사는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총 245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총 47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2차례의 세무조사는 전액 세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세무조사 이후 당사 및 경영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세무조사 이후 접대성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확립 및 현금지출관리규정과 법인카드 사용규정 신설, CP(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교육 실시 등 유관 내부통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 2018년 5월 당사는 삼일회계법인에게 세무진단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 당사는 과거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15년 수감한 세무조사의 주기를 고려시 2019년에 당사의 정기세무조사가 수감될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며, 세무조사를 통한 과다한 규모의 세금부과 등 발생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험 당사는 2011년 세무조사 수감으로 245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으며, 이 사안에 기반하여 2016년 당사 및 당사의 前 대표이사인 조경일, 전영실, 허인구 등 3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2심 판결에 따라 하나제약은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전 대표이사인 전영실, 허인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전 대표이사인 조경일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형의 선고유예'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조경일 전 대표이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조경일 전 대표이사의 대법원 상고의 경우 회사와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회사에 추가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회사위험 바. 세무조사 위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정기세무조사가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바, 해당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처벌법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 고발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15년 영업이익률 14.17%, 당기순이익률 4.51%, 2016년 영업이익률 19.01%, 당기순이익률 14.00%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영업이익률 22.92%, 당기순이익률 17.45%를 기록하며 2015년부터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높은 원가구조와 함께 판매관리비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력제품의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원가율 상승 및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영업인력의 유출, 생산시설 확충으로 고정비 부담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차입금은 2015년 393억원에서 2016년 301억원, 2017년 291억원, 2018년 반기 214억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2015년 188.89%, 2016년 106.53%, 2017년 74.44% 그리고 2018년 반기 58.86%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영업현금흐름 안정에 따른 차입금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제약업계의 부정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당사 주요 품목의 수요급감 또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에 따른 차입금 증대 등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차입금 상

환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의 부실화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15년 303억원에서 2016년 353억원, 2017년 380억원, 2018년 반기 기준 394억원으로 매출액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2015년 4.47회에서 2016년 3.80로 감소한 이후 2018년 반기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법인세 납부를 위한 매출채권 할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매출채권회전율이 2015년 이후 안정화된 경우입니다. 당사는 의약품을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 강화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채권 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간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이 또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손실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5년 7.67회, 2016년 7.68회, 2017년 7.47회, 2018년 반기 기준 7.68회 수준으로 업종평균인 5.20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고자산 증가보다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시장 및 영업활동 분석을 통해 재고자산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장기체화 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지연 및 장기체화재고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연구개발비용 회계처리 관련 위험

당사는 제약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는 2010년 설립된 하길 중앙연구소 및 2016년 설립된 판교 R&D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의약품 및 제네릭 신제품, 개량신약, 신약 등 다양한 품목군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 등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에 부합함은 물론 해당 신약의 품목허가승인에 이은 실제 제품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 한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해기간의 비용으로 전액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자산처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국내 3상 임상중인 레미마졸람 관련 라이센스인 계약금의 경우 총 300만유로의 라이센스인 계약금액 중 2013년에 기지급된 계약금 100만유로는 현재 비용처리하지 않고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미마졸람의 경우 계약시점인 2013년에 이미 글로벌 2상 임상이 완료되어 신약발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서, 품목허가승인에 이은 실제 제품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21년에 총 300만유로에 해당하는 라이센스인 계약금액을 자산처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레미마졸람의 제품출시가 품목허가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패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액 전부를 비용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희망공모가액 평가방식의 한계**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비교기업의 2017년 온기 실적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은 업종 유사성, 사업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일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기업(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2017년 실적 기준 PER의 평균은 22.4배이고,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PER의 평균은 22.6배입니다.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에 할인율 28.3%~18.0%를 적용한 공모희망가액은 24,500~28,000원이며, 이를 당사의 2017년 실적 기준 PER로 환산시 16.3배~18.7배,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PER로 환산시 16.0배~18.3배입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노선 및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가격 결정 방식**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상장 후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총수 16,200,000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9,445,152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58.3%, 상장 후 6개월)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개인주주의 소유주식수 140,00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0.9%, 상장 후 6개월) 및 공모 후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게 될 816,292주(총 공모주식수의 20%, 예탁 후 1년)를 제외한 보통주 5,798,556주는 상장 이후 즉시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최대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Green Shoe)"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바.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②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주식의 환금성 관련 위험

금번 공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 투자원금손실 관련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파. 일일 가격제한폭 확대관련 위험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 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거.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너. 투자판단의 독립성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4,081,460	500	26,000	106,117,96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4,081,460	106,117,960,000	1,841,769,4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09.17 ~ 2018.09.18	2018.09.20	2018.09.17	2018.09.19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투자	79,200,000,000
연구개발	14,872,493,863
차입금상환	10,000,000,000
발행제비용	2,045,466,13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4,081,460	500	26,000	106,117,96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미래에셋대우	기명식보통주	4,081,460	106,117,960,000	1,841,769,4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09.17 ~ 2018.09.18	2018.09.20	2018.09.17	2018.09.19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확정**공모가액인**26,000원**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8년 09월 1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청약일: 2018년 09월 17일 ~ 18일 (2일간)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경우 일반청약자가 대표주관회사에 두 차례 이상 청약하는 이중청약이 금지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18년 6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년 8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2. 공모방법

금번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081,46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3,265,168주	8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816,292주	20.0%	우선배정
합계	4,081,460주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에 총 공모주식의 20%를 우선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일반청약자	816,292주	20.0%	-
기관투자자	2,448,876주	6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3,265,168주	80.0%	-

주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동일하다)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비 고
일반공모	3,265,168주	8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816,292주	20.0%	우선배정
합계	4,081,460주	100.0%	-

【모집의 세부내역】

모집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모집가액	모집총액	비 고
우리사주조합	816,292주	20.0%	26,000원	21,223,592,000원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816,292주	20.0%		21,223,592,000원	-
기관투자자	2,448,876주	60.0%		63,670,776,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배정수량 포함
합계	4,081,460주	100.0%		106,117,96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인수비율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4,081,460주	100.0%	26,000원	106,117,960,000원
합계		4,081,460주	100.0%		106,117,96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모집주식 중 816,292주(20.0%)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아래와 같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주식수	비율	주당 모집가액	금액
대표	미래에셋대우	816,292주	100.0%	26,000원	21,223,592,000원
합계		816,292주	100.0%		21,223,592,000원

주4)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주6)

1.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주7) 5억원 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정주식수(비율)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

주9) 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하에 개별적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10) 주당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확정공모가액 26,0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12)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는 발행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4,5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	26,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하나제약㈜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18년 09월 7일(금)	-
기업 IR	2018년 8월 27일(월) ~ 2018년 9월 10일(월)	-
수요예측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 2018년 9월 11일(화)	-
공모가액 확정공고	2018년 9월 14일(금)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18년 9월 11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1.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
▣ 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24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의거 금번 공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의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 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내역 제출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에 의거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미래에셋대우㈜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miraeassetdaewoo.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동 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동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참여제재 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 (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12개월 이내 금지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6개월 이내 금지

▣

주1) 미청약·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주2)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수 있음

주5) 의무보유 확약위반 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X 공모가격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기관투자자	2,448,876주	60.0%

주1)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주2) 상기 비율은 총 공모주식수(4,081,46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3) 일반청약자 배정분 816,292주(20.0%)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816,292주(2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2,448,876주"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2,448,876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주)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국내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적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서면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18년 9월 11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대우㈜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국내 기관투자자만 해당)

① 홈페이지 접속: 'www.miraeassetdaewoo.com' 접속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대우㈜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④ 법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국내 기관투자자만 해당)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접수된 참여 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면 접수 방법】(국내 기관투자자만 해당하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 통 서 류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

금융투자협회 제정『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3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3. 수요예측 실시』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가격을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448,876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 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미래에셋대우㈜ Global Equity Sales팀을 통한 서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우편, 유선, E-mail 및 Fax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18년 9월 11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Fax 등으로 접수한 투자자는 Global Equity Sales팀 담당자와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Fax
이선민	02-3774-3797	sunmin.lee@miraeasset.com	0505-085-3797
손제호	02-3774-3799	jeho.son@miraeasset.com	0505-085-3799

【서면 접수 방법】(해외 기관투자자만 해당)

제출서류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주1)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주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1)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는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상단의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란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모두 해당)

금융투자협회 제정『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3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3. 수요예측 실시』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가격을 최대 2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2,448,876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미래에셋대우㈜를 통한 수요예측 접수기간, 접수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18년 9월 10일(월) ~ 9월 11일(화) 17:00 (한국시간)
접수처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 및 미래에셋대우㈜ 동관 16층 IPO1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및 서면(우편/인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16층 IPO1팀
TEL	02) 3774-7165, 7163, 7191

FAX	02) 3774-8399

【해외 기관투자자】

접수기간	2018년 9월 10일(월) ~ 9월 11일(화) 17:00 (한국시간)
접수처	미래에셋대우㈜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접수방법	서면(우편/인편/E-mail/Fax 등)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26층, Global Equity Sales팀
TEL	02) 3774-3797, 3799
FAX	0505-085-3797, 3799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대우㈜「 www.miraeassetdaewoo.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청약⇒ 수요예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IPO1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 참가안내 공지사항(www.miraeassetdaewoo.com → 뱅킹관리/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의 담당 사업부문 대표 등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2,448,876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배정대상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
배정기준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함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2,448,876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물량 배정 시 국내 및 해외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통합 배정합니다.

주4)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대우㈜ 「www.miraeassetdaewoo.com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② 수요예측 참여에 의해 배정된 물량을 미청약한 경우에는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금융투자협회 회원 홈페이지(http://work.kofia.or.kr/) 에 게시 등록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147	20	69	296	15	127	674
수량	52,756,000	2,708,000	12,813,000	52,135,000	22,088,381	106,053,000	248,553,381
경쟁률	21.54 : 1	1.11 : 1	5.23 : 1	21.29 : 1	9.02 : 1	43.31 : 1	101.50 : 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 (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4	1,704,000	2	8,000	5	3,224,000	29	15,391,000	-	-	49	76,836,000	89	97,163,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44	19,053,000	6	2,537,000	19	5,045,000	66	21,920,000	-	-	16	16,000	151	48,571,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1	10,000	1	11,000	3	9,000	11	4,922,000	-	-	3	7,200,000	19	12,152,000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10	305,000	1	37,000	3	18,000	11	190,000	-	-	7	9,000	32	559,000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51	14,208,000	7	59,000	24	4,022,000	120	4,437,000	-	-	5	55,000	207	22,781,000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1	2,448,000	-	-	1	98,000	-	-	-	-	-	-	2	2,546,0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1	15,000	2	44,000	2	4,000	6	64,000	-	-	-	-	11	127,000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6	3,985,000	1	12,000	6	338,000	27	1,021,000	1	2,448,000	7	7,000	58	7,811,000
밴드하단미만	16	10,893,000	-	-	5	35,000	20	4,146,000	-	-	-	-	41	15,074,000
미제시	3	135,000	-	-	1	20,000	6	44,000	14	19,640,381	40	21,930,000	64	41,769,381
합계	147	52,756,000	20	2,708,000	69	12,813,000	296	52,135,000	15	22,088,381	127	106,053,000	674	248,553,38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28,000원 초과	89	97,163,000	39.09%
26,000원 초과 28,000원 이하	203	61,283,000	24.66%
24,500원 초과 26,000원 이하	219	25,453,000	10.24%
24,500원 이하	99	22,885,000	9.21%
가격미제시	64	41,769,381	16.80%
합계	674	248,553,381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구분	신청수량(주)	비고
6개월 확약	270,000	-
3개월 확약	-	-
1개월 확약	30,000	-
15일 확약	-	-
합계	300,000	-
총 신청수량 대비 비율(%)	0.1%	-

주) 상기의 확약 신청수량은 수요예측 참여결과를 기재하였으며, 실제 배정내역은 이와는 상이합니다.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의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4,081,46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4,500원 (주1)
		확정가액	26,00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99,995,770,000원
		확정가액	106,117,960,000원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7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8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8년 09월 17일
		종료일	2018년 09월 18일
청약 증거금 (주4)	우리사주조합		100%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18년 09월 20일

주1) 주당 모집가액(또는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하나제약㈜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0)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및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 청약일 중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9월 2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전 영업일(2018년 9월 19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주5)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9월 2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② 기관투자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③ 일반청약자 :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④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청약하여야 하고, 한 청약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협의를 통하여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 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수요예측 안내공고	2018년 09월 07일	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	2018년 09월 14일	인터넷 공고 (주2)
청약공고	2018년 09월 17일	매일경제신문
배정공고	2018년 09월 19일	인터넷 공고 (주3)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8년 09월 07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

(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18년 09월 14일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2018년 09월 17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되는 청약공고 시 함께 공고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18년 09월 19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18년 09월 20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하며, 각 청약사무취급처별 복수청약은 가능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본・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청약 한도	배정 비율	자격요건	증거금율	청약수수료
우대	200%	30% (선배정)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1억원 이상 고객 (주식형상품 5천만원 이상) ② 개인연금저축 : 청약 직전월 평잔 1천만원 이상 고객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천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50%	0원
일반	100%	70%	① 자산평잔 : 청약월 직전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 고객 ② 급여이체 : 청약월 직전 3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한 고객 ③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 약정된 계좌에 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입금한 고객 ④ 신규고객 : 청약월 직전 3개월내 당사 최초 신규고객 (고객단위) ⑤ 개인연금저축 : 자동대체, CMS자동이체로 청약월 직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또는 청약 직전월 평잔 1백만원 이상 단, 청약 직전월 타사 연금저축 이전시 최초 1회 말잔 1백만원 이상 (IRP, 퇴직연금 제외)	50%	건당 5,000원 온라인 0원
자격 미충족 고객	일반 그룹 50%	-	청약자격 기준없음 * 일반 청약자격 한도의 50%까지만 청약신청 가능함 * 온라인청약 및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영업점에서는 청약불가)	50%	온라인 0원 유선 5,000원

주1) 개인연금저축기준
① 개인연금저축 미평가 자산 : IRP, 퇴직연금, MMF, 예수금
② 수익증권 잔고는 결제일 기준 평가금액
③ 타사 개인연금 이전고객에 대해서는 그룹별 최초 1회 기존 개인연금 보유잔고와 합산하여 말잔으로 평가
④ 개인연금 이전 고객의 경우 청약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연금 이전 해당월 최초 1회만 말잔 반영됨

주2) 급여이체 조건 / CMS이체입금(매수), 자동대체입금(매수) 약정 관련 가입조건은 개인고객만 가능

주3) 자산합계 평잔, 주식형상품 평잔은 고객별로 보유한 전 계좌의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주4)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홈페이지,MTS,ARS)청약과, 고객센터(고객케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함. 온라인청약을 위해 사전에 전자거래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

주5) 우대그룹 / 온라인 청약고객 / 법인고객은 청약 수수료 면제 (고객등급과는 무관)

주6) 추가납입 미청약 고객의 다음 회차 청약시 청약증거금 100% 적용

주7) 우대그룹 배정 : 당사 공모주수의 30% 선배정
※ 우대그룹 배정주수 : ① + ②
① 우대그룹 공모주수 경쟁 배정
② 우대그룹 경쟁률 1:1 초과시 미배정 청약주수는 일반그룹 청약경쟁 배정

주8) 법인 고객 : 개인과 청약자격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 우대그룹은 청약한도만 200%를 적용하며, 일반그룹 경쟁으로 배정됨(우대그룹 30% 선배정 없음)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량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대우㈜	816,292주	(주1)	50%(주2)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81,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40,500주 (100%)

□ 청약자격기준 미충족고객의 청약한도 : 20,200주

주1) (일반그룹 최고 청약한도의 5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단, 청약자격 기준 미충족 고객은 온라인(HTS,홈페이지, ARS)청약과 고객센터(스마트 상담센터)를 통한 유선청약만 가능)

주2)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50주
1,000주 초과 ~ 21,000주 이하	100주
21,000주 초과 ~ 41,000주 이하	500주
41,000주 초과 ~ 81,000주 이하	1,000주

(6)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8년 9월 17일 ~ 9월 18일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미래에셋대우㈜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8년 9월 20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전체 공모주식의 20.0%(816,292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60.0%(2,448,876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0%(816,292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우선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최종 청약 후 배정은 미래에셋대우㈜가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

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 등에 관한 배정공고는 2018년 09월 19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연고자 등, (iii)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iv)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미래에셋대우㈜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일반청약자	1) 과 2) 를 병행 1)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미래에셋대우㈜ 본・지점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까지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다운로드 : 청약종료일까지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하나제약㈜,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 및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9월 2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전 영업일(2018년 09월 19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09월 2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9월 2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각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납입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③ 상기 ②항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8년 06월 1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8월 13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

험요소』-『3. 기타위험』-『자.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인수주식의 수	인수조건
명칭	주소			
미래에셋대우㈜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기명식 보통주	4,081,460주	총액인수
합계		기명식 보통주	4,081,460주	

주)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구분	인수인	금 액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1,841,769,400원	-
	합계	1,841,769,400원	

주)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본 주식이 상장된 이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서에 의한 본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로 본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 본 계약 이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기타 주식의 발행의무가 있는 증권(주식매입선택권 포함)에 대한 주식발행 및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발행과 매도는 제외합니다.

당사는 상기 기간 동안 발행회사의 임원과 최대주주 등이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본 주식을 대표주관회사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당사는『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하여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의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계속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중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

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6)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7년 6월 19일 자로 시행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의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에서는 인수 증권회사가 매매개시후 1월간 주가가 공모가격의 90% 이상 하락할 경우 일반 청약자 물량을 재매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주가 하락시 일반투자자는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 시 동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사업위험

가. 매출 성장성 정체 가능 위험

당사는 2015년 매출액 1,089억원, 영업이익 154억원, 당기순이익 4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매출액 1,245억원, 영업이익 237억원, 당기순이익 174억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매출액 1,393억원, 영업이익 319억원, 당기순이익 2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반기에는 매출액 743억원, 영업이익 158억원, 당기순이익 114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5년부터 외형은 물론 질적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2017년 매출의 22% 비중을 차지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의료마약 1개 품목 당 해외수입 5개와 국내제조 5개까지만 허

가를 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추가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신규 제약사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 마취류 약물 분야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소화기, 순환기 등 타과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영업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역량과 더불어,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높은 비율로 확대되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급증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긍정적 환경변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며,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획기적인 신약이 출시되어 마약, 마취류 시장에 대한 당사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거나, 약가규제 심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매출성장성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효율적인 생산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경쟁심화로 인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매출액 1,089억원, 영업이익 154억원, 당기순이익 4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매출액 1,245억원, 영업이익 237억원, 당기순이익 174억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매출액 1,393억원, 영업이익 319억원, 당기순이익 2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 반기에는 매출액 743억원, 영업이익 158억원, 당기순이익 114억원을 기록하는 등 2015년부터 외형은 물론 질적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일정수준의 판관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한 이익 변동성이 낮아, 매출 및 매출총이익의 증가가 이익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에 기인합니다.

[성장성 비율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회사	업종평균(주2)	
매출액	74,310	139,331	124,535	-	108,942
매출액증가율	11.74%	11.88%	14.31%	8.20%	22.37%
영업이익	15,761	31,937	23,671	-	15,441
영업이익증가율	9.32%	34.92%	53.30%	n/a	135.35%
당기순이익	11,439	24,310	17,431	-	4,911
당기순이익증가율	4.28%	39.46%	254.91%	n/a	91.73%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업종평균 :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주3) 2018년 반기 성장성 비율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산출

또한 당사는 원외처방액 순위 기준 2015년 740억원으로 37위, 2016년 903억원으로 36위, 2017년 1,070억원으로 33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별 국내 원외처방액 순위 변동(2015년~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회사명	십억원	순위	회사명	십억원	순위	회사명	십억원	순위

대웅제약	485	1	종근당	481	1	종근당	482	1
화이자	426	2	한미약품	456	2	한미약품	476	2
종근당	412	3	대웅제약	454	3	유한양행	467	3
한미약품	397	4	화이자	441	4	화이자	436	4
엠에스디	375	5	유한양행	422	5	대웅제약	435	5
노바티스	337	6	엠에스디	381	6	엠에스디	382	6
유한양행	309	7	노바티스	339	7	노바티스	307	7
동아에스티	288	8	동아에스티	297	8	베링거인겔하임	265	8
베링거인겔하임	264	9	베링거인겔하임	280	9	동아에스티	265	9
CJ헬스케어	209	10	CJ헬스케어	228	10	CJ헬스케어	233	10
일동제약	207	11	일동제약	216	11	일동제약	206	11
비엠에스	190	12	삼진제약	196	12	대원제약	205	12
삼진제약	171	13	대원제약	180	13	삼진제약	202	13
제일약품	162	14	보령	169	14	제일약품	180	14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60	15	사노피	167	15	아스텔라스	175	15
사노피	157	16	제일약품	167	16	JW중외제약	173	16
대원제약	156	17	아스트라제네카	166	17	보령	164	17
보령	151	18	비엠에스	166	18	유나이티드	159	18
아스트라제네카	150	19	아스텔라스	163	19	아스트라제네카	158	19
신풍제약	138	20	한림제약	154	20	사노피	157	20
SK케미칼	136	21	JW중외제약	152	21	한림제약	155	21
한림제약	133	22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48	22	대웅바이오	151	22
한독	132	23	유나이티드	146	23	경동제약	147	23
JW중외제약	131	24	한독	144	24	한독	145	24
유나이티드	130	25	경동제약	140	25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42	25
경동제약	130	26	SK케미칼	137	26	휴텍스	140	26
안국약품	129	27	안국약품	129	27	SK케미칼	132	27
아스텔라스	128	28	신풍제약	126	28	안국약품	124	28
알보젠코리아	112	29	바이엘	123	29	비엠에스	122	29
바이엘	104	30	휴텍스	118	30	바이엘	122	30
부광약품	101	31	대웅바이오	113	31	명문제약	113	31
다이이찌산쿄	91	32	부광약품	108	32	다이이찌산쿄	109	32
명문제약	84	33	명문제약	106	33	**하나제약**	**107**	**33**
휴텍스	78	34	알보젠코리아	99	34	신풍제약	105	34
얀센	78	35	다이이찌산쿄	94	35	부광약품	104	35
에자이	77	36	**하나제약**	**93**	**36**	LG화학	104	36
하나제약	**74**	**37**	LG화학	87	37	에자이	89	37
국제약품	73	38	에자이	85	38	국제약품	85	38
건일제약	72	39	국제약품	84	39	한국콜마	85	39
삼천당	71	40	삼천당	81	40	삼천당	83	40

(출처: 유비스트)

이는 당사 2017년 매출의 22% 비중을 차지하는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의료마약 1개 품목 당 해외수입 5개와 국내제조 5개까지만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추가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신규 제약사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 마취류 약물 분야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소화기, 순환기 등 타과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영업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당사는 시장의 어떤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 대기업 수준인 260여개의 제네릭 제품라인업을 완성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괄약가인하 정책의 만료와 함께 매출액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영업인력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고, 매년 영업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당사의 역량과 더불어,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높은 비율로 확대되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급증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긍정적 환경변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며,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획기적인 신약이 출시되어 마약, 마취류 시장에 대한 당사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거나, 약가규제 심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매출성장성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효율적인 생산성이 유지되지 않거나 경쟁심화로 인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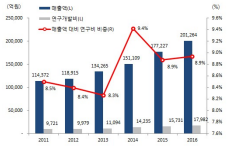
나. 신약개발 및 R&D 비용 증가 위험

국내 제약사들은 내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기댄 기존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R&D를 활용한 신약이나 개량신약,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퍼스트제네릭 등의 개발・출시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대형사 및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량신약 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사업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어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국내 내수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레미마졸람 및 조영제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연구개발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임상 비용 등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 2021년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전임상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상업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예상하는 만큼의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내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기댄 기존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R&D를 활용한 신약이나 개량신약,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퍼스트제네릭 등의 개발・출시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연구개발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제약사 110개사의 연구개발비는 2014년 1.42조원에서 2016년 1.8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4% 증가했으며, 2016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대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규모 역시 2012년 6,236억원에서 2016년 9,698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상장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상장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업계는 대형사 및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량신약 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사업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어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기업이 신약특허만료에 따른 매출액 감소, R&D 생산성 저하 등의 대안으로 외부기술 도입에 나서면서 국내 제약기업들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로 신약개발에 성공할 정도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을 통한 연구개발 능력이 우수하여, 글로벌 제약사가 국산 신약의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강화도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개발은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높은 투자비와 고위험이 수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시 평균 1조~2조원 상당의 개발 비용과 평균 10~15년 정도의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신약 개발의 첫 단계인 후보물질 탐색부터 마지막 신약 승인까지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축적된 기술력,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 높은 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바이오벤처 및 학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first-in-class 또는 best-in-class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인 'Remimazolam(HNP-2001)'은 진정・마취제로 쓰이고 있는 기존 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과 미다졸람(midazolam)의 단점을 줄이고 각각의 장점만을 가진 신약입니다. 또한 차세대 고리형 가돌리늄 조영제인 'HNP-2006'은 기존 MRI 조영제 제품들의 치명적 부작용인 신원성 전신 섬유증(Nephrogenic systemic fibrosis, NSF) 발병 가능성을 줄였으며, 가돌리늄이 신장 및 뇌에 잔류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어, 환자들이 더욱 안전한 MRI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적응증	후보물질 개발	전임상	임상			진행사항
				1상	2상	3상	
레미마졸람 (HNP-2001)	Systemic anesthesia (진정, 수면마취제)						임상 3상 진행 중 2021년 발매목표
HNP-2006	MRI contrast agents (MRI T1 조영제 신약)						2019년 임상 1상 진입목표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HNP-6002	Diabetic retinopathy (당뇨성 망막병증)						2020년 전임상 진입목표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수행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동연구
HNP-6003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2021년 물질 최적화 완료 및 전임상 진입목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2023년 임상 1상 진입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과제 선정

신약 개발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상업화에 실패하거나 임상 등의 지연 또는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독일의 Paion사와 공동 개발 중인 신약 레미마졸람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Paion사와 국내 독점 생산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Originator인 Paion사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레미마졸람과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국내 3상 임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1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레미마졸람의 기술이전(License-in) 비용으로 계약금 100만 유로를 2013년 Paion사와의 계약 체결 시 지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본 및 국내 시판허가 여부에 따라 milestone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국내 3상 임상 비용 및 허가비용으로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시판허가 후 생산을 위해 동결건조라인 증설(2019년 20억원, 2020년 50억원 소요 예상)을 계획 중에 있는 만큼 시설투자비 증가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국내 내수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레미마졸람의 상업화를 위해 연구개발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임상 비용 등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신약의 성공적인 개발 완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상업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예상하는 만큼의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국내 제약업계는 주요 생산원료의 조달을 주로 외국의 제약회사와 기술 도입선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자급도가 낮은 편입니다. **당사의 재료비 비중은 2015년 25.9%, 2016년도 26.5%, 2017년 23.2%, 2018년 반기 기준 23.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체 원료 합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량 매입처의 지속적인 발굴 및 주요 매입처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대부분의 원재료 매입가격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환기 품목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매입가격은 주요 원료 매입처들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원재료 수입지역 환율의 급격한 변동, 국제 경제 급변 및 주요 매입처들과의 계약조건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주요 원재료의 매입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는 당사의 재료비에 영향을 주어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원료의약품은 정밀화학 산업분야 중 비중이 큰 분야로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합성에 대한 새로운 공정 및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료의약품 GMP도입은 품질의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제약업계는 주요 생산원료의 조달을 주로 외국의 제약회사와 기술 도입선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자급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14년 31.8% 수준이던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015년, 2016년에는 30%에도 못 미치는 등 여전히 수입의존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료자급도가 낮은 이유는 국내 원료 생산이 품질측면에서는 유럽산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가격측면에서는 인도나 중

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것에 기인합니다.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 추이]

연도	생산 (백만원)	수출 (백만원)	수입 (백만원)	자급도 (%)
2013년	2,243,572	1,116,964	2,513,245	31.0%
2014년	2,138,937	1,244,463	1,922,410	31.8%
2015년	2,113,591	1,449,925	2,040,126	24.5%
2016년	2,473,726	1,635,101	2,195,686	27.6%

주) 자급도 = (생산-수출)/(생산-수출+ 수입)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7), 식약처)

한편, 원료의 수급에 있어서는 원료 제조원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 생산업체간에도 경쟁이 치열하여 원료의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가격적인 면에서도 과거 상대적으로 고품질, 고가 정책을 견지하던 유럽업체들이 중국, 인도 등 원료의약품 생산국의 품질이 유럽산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을 보임에 따라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로 자급도는 떨어지더라도 자원조달의 경제성은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대부분의 원재료 매입가격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순환기 품목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매입가격은 주요 원료 매입처들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g, 외주가공 단위 : 원/정)

효능군	품목명	원재료명	2018연도 (상반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39기)
순환기	아리토정	아토르바스타틴칼슘	680	980	1,200
	로스토정	로수바스타틴칼슘	2,748	2,679	3,626
	로스토린정	로스토린정	220	242	244
마취 및 마약	하나구연산 펜타닐주	펜타닐시트르산염	150,000	150,000	145,385
	세보프란흡입액	세보플루란	97	92	112
	아네폴주	프로포폴	410	410	410
	레미바주	레미펜타닐염산염	725,000	740,000	741,772
	오코돈서방정	옥시코돈염산염	4,280	4,280	4,041
소화기	파라메트정	파라메트정10mg	-	125	125
	넥스파정	넥스파정20mg	180	180	180
		넥스파정40mg	250	250	250
	비스원정	비스원정	79	79	79
	레스탐정	레스탐정	29	29	33
진통제	러키펜정	록소프로펜나트륨	166	154	176
	타이리콜이알정	아세트아미노펜	7	7	7
	세니탈정	아세클로페낙	110	110	110

	케로민주	케토롤락트로 메타민염	-	729	822
기타 제제	히알원주	히알루론산나트륨	44,000	43,517	47,000
	뉴가바캡슐	가바펜틴	70	63	88
	하나클러캡슐	하나클러캡슐	100	100	102

단가 변동이 있는 일부 원재료의 가격변동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재료명	내용
순환기	아토르바스타틴칼슘	- 원료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경쟁사 원료의 출시로 단가 인하
	로수바스타틴칼슘	- 연간 구입물량에 대한 선주문을 통하여 제조사의 생산비용 절감
마취, 마약	세보플루란	- 낮은 공급가 계약을 통해 단가 인하
	펜타닐시트르산염	- 마약, 향정원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원료단가가 소폭 인상
	프로포폴	
	레미펜타닐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진통제	록소프로펜나트륨	- 주성분 제조원 추가등록을 통한 매입단가 절감을 이루었으나, 최근 중국 내 환경문제로 인한 공급 불균형으로 단가 상승 중임
기타제제	가바펜틴	

당사의 재료비 비중은 다음의 제조원가 구성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25.9%, 2016년도 26.5%, 2017년 23.2%, 2018년 반기 기준 28.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재료비	5,639	10,167	11,229	9,598
당기 제품제조원가	23,805	43,913	42,395	37,014
재료비 비중	23.7%	23.2%	26.5%	25.9%

(출처: 회사제시 자료)

당사는 원재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체 원료 합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량 매입처의 지속적인 발굴 및 주요 매입처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주요 원재료 및 부자재를 다수의 우량 매입처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특정 매입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아 매입처 변동 등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원재료 수입지역 환율의 급격한 변동, 국제 경제 급변 및 주요 매입처들과의 계약조건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는 당사의 재료비에 영향을 주어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약품 시장 규모 축소 위험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성장하였으며,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3.1%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산업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구조적 요인에 따른 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 국가 차원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서의 육성 의지 등에 따라 향후 성장성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산업으로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 전반의 매출 및 수익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제약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경험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실거래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시행중인 가운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시장의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약가 규제 심화 등의 부정적인 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및 성장률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히 마약류 및 마취제의약품을 대표 제품군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제조업체로 당사의 외형성장세는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궤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소득증가에 따른 1인당 약제비 증가 및 평균수명 증가 등에 힘입어 외형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성장하며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3.1%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의약품 생산액의 경우 2016년 기준 약 18.8조원으로 전년대비 10.82%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3.62조원으로 전년대비 8.58%, 수입액은 6.54조원으로 전년대비 16.78%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의약품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시장규모
단위	조원	조원	억$	조원	억$	조원
2012	15.71	2.34	20.78	5.85	51.95	19.23
2013	16.38	2.33	21.28	5.28	48.21	19.32
2014	16.42	2.54	24.15	5.49	52.18	19.37
2015	16.97	3.33	29.47	5.60	49.50	19.24
2016	18.81	3.62	31.20	6.54	56.36	21.73
전년대비 증가율	10.82%	8.58%	5.87%	16.78%	13.87%	12.95%
연평균 성장률	4.59%	11.52%	10.70%	2.81%	2.06%	3.10%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7), 식약처)

한편, 2000년 8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크게 확대되던 의약품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 외형 성장은 지속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처방약(전문의약품)과 비처방약(일반의약품)이 명확하게 분리되면서 의약품시장이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기조에 따라 전문의약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제약사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완제의약품 생산액 기준 전문의약품은 13조 6,581억원, 일반의약품은 2조 6,743억원을 생산하며 전년 대비 각각 10.0%, 9.9%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은 83.6%로 전문의약품 위주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2년 이후 83%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생산 품목은 13,069개, 일반의약품 생산 품목은 5,477개로 전체 생산 품목 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 상승이 약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2년 일괄약가 인하 등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의약품시장 규모가 19조원 내외에서 정체되었던 점 등을 감안 시 내수시장 위주의 국내 제약업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의약품 분류별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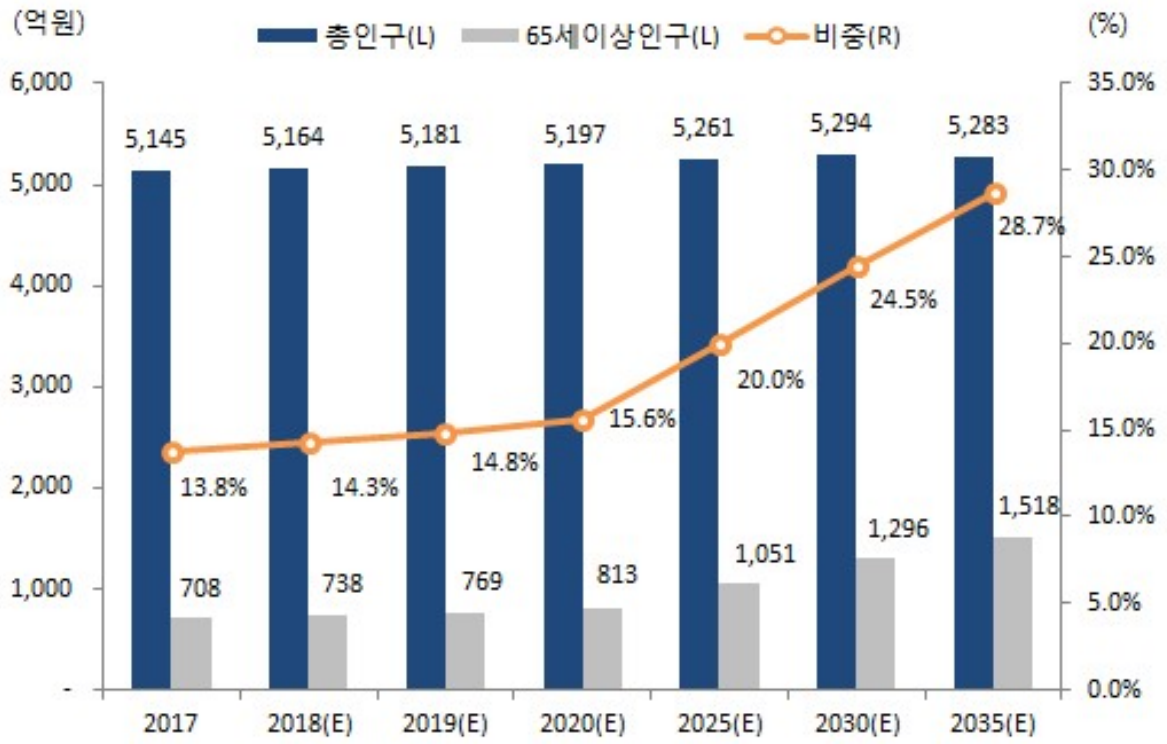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의약품	품목수	5,957	5,841	6,075	5,624	5,477
	생산액	22,974	23,717	24,130	24,342	26,743
	비중	16.7%	16.8%	16.9%	16.4%	16.4%
전문의약품	품목수	9,860	10,781	12,282	12,283	13,069
	생산액	114,526	117,608	118,675	124,218	136,581
	비중	83.3%	83.2%	83.1%	83.6%	83.6%

(출처: 한국제약협회(2017))

비록 정부의 약가규제 정책, 업체들간의 과다한 경쟁 및 유통질서의 문란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의약품 제조업은 국민소득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에 따른 건강검진의 증가,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암 발병률 증가 등에 기인하여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급증으로 인해 전문의약품의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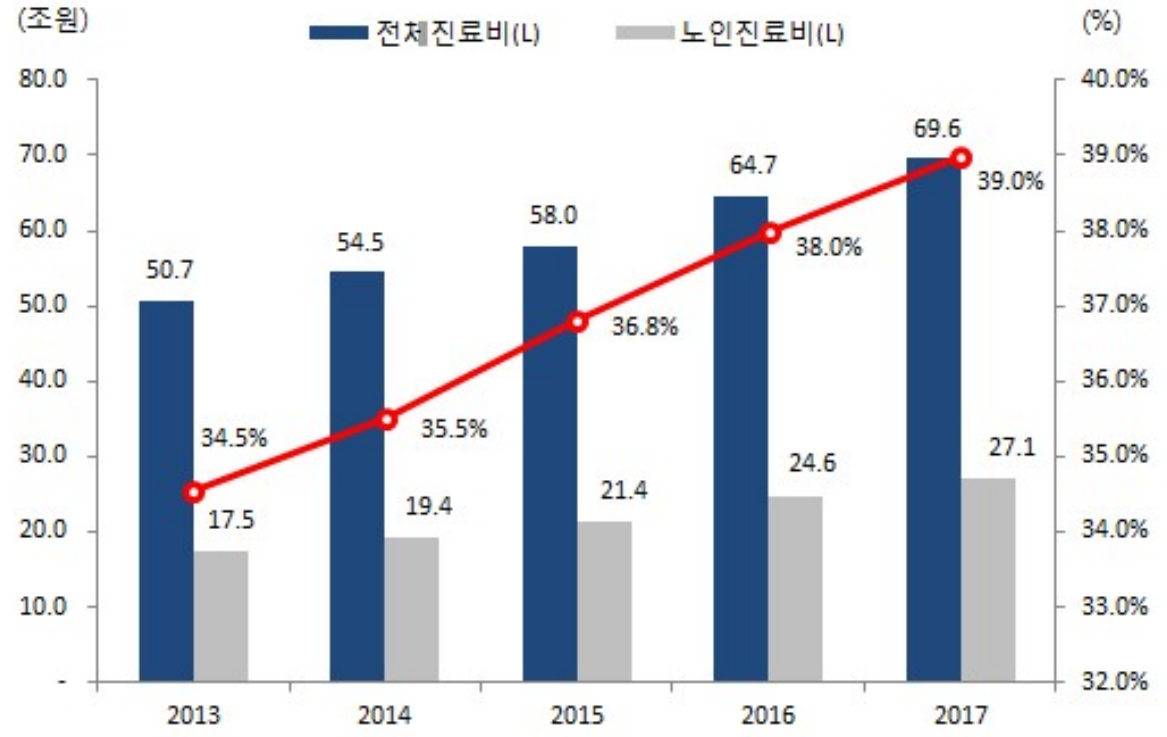
[국내 총인구 및 고령 인구 추이]



고령인구 추이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현황]



노인진료비 추이

(출처: 통계청, KOSIS)

국내 제약사들 역시 내수시장 위주의 영업전략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파머징시장 등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제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산업의 추가 성장 여력은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창출 역량에 주목한 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의 첫걸음인 '2018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인프라 구축, 국산신약 개발, R&D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강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이처럼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구조적 요인에 따른 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인지하여 집중 육성하고자 함에 따라 향후 성장성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품비 비중 문제점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1년 약가제도를 개편하고 2012년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13,814개 품목 중 6,506개 전문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21.6% 인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의약품 가격은 약 14% 인하되었습니다.

일괄 약가인하 이후 변경된 약가 산정방식은 '동일성분 동일약가'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 상한선은 70%(기존: 80%)로 인하되었으며, 최초 시점에 허가받는 제네릭들은 퍼스트 제네릭으로 59.5%가 상한선이 됩니다. 두번째로 허가받는 제네릭부터는 일괄적으로 53.55%가 적용되며, 최초 제네릭의 등재 이후 1년 뒤 공급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오리지널을 포함한 전체 허가 품목의 약가의 상한이 53.55%로 동일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2년 단행한 일괄인하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네릭 약가 기반을 악화시켰으며, 6년전 당시 일괄 약가인하의 핵심이 제네릭 약가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실제 해당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의 매출감소와 이익축소가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내수 위주의 국내 제약시장은 성장성 정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적인 흑자는 달성하게 되었으며, 2017년말 기준으로 누적흑자액은 약 2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약가인하정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괄약가 인하 1차	일괄약가 인하 2차	일괄약가 인하 3차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액	15,600	45,757	82,203	128,072	169,800	201,766	207,733

증가율	-	193.3%	79.7%	55.8%	32.6%	18.8%	3.0%

(출처: 보건복지부)

또한 의약품의 사용량이나 보험급여 청구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약가를 일정 수준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따르면 약가협상 당시에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전년 대비 보험급여 청구금액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 상한금액을 10%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이후에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 청구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절대금액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016년의 경우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통해 총 4,655품목의 상한 금액을 평균 1.96% 인하・고시했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 도입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 급여 상한가보다 병원이 더 싼 값에 제약사로부터 약을 구매한 경우, 병원이 절감한 금액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상한선 내의 실구입가격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은 매 분기 품목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하여 이를 청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내역이 적정한지 조사해 상한 금액 미만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보험의약품 상한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실거래가 상환제에 근거한 제도가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이며, 의약품의 실제 병원 공급 가중평균 가격이 급여 상한가보다 낮은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합니다. 인하율은 10% 이내에서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2010년까지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율은 평균 3.76%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16년 10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가 인하 주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 가중평균가 산출데이터를 공급자료에서 청구자료로 변경, 품목 특성상 제조 및 관리에 고비용이 소요되며 약가 인하율이 높은 주사제의 인하율 30% 감면, R&D 투자비율이 높은 혁신형기업 인하율 감면 확대(30%→ 50%),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후 첫 실거래가 약가 인하 조정은 2018년 2월 총 3,619개 품목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정으로 인해 약가인하 주기가 완화됨에 따라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 부담은 일부 줄어들게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주요 약가인하 정책 추이]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11	기등재목록 정비	- 2006년 12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통해 효과가 낮은 제품은 약가인하 및 보험대상 제외	- 동일성분 의약품의 최고가 80%이상이면 보험대상에서 제외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6	실거래가 약가 인하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전체 평균 1.96% 인하 - 약가 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출처 : 보건복지부, NICE신용평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가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은 보험약가에 의해 제품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등재약 일괄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실거래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제품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시행중인 가운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약가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당사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 경기 침체 지속, 의약품 시장의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약가 규제 심화 등의 부정적인 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6년 기준 353개에 이를 정도로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대부분은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능력 및 연구개발능력과 같은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 역시 아직까지 제네릭의약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제약업체 간 경쟁심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와같은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격차가 증가하는 가운데 효과와 안정성이 업그레이드 된 다른 대체제품이 출현하거나,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지속 진입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시장은 약 500개가 넘는 기업이 난립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그 중 당사와 같은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는 2016년 기준 353개에 이를 정도로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10억원 미만	111	18,060	31.4%	0.11%	124	18,311	34.83%	0.12%
10 ~ 50억원	54	126,740	15.3%	0.78%	50	132,116	14.04%	0.89%
50 ~ 100억원	27	201,011	7.6%	1.23%	28	208,104	7.87%	1.40%
100 ~ 500억원	80	2,072,538	22.7%	12.69%	77	2,033,369	21.63%	13.69%
500 ~ 1,000억원	39	2,954,835	11.0%	18.09%	36	2,494,303	10.11%	16.79%
1,000 ~ 3,000억원	29	4,889,820	8.2%	29.94%	31	5,309,294	8.71%	35.74%

3,000 ~ 5,000억원	8	2,983,726	2.3%	18.27%	5	1,820,359	1.40%	12.25%
5,000억원 이상	5	3,085,675	1.4%	18.89%	5	2,840,169	1.40%	19.12%
합 계	353	16,332,406	100.0%	100.00%	356	14,856,025	100.00%	100.0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제약업계는 현재까지 제네릭의약품 위주의 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신약이나 개량신약 대비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고, 자체 공장 없이도 위탁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여 일정 수준의 수익성 확보가 보다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1월 공동 생동 규제가 폐지된 이후 다른 업체에서 제네릭을 생산해 허가받는 '위탁 제네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인정품목을 보면 2009년 437개 품목에서 2016년 1,112개로 2.5배 증가하여, 7년새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 수가 2.5배 많아졌습니다.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현황]

(단위: case)

구분	총계	직접실시	위탁
2009	437	237	200
2010	437	247	190
2011	909	543	366
2012	588	251	337
2013	1,143	320	823
2014	1,078	287	791
2015	1,215	238	977
2016	1,112	128	98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또한, 2016년 기준 상위 30개사의 생산총액은 전체 생산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1,000억원을 상회하는 회사는 48개사에 불과한 반면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업체가 190여개에 이르고 있을 만큼 국내 완제의약품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대부분은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하거나 차별화된 제네릭 라인업을 확보하지 못한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네릭 위주의 경쟁심화는 R&D에 대한 투자여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 경쟁력이 저하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2년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등 정부 주도의 약가인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단순하게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만 의존했던 제약사의 경우 마진율 저하로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아직까지 제네릭의약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제약업체 간 경쟁심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당사의 주력 제품인 마약,마취류 제품의 경우 비마약성 제네릭 의약품 대비 진입장벽이 높아 해당 품목 내 경쟁강도는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칭하는데 약품의 특성상 오용 및 남용의 위해성이 높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추가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의료마약 1개 품목 당 해외수입 5개와 국내제조 5개까지만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품목당 허가 받은 최대 10개 업체 외 신규사업자가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마약류 제품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당사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3개년 마약・마취류 의약품 처방액 기준 상위 10개사 현황]

(단위 : 억원)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업체명	처방액	업체명	처방액	업체명	처방액
1	**하나제약**	**164.1**	**하나제약**	**173.6**	**하나제약**	**196.5**
2	먼디파마	155.6	먼디파마	164.4	먼디파마	175.9
3	얀센	127.7	얀센	121.7	얀센	128.8
4	박스터	120.3	박스터	109.7	한림제약	124.6
5	글락소스미스클라인	82.0	비씨월드제약	77.7	박스터	111.8
6	비씨월드제약	78.8	화이자	76.9	화이자	79.0
7	명문제약	54.1	글락소스미스클라인	68.5	비씨월드제약	78.2
8	화이자	52.0	한림제약	55.4	메나리니	62.5
9	대웅제약	45.7	대웅제약	52.0	한독테바	59.2
10	프레지니우스카비	45.2	한독테바	48.4	프레지니우스카비	54.7
1~10위 합계		925.5	1~10위 합계	948.3	1~10위 합계	1,071.1
총계		1,238.2	총계	1,304.9	총계	1,445.4
1~10위 시장점유율(%)		74.8%	1~10위 시장점유율(%)	72.7%	1~10위 시장점유율(%)	74.1%
당사 시장점유율(%)		13.3%	당사 시장점유율(%)	13.3%	당사 시장점유율(%)	13.6%

(출처 : IMS Health)

한편, 국내 제약업계는 내수시장의 성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R&D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현재 마취제 신약인 '레미마졸람'을 독일 Paion사(Originator)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자체 국내 3상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미마졸람은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장점인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작용소실과, 낮은 억제 부작용으로 활력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미다졸람의 장점을 모두 갖춘 세계 최초 신약입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MRI시 사용하는 조영제 신약의 연구를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로 진행 중이며,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또한 연구개발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다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사업 환경 하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마약, 마취류 의약품 내 독점품목 다수 보유 및 순환기, 소화기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시장의 경쟁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기 준비중인 신약 등의 개발 또는 출시가 지연되거나, 효과와 안정성이 업그레이드 된 다른 대체제품이 출현하거나,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지속 진입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생산, 판매, 관리 등의 정부규제 위험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의약품의 개발에서 제조, 유통, 판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역시 타 산업 대비 엄격한 정부의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 및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장의 최근 GMP 적합판정일은 하길공장의 경우 2017년 04월 28일이며, 상신공장의 경우 2016년 07월 22일입니다.(GMP 적합판정은 3년 주기로 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관리 등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해당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의 생산공정이 GMP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GMP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의 품목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의약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의약품의 개발에서 제조, 유통, 판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영업활동 역시 타 산업 대비 엄격한 정부의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통제 관련 법령은 국가정책의 동향, 보건재정의 적자 상황,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 등에 의해 수시로 제정 및 시행되며 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일지라도 2009년 석면탈크사태, 최근 발생한 발암물질이 함유된 일부 발사탄 원료 문제처럼 갑자기 발견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완제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약사법」,「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등 다양한 제약산업 내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당사의 주력 제품인 마약류 및 마취제의약품의 경우 오용 및 남용의 위해성이 높은 약품의 특성상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등에 따라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의료마약 1개 품목 당 해외수입 5개와 국내제조 5개까지만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허가된 마약류 제조업자는 2005년 78개소에서 2016년 73개소로 오히려 감소할 정도로 허가자체가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약품 관리, 유통에 관한 법령]

제 도	개 요	근거법안	시행일
의약품 바코드 또는 RFID 태그 의무부착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관리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및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	약사법 제56조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제9호	2013.01.01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자에게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산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운영 등)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2016.07.01 부터 익일보고 시행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현황 등을 보고하는 제도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동법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2018.05.18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진국 수준의 생산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2016년 11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개정은 그간 식약처 지침 등으로 운영되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국제화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미국, EU, 일본 등과 같은 제약 선진국의 국제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GMP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전문의약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 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GMP 기준에 따른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높은 품질의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생산을 위해 KGMP 인증을 받은 당사의 하길 공장과 상신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최근 GMP적합판정일은 하길공장의 경우 2017년 04월 28일이며, 상신공장의 경우 2016년 07월 22일입니다.(GMP 적합판정은 3년 주기로 갱신) 현재 당사는 하길공장에서 완제의약품으로 내용고형제와 주사제 생산을, 상신공장에서 흡입액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한 제형은 대한약전 기준으로 경구로 투여하는 제제 중 정제와 경질캡슐제의 2가지 제형, 구강 내 적용하는 제제 중 구강용 정제, 기관지 및 폐에 적용하는 제제 중 흡입액제, 주사제 중 액상주사제(앰플, 바이알, 프리필드실린지), 동결건조주사제의 2가지 제형으로 총 6가지 제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전문의약품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 및 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관리 등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해당 규제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시스템 구축, 시설투자 등)이 발생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의 생산공정이 GMP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GMP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일부 또는 전체의 품목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리베이트 규제 관련 위험

정부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산업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약가인하제' 및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등 다양한 리베이트 관련 규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이 같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취지에 발맞춰 제약회사들은 대내외적으로 리베이트 정화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CP(Compliance Program)의 철저한 운영 및 CP담당자를 배정하여 영업직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통제를 통해 허용가능한 금품류 제공행위를 규정하며**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시행된 경제적이익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위한 시스템을 연초 구축완료하였으며 CP팀의 감독하에 안정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행정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이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제약업계 전반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부 규제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업체는 대부분 내수완제품 중심의 생산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내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하위 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약산업의 기업 행태는 의약품 선택권이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있기 보다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의사, 약사 등 대리인(agent)에게 주어지는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건당국의 광고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도는 일반의약품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즉, 보험약가가 정해진 가운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선택권을 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음성적인 리베이트 구조화라는 부작용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이렇게 과다 지출된 음성적 리베이트 비용은 높은 약가와 낭비적 사용, 과당경쟁이라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산업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수령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규정을 신설(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하였으며 2009년 1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약품의 보험약가 인하 규정(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인하)을 신설했습니다. 2010년 2월에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시행하였으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여,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여 리베이트 적발 약제를 1년의 범위 내에서 급여정지하고, 이 약제가 또 다시 정지될 경우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를 고려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취지에 발맞춰 제약회사들은 대내외적으로 리베이트 정화에 대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구)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베이트 관련 규제]

시행시기	구분	내용
2009	리베이트 / 약가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시 보험약가 최대 20% 인하 - 적발 이후 1년 내 동일행위 반복 시 최대 30% 인하
2010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
2014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 금액, 지급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요양급여 정지 - 리베이트 2회 적발 시 해당 품목의 보험목록 삭제
2017	약사법 개정안 시행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출처: 한국제약협회, SK증권)

공정경쟁규약은 크게 의료 관련 학회 등에 대한 기부행위, 자선목적의 의약품을 의료계에 기부하는 행위,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행위, 자사제품에 대한 설명회, 의료인의 초빙을 통한 강연 및 자문에 대한 비용지급, 학회의 부스 전시 및 책자 등에 대한 광고 행위, 견본품의 제공행위, 의약품 판매 승인 후 시판 후 조사에 있어서 비용지급행위, 보건의료전문가를 통한 시장조사 시 비용지급 행위 등에 있어 리베이트로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당사 역시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정도경영을 위해 내부적으로 CP(Compliance Program)를 운영하여 영업활동 중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3월 국회는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한 급여퇴출을 약가인하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부터 시행하여 온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약가인하제가 2018년 9월말부터 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2009년 도입되었다가 폐지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리베이트 적발시 보험약값 최대 20%인하) 보다 더 강화된 제재조치로서 리베이트 금지를 위해 1~2차 위반시 각각 최대 20%, 최대 40%까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차 위반부터는 1년 내에 급여 정지 처분을 부과하거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자체가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 급여 중지 또는 삭제라는 강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비의학적 사유로 환자의 약제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약가인하제(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리베이트 투아웃제)	개정안(약가인하제)
1차	급여정지 최대 1년	약가인하 (최대 20% 인하)
2차	급여정지 처분기간+2개월 단, 12개월 초과시 급여삭제	약가인하 (최대 40% 인하)
3차	급여 삭제	급여정지(1년 상한) 또는 과징금(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4차	-	급여정지(1년 상한) 또는 과징금(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자료: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및 약가인하제 재도입으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은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약가인하제도는 2009년 처음 약가약가인하제가 도입됐을 때보다 약가인하 범위가 넓어지고 과징금도 높아졌기 때문에 전보다 실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18년 1월 1일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시행하여 의약품공급업자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데이터화하여 의무적으로 기록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은 현재 모든 의약품공급업자들에게 2018년 가장 중요한 화두로서 시스템 구축, 내부교육, 운영에 있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리베이트에 관한 정부의 감시 강화는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이같은 강도 높은 정부의 규제는 제네릭 의약품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켜 제네릭 의약품 판매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음성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바, 국내 제약업체들은 과거 리베이트를 통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극복하고자 우수한 품질에 기반한 선진화된 마케팅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네릭을 탈피한 신약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 취지에 맞게 제약업계 역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CP(Compliance Program)의 철저한 운영 및 CP담당자를 배정하여 영업직원들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통제를 통해 허용가능한 금품류 제공행위를 규정하며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시행된 경제적이익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위한 시스템을 연초 구축완료하였으며 CP팀의 감독하에 안정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행정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같은 당사의 지속적인 내부관리 및 통제 절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리베이트와 관련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정부 규제에 위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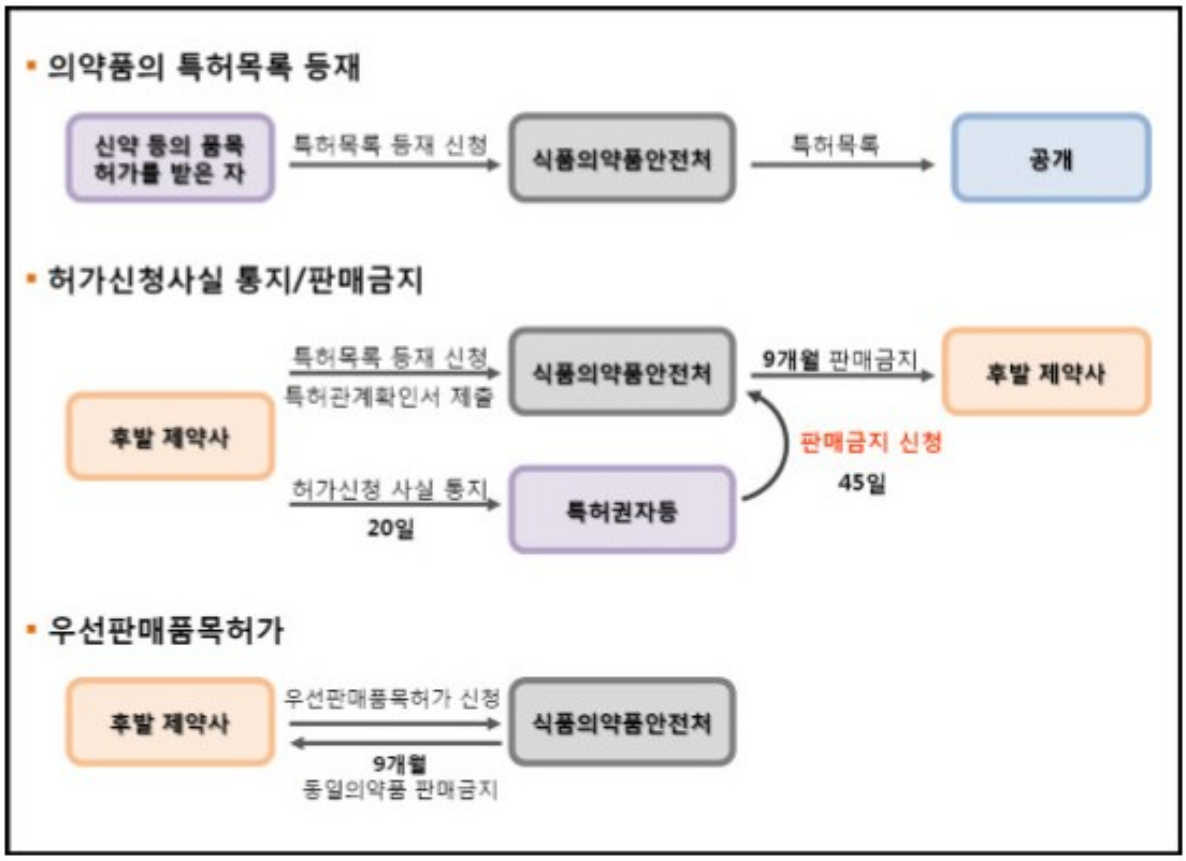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판매금지 조항등)로 인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전 허가제도 하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와 무관하게 제네릭의 허가가 이루어진데 반해 해당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제네릭의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게 되므로 신규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위해선 특허 전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당사는 특허 만료가 임박한 오리지널의약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제품 발굴 및 검토, 특허소송 및 특허 방어 등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팀을 운영하는 등 우선판매 품목허가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특허무효 5건, 특허회피13건을 승소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당사를 피고로 하는 특허침해 사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거나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을 경우 신제품 등의 출시가 지연되어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합의 사항으로 2015년 3월 15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통지를 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약처가 자동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 절차를 중지하게 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허가와 오리지널 의

약품의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로, 이전 허가제도 하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와 무관하게 제네릭의 허가가 이루어진데 반해 해당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제네릭의 허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게 되므로 특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네릭의 허가를 승인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약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여 질 좋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개관]



허가특허 연계제도 개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핵심은 제네릭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네릭 판매금지는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리지널의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하고 판매금지를 요청하면 식약처에서 소송기간 동안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최대 9개월까지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가장 먼저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으로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력화 시킨 업체는 9개월 간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아 9개월간 다른 제네릭의 진입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1:1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판매금지 조항등)로 인해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전 허가체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거나, 제네릭이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십 개의 제네릭이 동시에 출시되어 회사의 영업력에 따라 실적변동성이 컸으나, 이제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위해선 특허 전략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특허도전자가 승소한 무효심판은 265건(성공률 24%)이었으며, 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은 1건(성공률 0.2%),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심판은 465건(성공률 74%)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원천특허를 무효화시키는 전략 보다는 특허를 우회하는 회피전략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판청구도 시행 초기인 2015년 무효심판(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 포함)은 1,801건, 소극확인심판은 410건이었던데 반해, 2017년 경우 무효심판이 22건 청구에 머물고, 소극확인심판은 372건이 청구되어 후발 제약사들의 전략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네릭 제약사마다 맞춤형 특허전략을 바탕으로 특허도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허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선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당사는 특허 만료가 임박한 오리지널의약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제품 발굴 및 검토, 특허소송 및 특허 방어 등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팀을 운영하는 등 우선판매품목허가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및 특허무효소송 관련 당사 품목 현황]

No.	자사제품명	주성분/함량	진행현황		발매여부
			완료여부	건수	
1	파록시주	Palonosetron Hydrochloride	완료 완료	특허무효2건	발매완료
2	노마로핀정5/50밀리그램	Amlodipine besylate/Losartan Potassium 6.944/50mg	완료	권리범위심판3건	발매완료
3	노마로핀정5/100밀리그램	Amlodipine besylate/Losartan Potassium 6.944/100mg,			
4	제품명 미정	Linagliptin 5mg	완료	특허무효1건 권리범위심판1건	준비중
5	오스톨플러스정	Cholecalciferol Concentrated 56mg/ Risedronate Sodium 40.162mg	완료	권리범위심판1건	발매완료
6	티카그린정90밀리그램	Ticagrelor/90mg	완료	특허무효1건 권리범위심판1건	준비중
7	제품명 미정	Tofacitinib citrate/8.078mg	진행중	특허무효1건 권리범위심판4건	준비중
8	제품명 미정	Teneligliptin HBr Hydrate/31mg	진행중	특허무효1건	준비중
9	챔스탑정0.5밀리그램	Varenicline Tartrate 0.85mg	진행중	권리범위심판2건	준비중
10	챔스탑정 1밀리그램	Varenicline Tartrate 1.71mg			
11	베시큐정5밀리그램	Solifenacin Succinate 5mg	완료	특허무효1건	발매완료
12	베시큐정10밀리그램	Solifenacin Succinate 10mg			
13	사포란SR정(가칭)	Sarpogrelate HCl/300mg	완료	권리범위심판1건	준비중
14	알리덤연질캡슐30밀리그램	Alitretinoin/30mg	완료	권리범위심판1건	준비중
15	알리덤연질캡슐10밀리그램	Alitretinoin/10mg			
16	프레진정	Polaprezinc 75mg	진행중	권리범위심판1건	준비중

17	에스타렌투엑스정	Artemisia Herb 95% Ethanol Soft Ext. (20→1)/90mg	진행중	권리범위심판1건	준비중

(출처: 회사제시 자료)

당사는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 복합제인 아모잘탄정(로사르탄/암로디핀)의 조성, 용도특허 3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성공함으로써,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사례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제이헬스케어의 항구토제인 알록시주(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첫 번째 제네릭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알록시주의 조성, 용도특허 2건에 당사 단독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 무효화에 성공함에 따라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조성의 제네릭 제품을 첫 번째로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SK케미칼의 위염, 위궤양 치료제인 프로맥정(폴라프레징크)의 조성특허를 회피 설계하여 제약사 중 최초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및 퍼스트제네릭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동맥경화 치료제 브릴린타정(티카그렐러)의 조성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성공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즉시 시장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의약품의 출시를 계획하는 시기부터 특허권자의 특허 분석을 통하여 특허도전 및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선판매 품목허가 등을 획득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개발의 잠재력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거나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을 경우 신제품 등의 출시가 지연되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인력 유출 위험

제약산업의 전문화된 기술들은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바, 당사는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본부는 현재 합성연구실, 제품개발연구실, 분석연구실, 바이오약리실 및 연구기획실 총 5개 연구파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의 연구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49명으로 판교의 R&D센터와 중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적극적인 우수 연구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회사의 비전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우수인력 스카우트 등에 따라 핵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경우, 당사의 핵심 기술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R&D 경쟁력이 약화되어 당사의 영업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개량신약 및 신약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핵심 연구 인력의 높은 질적 수준과 축적된 노하우에 힘입어 다양한 의약품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9년 중앙연구소를 설립하며 원료의약품의 합성 및 제제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전문의약품을 생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30품목 이상의 원료의약품 제조허가 및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또한 2016년 판교

테크노밸리 R&D센터에 판교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판교 연구소는 향남제약단지에 위치한 기존 향남 중앙연구소에 이어 1,750㎡의 면적에 제제연구실, 바이오약리연구실 등을 갖추었으며 현재 우수인력 확충을 통해 신약, DDS(Drug Delivery System) 기반 개량신약 및 조영제 등의 특화된 연구와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 연구본부는 새롭고 효율적인 기술들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원료 합성능력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여, 2017년 Granisetron을 필두로 항구토제 원료의약품들의 일본 수출허가를 위한 심사를 마쳤으며, 당사의 원료의약품을 해외시장으로 판매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약산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바, 당사는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본부는 현재 합성연구실, 제품개발연구실, 분석연구실, 바이오약리실 및 연구기획실 총 5개 연구파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의 연구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49명으로 판교의 R&D센터와 중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본부 조직별 업무]

구분	해당업무	상세
합성 연구실	- 고품질,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량신약 개발	- 신약/개량신약 합성 기술 - 원료의약품 생산 및 공정 최적화 - 고품질 원료 합성 기술 개발
제품개발 연구실	- 자사 신제품 출시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및 제제기술 발전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	- 제제설계 및 물성연구 - 제제공정 개선 및 최적화 연구 - Bioavailability 및 Bioequivalence 연구 - 신규 특수 제형 연구
분석 연구실	-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준시험법 설정 및 분석법 개발	- 기준 및 시험법 확립 - 신제품 시험설계 및 분석 - Method Validation
바이오 약리실	- 약효 및 Druggability 검증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 Druggability evaluation - 약효 및 약리 연구 -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 비임상 과제 관리
연구 기획실	- 연구본부 운영, 정책 관리,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기술 도입 및 검증	- 연구방향 및 정책 수립 및 기획 - 외부기술의 도입 및 검증 -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제휴

[연구소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기타	계
연구본부장	1	-	-	-	-	1
합성연구실(하길)	-	7	-	-	-	7

공정연구실(하길)	-	-	3	2	3	8
분석연구실(하길)	-	-	5	1	-	6
기획 및 조사실(판교)	-	-	2	-	-	2
제품연구 1, 2실(판교)	-	13	-	-	-	13
분석연구실(판교)	-	2	3	-	-	5
바이오약리실(판교)	2	1	-	-	-	3
연구기획실(판교)	1	2	-	-	1	4
총계	4	25	13	3	4	49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의 전문화된 기술들은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 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핵심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적극적인 우수 연구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회사의 비전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 확대를 통해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당사의 노력이나 회사정책의 지속 여부와 상관 없이 제약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우수인력 스카우트 등에 따라 핵심인력이 경쟁회사 또는 다른 산업분야로 이탈할 경우, 당사의 핵심 기술 노하우의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R&D 경쟁력이 약화되어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세무조사 위험

당사는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총 245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총 47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2차례의 세무조사는 전액 세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세무조사 이후 당사 및 경영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세무조사 이후 접대성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확립 및 현금지출관리규정과 법인카드 사용규정 신설, CP(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교육 실시 등 유관 내부통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 2018년 5월 당사는 삼일회계법인에게 세무진단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 당사는 과거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15년 수감한 세무조사의 주기를 고려시 **2019년에 당사의 정기세무조사가 수감될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며, 세무조사를 통한 과다한 규모의 세금부과 등 발생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이하 "접대비실명제"라 한다.)에 의하여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 이름과 소속 회사, 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활동 및 경기를 위축 심화시키는 비현실적인 법령이라는 이유로

2009년 폐지됨에 따라, 과거 당사를 포함한 각 제약사들은 영업비용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①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금원을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허위증빙으로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판매촉진비 등에 계상하였고, ② 전도금 지출에 대한 증빙이 법적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구비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총 245억원(법인세 228억원, 개인소득세 16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

또한, 2015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을 대상으로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총 46억원(법인세 29억원, 지방세 4억원, 소득세 13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2011년 및 2015년 세무조사 내역]

구분		내용
2011년 세무조사	조사연도	2011년
	조사대상기간	2006~2010년
	처분내용	-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약 582억원(이하 “전도금”)을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인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계상함 - 전도금 지출에 대한 증빙 역시 법적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구비하고 있음
	추징세액	- 총 245억원 - 법인세 228억원, 개인소득세 16억원
2015년 세무조사	조사연도	2015년
	조사대상기간	2012~2014년
	처분내용	-증빙없는 비용사용액, 접대성 경비의 변칙 회계처리 -사전약정 초과하는 매출할인액, 사용처 불분명한 상품권 구입 -대손요건 충족하지 못한 매출채권, 비연구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미사용 재료비 등
	추징세액	- 총 47억원 - 법인세 29억원, 지방세, 4억원, 소득세 13억원

2차례의 세무조사는 전액 세금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세무조사 이후 당사 및 경영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구분	내용
회계처리 기준 확립	- 2011년부터 발생한 접대성 경비에 대해 접대비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내부규정 신설	- 내부규정(현금지출관리규정 및 법인카드 사용규정)을 통해 법적 증빙과 규정내의 사용분 외에는 현금과 법인카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음
교육 실시	- 2015년부터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제도의 시행으로 별도 CP담당자를 배정하여 영업사원들의 정기적 교육 및 내부통제를 통해 허용가능한 금품류 제공행위를 규정함

당사는 2011년 세무조사 이후 접대성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확립 및 현금지출관리규정과 법인카드 사용규정 신설, CP(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교육 실시 등 유관 내부통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를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 2018년 5월 당사는 삼일회계법인에게 세무진단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 당사는 과거 세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 가능한 Tax 이슈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15년 수감한 세무조사의 주기를 고려시 2019년에 당사의 정기세무조사가 수감될 가능성은 높은 수준이며, 세무조사를 통한 과다한 규모의 세금부과 등 발생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험

당사는 2011년 세무조사 수감으로 245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으며, 이 사안에 기반하여 2016년 당사 및 당사의 前 대표이사인 조경일, 전영실, 허인구 등 3인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2심 판결에 따라 하나제약은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전 대표이사인 전영실, 허인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전 대표이사인 조경일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형의 선고유예'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조경일 전 대표이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조경일 전 대표이사의 대법원 상고의 경우 회사와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회사에 추가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회사위험 바. 세무조사 위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정기세무조사가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바, 해당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처벌법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 고발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바. 세무조사 위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감하였고, 총 245억원(법인세 228억원, 개인소득세 16억원, 부가가치세 0.97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前 대표이사인 조경일, 전영실, 허인구 등 3인은 2016년말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8년 5월 30일 2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동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구분	세부내용
사건	2017노3586

<table>
<tr><td>피고인</td><td>1.조경일 2.전영실 3.허인구 4.하나제약주식회사</td></tr>
<tr><td>공소사유</td><td>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변칙 회계처리</td></tr>
<tr><td>사건개요
및 결과</td><td>2011년에 있었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소건으로 재판결과는 다음과 같음

1.범죄사실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하나제약(주)</td><td>대표이사인 조경일, 전영실, 허인구는 하나제약 주식회사 업무에 관하여 국세인 법인세 5,044,385,000원 및 부가가치세 27,272,000원 등 총 5,071,657,000원을 포탈함</td></tr><tr><td>조경일
외 2인</td><td>2008년 부터 2011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금원을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고 허위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함으로써 국세인 법인세 합계 7,652,038,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8,362,000원 등 총 7,680,400,000원을 포탈함</td></tr></table>
2. 판결 주문
1)하나제약주식회사: 형의 선고유예(형의 확정)
2)피고인 전영실, 허인구: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형의 확정)
3)피고인 조경일: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벌금(77억)(대법원 상고 진행 중)

3. 양형사유
1)추징세금을 납부하여 세입의 감소가 회복됨
2)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td></tr>
</table>

다만, 상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2심 판결 선고 결과 당사의 경영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형의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며, 피고인 개인(조경일 외 2인)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형의 선고유예'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조경일 전 대표이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조경일 전 대표이사의 대법원 상고의 경우 회사와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회사에 추가적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회사위험 바. 세무조사 위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정기세무조사가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인 바, 해당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처벌법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 고발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당사의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2015년 영업이익률 14.17%, 당기순이익률 4.51%, 2016년 영업이익률 19.01%, 당기순이익률 14.00%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영업이익률 22.92%, 당기순이익률 17.45%를 기록하며 2015년부터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높은 원가구조와 함께 판매관리비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력제품의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원가율 상승 및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영업인력의 유출, 생산시설 확충으로 고정비 부담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74,310	139,331	124,535	108,942
매출원가	24,188	44,954	40,623	37,453
매출총이익	50,122	94,378	83,912	71,489
판매비와 관리비	34,361	62,440	60,242	56,048
영업이익	15,761	31,937	23,671	15,441
당기순이익	11,439	24,310	17,431	4,911

[수익성 비율 분석]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회사	업종평균(주2)	
매출액총이익률	67.45%	67.74%	67.38%	41.20%	65.62%
영업이익률	21.21%	22.92%	19.01%	8.90%	14.17%
당기순이익률	15.39%	17.45%	14.00%	9.30%	4.51%
자기자본순이익률	26.87%	35.64%	39.08%	8.80%	16.57%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업종평균 :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주3)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18년 반기 순이익을 연환산(순이익*2)하여 산출

당사의 매출액은 2015년 1,090억원(YoY+ 22.4%), 2016년 1,245억원(YoY+ 14.3%), 2017년 1,393억원(YoY+ 11.9%)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매출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원가는 변동이 크지 않아 매출액총이익률은 최근 3개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높은 원가구조와 함께 판매관리비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관비의 경우 2015년도 560억원(매출액 대비 51.3%), 2016년도 602억원(매출액 대비 48.3%), 2017년도 624억원(44.8%)으로 절대금액은 증가하였으나, 판관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인력에 대한 실적관리와 함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을 통해 효율성 높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영업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인력	261	236	247
전체 인력	513	470	459
영업인력 비중	50.9%	50.2%	53.8%

영업인력은 2015년 247명, 2016년 236명, 2017년 26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는 인력의 충원보다는 개인별 실적개선을 위해 집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원의 증가가 없었으나, 2014년부터 유능한 영업인력의 당사에 대한 지원과 영입을 통해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영업인력의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유능한 영업인력의 영입을 통해 높아진 생산성은 판관비 증가 대비 높은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높은 수익구조와 판매관리비의 규모의 경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 주력제품의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원가율 상승 및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영업인력의 유출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시설 확충으로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거나, 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의 차입금은 2015년 393억원에서 2016년 301억원, 2017년 291억원, 2018년 반기 214억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2015년 188.89%, 2016년 106.53%, 2017년 74.44% 그리고 2018년 반기 58.86%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영업현금흐름 안정에 따른 차입금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제약업계의 부정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당사 주요 품목의 수요급감 또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에 따른 차입금 증대 등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2015년 393억원에서 2016년 301억원, 2017년 291억원, 2018년 반기 214억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2015년 188.89%, 2016년 106.53%, 2017년 74.44% 그리고 2018년 반기 58.86%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 내역 및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단기차입금	1,226	1,730	1,751	7,691

유동성장기부채	14,546	21,102	8,028	5,191
장기차입금	5,655	6,214	21,155	26,389
합계	21,427	29,045	30,934	39,272

[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회사	업종평균(주2)	
부채비율	58.86%	74.44%	106.53%	66.10%	188.89%
차입금의존도	15.09%	20.57%	26.99%	19.40%	40.30%
유동비율	177.13%	160.54%	177.37%	161.50%	155.55%
당좌비율	130.22%	120.99%	124.50%	121.60%	113.32%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업종평균 :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당사의 2016년 기준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업종평균 대비 소폭 높은 편이나, 2017년 기준 부채비율 74.44%, 차입금의존도 20.57%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율 자체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11년, 2015년 세무조사로 인한 비용 납입과 매출확대를 위한 투자로 인해 실적변동성이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영업현금흐름 안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차입금과 부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제약업계의 부정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당사 주요 품목의 수요급감 또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에 따른 차입금 증대 시 안정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 매출채권의 부실화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15년 303억원에서 2016년 353억원, 2017년 380억원, 2018년 반기 기준 394억원으로 매출액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4.47회에서 2016년 3.80로 감소한 이후 2018년 반기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법인세 납부를 위한 매출채권 할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높아졌던 매출채권회전율이 2015년 이후 안정화된 경우입니다. 당사는 의약품을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 강화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채권 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간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이 또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규모는 2015년 303억원에서 2016년 353억원, 2017년 380억원, 2018년 반기 기준 394억원으로 매출액 증가와 함께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6년 기준 3.80회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17.10 발표)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2016년 매출채권회전율 3.41회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5년 4.47회에서

2016년 3.80회로 감소한 이후 2018년 반기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법인세 납부를 위한 현금의 필요에 따라 매출채권의 할인을 통해 현금을 조달하였고 이는 매출채권 감소로 이어져 2013년, 2014년 매출액의 증가율에 비해 매출채권증가율이 낮아 매출채권회전율이 일시적으로 높았으나, 2015년 이후 매출액 대비 안정적인 비율의 매출채권을 유지함으로써 동종업계수준의 매출채권회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재무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제약업 평균 (2016년)	2015년
매출액	74,310	139,331	124,535	-	108,942
매출채권	39,407	37,975	35,267	-	30,293
매출채권증가율	3.77%	7.68%	16.42%	-	63.95%
매출채권회전율	3.84회	3.80회	3.80회	3.41회	4.47회

주) 2018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은 2018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매출액*2)하여 산출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제각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74,310	139,331	124,535	108,942
매출채권	39,407	37,975	35,267	30,293
(대손충당금)	(334)	(450)	(868)	(714)
대손충당금 설정 비중	0.85%	1.18%	2.46%	2.36%
제각금액	35	29	48	185

2018년 반기말과 2017년 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매출발생일로부터 매출채권을 3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수하고 있으며, 대손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채권잔액	충당금 설정액	채권잔액	충당금 설정액
3개월 이내	37,498	76	35,602	130
6개월 이내	1,332	3	1,738	5
9개월 이내	133	10	198	19
12개월 이내	149	27	83	13
12개월 초과	295	218	354	283
합 계	39,407	334	37,975	450

당사는 6개월 이하는 정상채권,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는 부실징후채권, 12개월 이상은 부도 가정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매출처의 신용도 및 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에 따른 당사의 조치사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구분
6개월 이내	- 출하기준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판단
6개월 이상 1년 이내	- 6개월 이상채권에 대하여는 분기에 1번 영업담당자에게 수금독촉 및 부동처미정리사유서를 수령 - 부동처미정리사유서에 기재된 채권회수 지연의 사유가 거래처측에 있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실시
1년 이상	- 1년 초과된 매출채권은 상당부분 회생채권 - 회생채권은 회생결정문의 변제기일에 따라 회수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이 아닌 채권은 당사 내부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

당사의 일부 매출처의 경우 사업 환경의 악화 등으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일에 회수가 진행되고 있어 지급 받지 못할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악화된 매출채권의 추심을 위해 별도로 부실화된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정부의 규제 강화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채권 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간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이 또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손실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5년 7.67회, 2016년 7.68회, 2017년 7.47회, 2018년 반기 기준 7.68회 수준으로 업종평균인 5.20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고자산 증가보다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시장 및 영업활동 분석을 통해 재고자산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장기체화 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지연 및 장기체화재고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5년 7.67회, 2016년 7.68회, 2017년 7.47회, 2018년 반기 기준 7.68회 수준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업종평균인 5.20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규모는 2015년 144억원, 2016년 180억원, 2017년 193억원 수준, 2018년 반기 기준 19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회전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고자산 증가보다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시장 및 영업활동 분석을 통해 재고자산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체화 재고로 인한 당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고자산 관련 재무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회사	업종평균 (주2)	
매출액	74,310	139,331	124,535	-	108,942
재고자산	19,440	19,270	18,027	-	14,386
재고자산증가율	0.88%	6.90%	25.31%	11.24%	2.59%
재고자산회전율	7.68회	7.47회	7.68회	5.20회	7.67회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업종평균 :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당사의 재고자산 중 원부재료 및 저장품은 2년, 재공품은 1년간 movement가 없는 경우, slow moving 재고로 판단하여 100% 충당금을 설정하며, 제품은 NRV test를 수행하여 저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재고자산	20,133	20,157	19,517	15,721
평가충당금	693	888	1,490	1,335
재고자산 대비 충당금 비율	3.44%	4.40%	7.64%	8.49%

주1) 재고자산은 평가충당금 차감전 금액

당사는 보유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 유효기간은 약 2년이며 특정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관련 원재료를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진됩니다. 제품의 경우 원재료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유효기간이 약 2년~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실제 3년이 넘는 원료도 있으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임), 원재료와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관련 원재료를 폐기하거나 샘플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 예상 실패로 인한 매출지연 및 장기체화재고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특수관계자 거래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최근 3사업년도 및 당해사업년도 포함)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거래 및 자금거래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금유출로 인한 유동성 저하 위험, 이해관계인간의 이해상충 위험 등 당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최근 3사업년도 및 당해사업년도 포함) 특수관계자와의 매

출・매입거래 및 자금거래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자금유출로 인한 유동성 저하 위험, 이해관계인간의 이해상충 위험 등 당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견제하기 위해 하기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견제장치]

구분	내용
사외이사 2인 선임	당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의거할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인 사외이사 1인만을 선임하여도 무방하나, 금번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 2인을 신규로 선임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상근감사 선임	당사는 상근 감사 1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이사회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 제정	당사는 2018년 5월 2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비경상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경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거래 등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이사회를 전원참석 전원동의 결의로 거래를 진행하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위험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유사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 분쟁, 거래상대방과의 공급계약 또는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에 의해 부정적으로 판결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 분쟁, 거래상대방과의 공급계약 또는 수수료 지급, 핵심인력 유출입,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구개발비용 회계처리 관련 위험

당사는 제약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는 2010년 설립된 하길 중앙연구소 및 2016년 설립된 판교 R&D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의약품 및 제네릭 신제품, 개량신약, 신약 등 다양한 품목군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 등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에 부합함은 물론 해당 신약의 품목허가승인에 이은 실제 제품출**

시가 이루어진 시점에 한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해기간의 비용으로 전액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자산처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국내 3상 임상중인 레미마졸람 관련 라이센스인 계약금의 경우 총 300만유로의 라이센스인 계약금액 중 2013년에 기지급된 계약금 100만유로는 현재 비용처리하지 않고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미마졸람의 경우 계약시점인 2013년에 이미 글로벌 2상 임상이 완료되어 신약발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서, 품목허가승인에 이은 실제 제품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21년에 총 300만유로에 해당하는 라이센스인 계약금액을 자산처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레미마졸람의 제품출시가 품목허가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패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액 전부를 비용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약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당사는 2010년 설립된 하길 중앙연구소 및 2016년 설립된 판교 R&D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의약품 및 제네릭 신제품, 개량신약, 신약 등 다양한 품목군을 연구하고 있으며, 여러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과 관련한 당사의 최근 3개년도 연구개발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제41기 2분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39기)	2015연도 (제38기)
원 재 료	753	1,108	940	985
인 건 비	1,190	2,129	2,238	851
제 조 경 비	-	-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586	922	981	1,472
합계	2,529	4,159	4,159	3,308
자 산 계 상	-	-	-	-
비 용 계 상	2,529	4,159	4,159	3,308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	3%	3%	3%

한편,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당사 또한 연구개발 중인 신약 등이 해당 기준에 부합함은 물론 해당 신약의 품목허가승인에 이은 실제 제품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 한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상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기준]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해기간의 비용으로 전액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의 자산처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국내 3상 임상중인 레미마졸람 관련 라이센스인 계약금의 경우 총 300만유로의 라이센스인 계약금액 중 2013년에 기지급된 계약금 100만유로는 현재 비용처리하지 않고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미마졸람의 경우 계약시점인 2013년에 이미 글로벌 2상 임상이 완료되어 신약발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서, 품목허가승인에 이은 실제 제품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21년에 총 300만유로에 해당하는 라이센스인 계약금액을 자산처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레미마졸람의 제품출시가 품목허가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패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액 전부를 비용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매출액의 약 3%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레미마졸람 및 조영제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연구개발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임상 비용 등 재정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진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이 수익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수익과 대응되지 못하며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희망공모가액 평가방식의 한계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비교기업의 2017년 온기 실적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비교기업은 업종 유사성, 사업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일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기업(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2017년 실적 기준 PER의 평균은 22.4배이고,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PER의 평균은 22.6배입니다.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에 할인율 28.3%~18.0%를 적용한 공모희망가액은 24,500~28,000원이며, 이를 당사의 2017년 실적 기준 PER로 환산시 16.3배~18.7배, 최근 12개월 실적 기준 PER로 환산시 16.0배~18.3배입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노선 및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를 위한 당사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외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17년 실적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산업표준 세세분류상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에 속해 있으며, 해당 산업분류 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78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재무적 유사성, 사업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5개 기업(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사의 비교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기업 선정 요약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해당기업
모집단 선정	업종 유사성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78개사
1차 유사기업	사업의 유사성	① 전문의약품(ETC)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② 바이오시밀러, 신약개발 업체 제외 ③ 수액, 피부미용, 염모제 생산기업 제외	24개사
2차 유사기업	재무적 유사성	① 12월 결산법인 ②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시현 ③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각 10% 이상인 기업 ④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EPS가 액면가의 50% 초과 기업	5개사
최종 유사기업	일반 기준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②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5개사

2017년 온기 실적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 적용한 당사의 상대가치 산출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7년 실적을 적용한 PER 산출]

구분	단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시가총액 (A)	백만원	889,759	654,880	316,742	374,791	206,960
당기순이익 (B)	백만원	23,028	35,796	20,226	27,172	8,065
PER (C=A÷B)	배	38.64	18.29	15.66	13.79	25.66
적용 여부	-	O	O	O	O	O
평균 PER	배	22.41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주1) 기준주가의 경우 분석기준일(2018년 8월 14일)의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적용한 PER 산출]

구분	단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시가총액 (A)	백만원	889,759	654,880	316,742	374,791	206,960
최근 12개월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순이익	백만원	23,059	40,026	18,449	24,176	8,105
PER (C=A÷B)	배	38.59	16.36	17.17	15.5	25.53
적용 여부	-	O	O	O	O	O
평균 PER	배	22.63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주1) 기준주가의 경우 분석기준일(2018년 8월 14일)의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구분	2017년 기준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비고
지배주주 순이익 (주1)	24,305 백만원	24,774 백만원	A
적용 PER 배수 (주2)	22.41 배	22.63 배	B
평가 시가총액	544,652 백만원	560,651 백만원	C = A ×B
평균	552,651 백만원		E
적용 주식수 (주3)	16,200,000주		F
주당 평가가액	34,114 원		G = E ÷ F

(주1) 적용 당기순이익 : 당사의 2017년 온기 당기순이익(지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순이익(지배)을 적용

(주2) 적용 PER 배수 : 유사기업의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PER을 적용

(주3) 적용 주식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118,540주 + 신주모집 주식수 4,081,460주

【 하나제약㈜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34,11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8.3% ~ 18.0%
공모희망가액 밴드	24,500원 ~ 28,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	26,000원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비교기업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

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제품(Service),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R 평가방식의 한계점 】

1.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4.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5.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비교기업 선정 및 PER 평가방식의한계가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가격 결정 방식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상장 후 매도가능물량으로 인한 위험

당사의 공모 후 상장예정주식총수 16,200,000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9,445,152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58.3%, 상장 후 6개월)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개인주주의 소유주식수 140,000주(공모 후 주식수 기준 0.9%, 상장 후 6개월) 및 공모 후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게 될 816,292주(총 공모주식수의 20%, 예탁 후 1년)를 제외한 보통주 5,798,556주는 상장 이후 즉시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최대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 9,445,152주(공모 전 77.9%, 공모 후 기준 58.3%)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개인주주(6인)의 소유주식수 140,000주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가 적용됩니다.

공모주식 중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816,292주(공모 후 기준 5.0%)는 상장 이후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수는 청약일 이후 우리사주조합 신

청(청약)수량에 따라 확정되며, 일부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탁 주식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유통가능주식수 등의 현황]

(단위 : 주)

구 분		공모 후 주식수	공모 후 지분율	매각제한 기간	비고
유통제한물량	최대주주등	9,445,152	58.30%	6개월	-
	우리사주조합	816,292	5.04%	1년	-
	개인주주	140,000	0.86%	6개월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이 소유한 주식 취득
	소 계	10,401,444	64.21%	-	-
유통가능물량	공모주주	3,265,168	20.16%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제외
	개인주주	2,040,934	12.60%		-
	기획재정부	492,454	3.04%		-
	소 계	5,798,556	35.79%	-	-
합 계		16,200,000	100.00%	-	-

주)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통제한 물량을 제외한 5,798,556주(공모 후 기준 35.8%)는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수량은 수요예측을 통해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들의 물량을 포함하지 않은 유통가능물량으로 실제 유통가능물량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기의 유통가능물량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청약 시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 등의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실권 물량이 일반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되어 당초 일반투자자에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 보다 실질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개인별 배정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청약 시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최대주주등 및 개인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Green Shoe)"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또한 당사는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Green Shoe)"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등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주식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증권신고서 정정 위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 역시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②항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

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 또한 수요예측 실시 후 모집(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 만큼 공모주식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2018년 반기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검토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4,081,46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816,292주(공모주식의 20.0%, 우선배정), 일반청약자 816,292주(공모주식의 20.0%), 기관투자자 2,448,876주(공모주식의 60.0%) 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2,448,876주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10일 ~ 2018년 9월 11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17일 ~ 2018년 9월 18일에 실시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분으로 인수 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차.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주식의 환금성 관련 위험

금번 공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8월 13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공모 후 충족이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 등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결과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주권을 심사한 결과 상장예비심사신청일('18.6.11.)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중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주식분산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1)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영업활동의 정지, 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다액의 고정자산의 매각, 소송의 제기, 최대주주 및 임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주요 자산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의 결의, 그 밖에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 생긴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4)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정정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주권의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신규상장신청인은 신규상장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록 사본
2)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고서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함
4) 해당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타. 투자원금손실 관련 위험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상장을 통해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가는 최초 공모가액을 하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공모가에 금번 공모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투자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건 상장 이전에는 당사의 보통주가 거래되는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당사의 보통주 상장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활발한 공개시장이 형성 및 유지될 것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최초 상장 이후 시장가격이 크게 등락하여 해당 발행회사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소송이 당사에 제기된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

나 경영진의 관심 및 지원을 핵심 사업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 투자자는 취득한 보통주를 공모가격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 일일 가격제한폭 확대관련 위험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 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사를 상대로 이러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1,000억원 이상인 경우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

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 투자판단의 독립성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더.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러.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리스크 이외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본 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미래예측진술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정치 상황 및 부정적인 규제, 법률 발생
- 금리 변동 및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
-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소비심리 하락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황 및 환경의 변화

이러한 리스크와 관련된 특정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추정치에 불과하며, 이 같은불확실성이나 리스크 중 하나라도 실현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 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무관하게 미래예측진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본 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 예측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본건 공모주식 인수인이 당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발행회사인 하나제약㈜가 아닌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입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하나제약㈜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그 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 범위(공모가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산업,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 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평가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분	증권회사 (분석기관)	
	회사명	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00111722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하나제약㈜의

기명식 보통주식 4,081,46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반기의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참여자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미래에셋대우㈜	ECM본부	본부장	기승준	IPO 업무 총괄
	ECM본부 IPO1팀	이사	성주완	IPO 실무 총괄
		부장	조인직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차장	김지곤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차장	김형준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과장	김시영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하나제약㈜	-	대표이사	이윤하	경영 총괄
	-	부사장	조동훈	영업 및 업무 총괄
	경영관리본부장	이사	윤홍주	기업공개 총괄 책임자
	경리부	팀장	신승관	회계업무 담당
	경리부	과장	정태환	회계업무 담당
	마케팅부	이사	현명한	마케팅업무 담당
	판교 R&D센터	상무이사	송릿다	R&D업무 담당
	개발부	팀장	박병규	개발업무 담당
	총무부	과장	김민철	상장업무 실무담당
	총무부	주임	안홍인	상장업무 실무담당
	법무팀	주임	이준	상장업무 실무담당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하나제약㈜에 방문하여 상장예비심사신청 등을 위한 기업실사를 2016년 04월부터 2018년 06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일까지 상장관련 증권신고서 작성 및 마케팅을 위한 실사를 진행(세부일자는 아래 기업실사 절차참조)하였습니다.

(1) 장소

- 서울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15~16층(역삼동, 나래빌딩)
- 하길공장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 상신공장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133
- 판교 R&D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E동 101호

(2) 일자 및 주요 내용

구 분	일 자	실 사 내 용
대표주관계약 체결	2016.03.25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Kick off 미팅	2016.04.08	1) 상장일정 및 기업실사 일정 협의 2) 기업공개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설명 - 분산 및 공모규모 협의 - 향후 세부일정에 대한 협의
기업실사 사전준비	2016.06.07 ~ 2016.06.20	1) 기업실사 범위 및 방법 협의 2) 기업실사 참여자 구성 3) 자료요청 및 인터뷰 - 사업계획,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내규 등 - 3개년 감사보고서, 결산명세서 - 조직도 및 인원현황
기업실사 1차	2016.06.21 ~ 2016.06.23	1) 회사전반에 대한 이해 - 사업계획 및 영업현황 등에 관한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주요 Cycle별 담당자 설명 청취 및 인터뷰 - 비즈니스모델 및 수익구조 파악 - 장단기 영업 및 구매 관련 Process 검토 2) 지배구조 및 제반 규정 검토 -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사회의 독립성 검토 - 최근 3개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주요 내역 검토 - 이사회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제반 규정 검토 3) 주식 관련 사항 검토 - 주주현황 및 자본금 변동사항 검토 4) 재무자료 검토 - 최근 3개년 감사(검토)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검토 5) 상장적합성(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기업실사 2차	2016.07.18	1) 1차 실사시 이슈사항 F/U 2) 재무, 회계 관련 인터뷰 3) 상장 적합성(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기업실사 3차	2016.08.22	1) 생산시설 현장 실사 2) 생산담당 인력 인터뷰
기업실사 4차	2016.09.02	1) 중앙연구소 및 판교R&D센터 현장 실사 2) 연구인력 인터뷰
기업실사 5차	2016.12.01 ~ 2016.12.02	1) 재무, 회계 관련 추가 인터뷰 2) 상장 적합성 검토 3) 회사의 영업위험 평가

기업실사 6차	2017.04.10 ~ 2017.04.12	1) 2016년 온기 재무현황 검토 2) 내부통제 관련 사항 검토 3) 주요 이슈 정비내용 검토
기업실사 7차	2017.08.29 ~ 2017.08.30	1) 주요 이슈 정비내용 검토 2) 2017년 반기 온기실적 점검 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논의
기업실사 8차	2017.11.20 ~ 2017.11.21	1) 상장일정 및 기업실사 일정 협의 2) 2017년 3분기 실적 및 재무현황 검토 3) 주요 이슈사항 검토
기업실사 9차	2018.02.26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2) 보호예수 관련 절차 설명
기업실사 10차	2018.03.15 ~ 2018.03.23	1) 2017년 실적에 대한 검토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및 검토
기업실사 11차	2018.03.30 ~ 2018.05.24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및 검토 2) 밸류에이션 협의
기업실사 12차	2018.05.25 ~ 2018.06.10	1)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검토 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Draft 제출 4)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최종 검토
상장예비심사신청	2018.06.11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유가증권시장본부)
심사대응 및 승인	2018.06.11 ~ 2018.08.13	1) 거래소 심사대응 2) 신청서 제출 후 주요 변동사항 검토 3) 공모구조 및 Valuation 검토 4) 상장예비심사 승인(2018.08.13)
기업실사 13차	2018.08.10 ~ 2018.08.19	1) 공모가 협의 준비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 간 공모가액 협의 - 유사회사 검토 및 주가추이와 재무현황 등 검토 2) 2018년 반기 실적 검토 3) 증권신고서 작성 4) 신고서 제출 이후 IR일정 및 자료 협의
증권신고서 제출	2018.08.20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시

3.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사업의 수익성

동사의 최근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GAAP	K-GAAP
매출액	74,310	139,331	124,535	108,942

매출원가	24,188	44,954	40,717	37,453
매출총이익	50,122	94,378	83,818	71,489
판매비와 관리비	34,361	62,440	59,862	56,048
영업이익	15,761	31,937	23,956	15,44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4,188	30,968	22,290	12,131
당기순이익	11,439	24,310	17,730	4,911

(주) 별도 재무제표 기준

동사는 주력 제품인 마약・마취류 제품 이외에도 순환기, 소화기, 진통제 등 다양한 제품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종합병원 마취과영역은 마취과약물 1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중환자실, 소화기, 통증 및 암환자 관리 등 타과로의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2015년 이후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 성장하는 등 매출액의 외형성장 뿐만 아니라 수익성 지표의 개선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의원 시장은 활성화 되어 있는 처방의약품 및 검진영역 품목과 비급여품목을 더욱 육성하고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품목 등 시장성 있는 경구제의 매출을 증대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네릭 신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영업인력의 공격적인 확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 주요 제품의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유지 또는 상승되고 있는데, 이는 동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마약, 마취류 제품을 특화시켜 종합병원 등에 집중공급 한 뒤 그 외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들을 분산공급하는 전략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나. 사업의 성장성

(1) 시장의 성장성

(가) 글로벌 제약시장

2016년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는 11,046억 $로 2015년 대비(10,690억 USD) 3.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약시장은 지난 2011년 이후 연 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하여 1조 4,500억 USD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IQVIA, 2016). 이와 같은 성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 생활패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건강증진・유지・개선을 위한 의료 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측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 추이]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 추이

(출처: QuintilesIMS Institute,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6)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등 브랜드 신약 중심으로 고가 품목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의료체계 확대 및 개선으로 인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파머징 시장에서의 의약품 사용량 증가 또한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① 파머징 시장의 확대

세계 의약품 시장은 파머징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 고령화,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머징이란 제약을 뜻하는 '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와 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약산업 신흥시장을 뜻합니다.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파머징 국가가 최근 5년간 연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QuintilesIMS에 따르면 미국, EU 5개국, 일본 등 선진국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7,493억 달러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68%를 차지하며, 향후 연평균 4~7%로 성장하여 약 1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파머징 국가들은 2016년 2,429억 달러(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22%)로 규모는 작으나 선진국 대비 빠른 성장(연평균 6~9%)이 예상되어 약 3,4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머징 시장의 대표주자로서 파머징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의료개혁을 통해 전 국민의 90%이상에 대한 보험혜택 및 대형병원의 대폭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파머징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도의 경우 파머징 국가의 약 7.2%(2016년 기준)를 차지하는 작은 시장이나 우수한 기술력과 자급 생산능력이 풍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파머징 국가에서의 의약품 소비성장은 글로벌 제약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국가별 제약시장 현황 및 전망]

국가	2016년 (십억달러)	2011~2016 CAGR(%)	2021 (십억달러)	2016~2021 CAGR(%)
글로벌 전체	1,104.6	6.2%	1,455~1,485	4~7%

선진국	749.3	5.4%	975~1,005	4~7%
미국	461.7	6.9%	645~675	6~9%
EU5개국	151.8	3.9%	170~200	1~4%
일본	90.1	2.0%	90~94	(-1)~2%
캐나다	19.3	3.0%	27~31	2~5%
한국	13.0	2.9%	14~18	3~6%
호주	13.5	6.3%	13~16	0~3%
파머징 국가	**242.9**	**10.3%**	**315~345**	**6~9%**
중국	116.7	12.4%	140~170	5~8%
브라질	26.9	11.3%	32~36	7~10%
인도	17.4	12.1%	26~30	10~13%
러시아	11.6	10.5%	14~18	5~8%
기타	61.5	6.5%	82~86	6~9%
그 외 국가	112.4	3.5%	130~160	3~6%

(출처: QuintilesIMS Institute,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6)

② 제네릭 의약품의 비중 증대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활성성분을 가진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작용을 한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덜 까다롭고 의약품 개발 및 허가를 위한 R&D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IMS Health에 따르면,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5년에서 2027년까지 7.9% 성장하고 판매액은 2021년 3,840억 달러, 2027년 5,7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머징시장의 성장이 제네릭 의약품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제네릭 의약품은 2012년 글로벌 의약물 시장점유율의 27% 수준을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랜드 및 제네릭 의약물 소비측면을 비교해보면, 제네릭 의약품 수요는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브랜드 약물의 수요를 앞지르고 있으며, 이중 라틴 아메리카는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 등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체의 제네릭 약물 개발 및 제조의 상승으로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제네릭 의약품의 수요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브랜드 약물가격 인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파머징국가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보험제도 정착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KOTRA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만성질환의 확대, 건강보험 회사의 의료비용 절감 압력 등이 존재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방의약품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로 가격이 저렴한 해외 의약품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의 제네릭 의약품 수입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5.9%의 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7년 339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 제네릭 의약품 수요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처방 의약품의 약 80%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상황으로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예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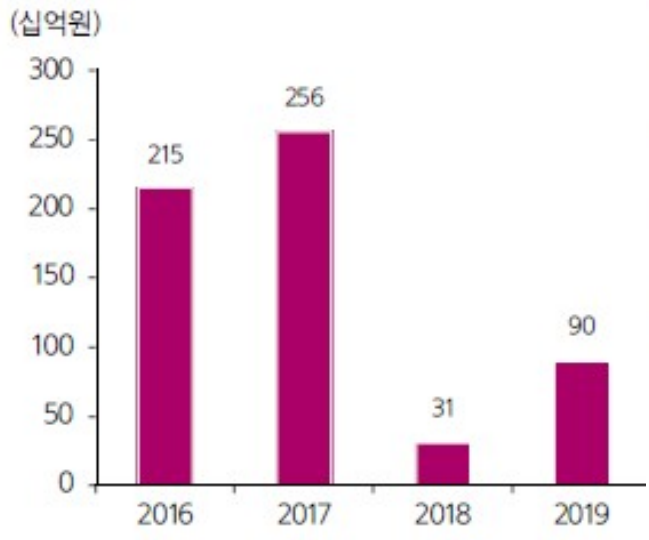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오리지날 약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FDA는 일부 개발중인 제네릭에게 우선 심사권 등을 부여해 상용화 과정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특허권 혹은 독점권이 만료된 의약품의 목록을 공개해 제약사들의 복제약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며, 복제약 신청서 제출과정의 일부분도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개선될 전망입니다.

(나) 국내 제약시장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둔화와 약가 규제 지속으로 인해 이전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제약시장은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에 편승하여 제네릭 위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약가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4월부터 가장 큰 폭의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국내 의약품 시장은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약가규제 등 보험약가의 감소로 이어져 최근까지 성장세가 다소 정체되었습니다.

한편, 특화전력 없이 단순 제네릭의 내수 판매에 기댄 수익모델은 곧 성장한계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제네릭 진입장벽 완화로 공급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특허 만료 신약 수가 2020년까지 빠르게 감소하며 신규 출시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특허 만료 품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규모가 31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2019년 900억원, 2020년 1,600억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즉, 과거처럼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도전을 통해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거나,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개량신약 혹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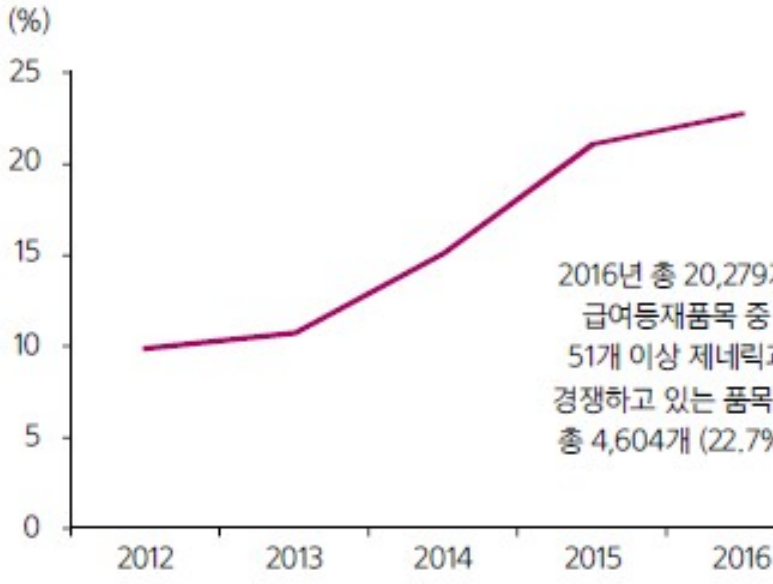
[국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 규모 전망]



국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규모

(출처: IMS Health 2016, 삼성증권)

[동일성분내 51개 이상 제네릭 등재품목 비중]



제네릭 등재품목 비중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성증권)

하지만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웰빙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한국이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이상)에서 고령사회(14%이상)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17년으로 앞서 가장 빨랐던 일본의 25년 대비 8년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 역시 가파른 속도로 늘어 최근 1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폭은 3.2%p로 OECD 평균(1.6%p)의 2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IMS Health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IMS Market Prognosis 2017-2021, South Korea'에 따르면 한국 제약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하여 시장규모가 18조 5,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산정방식의 차이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장규모와 일부 상이) 2021년까지 한국의 제약시장 예상 연평균성장률 4.4%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의 평균 성장률인 2.1%와 GDP 성장률 2.3%를 모두 2배 가까이 상회하는 것으로, 인구고령화가 야기하는 의약품 지출 증가와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중국으로의 수출 기회 증가 등이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제약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국내 제약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출처: IMS Health, 'IMS Market Prognosis 2017-2021, South Korea')

한편,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약제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 각국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나라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일명 '문재인 케어'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2022년까지 전체 의료비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추진 시 총 진료비는 2019년 100조원을 넘어 2022년에는 123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 보장률이 높아지려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률 상승이 이뤄져야 하는 바, 현재로선 의약품 비용 절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싼 오리지널 대신 효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처방이 권고될 것

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한, 다수 제약사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확보한 원천기술과 우수한 완제의약품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수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 경쟁상황

제약산업은 의약품의 허가・제조・유통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 약가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정부 규제 및 정책의 역할이 큰 산업 분야이며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생산구조 역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는 의사 등 의료인에게, 조제 투약은 약사에게 면허된 행위이기 때문에 중간수요의 비중이 크며 시장이 제품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유통체계가 복잡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약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발견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다국적 의약품기업의 시장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력시장인 제네릭의약품 시장을 살펴보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관련 지출 증가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 외에도 삶의 질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근원적인 수요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로 인해 중소・영세 제약사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생동 시험이나 초기투자가 필요한 GMP수준의 공장 없이 원하는 제네릭 제품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2016년 기준 353개에 달하는 완제의약품 생산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 시장의 경쟁심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여전히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원외처방액 기준 Top 5 제약사(외자사 제외)는 수 년간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강력한 영업력을 갖춘 제약사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리베이트 규제 강화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면서 처방의약품 시장도 업체별 평준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갖는 일부 상위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일부 신약 등을 제외하면 상위 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간 보유한 의약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11월 공동 생동 규제가 폐지된 이후 다른 업체에서 제네릭을 생산해 허가받는 '위탁 제네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인정품목을 보면 2009년 437개 품목에서 2016년 1,112개로 2.5배 증가하여, 7년새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 수가 2.5배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관련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형 신약이나 개량신약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의 실적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실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근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내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기댄 기존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R&D를 활용한 신약이나 개량신약,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퍼스트제네릭 등의 개발・출시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재무 성장성 지표 분석

[성장성 비율 분석]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업종평균 (주1)
매출액증가율	11.74%	11.88%	14.31%	22.37%	8.20%
총자산증가율	0.56%	23.22%	17.60%	19.41%	12.90%
영업이익증가율	9.32%	34.92%	53.30%	135.35%	n/a
당기순이익증가율	4.28%	39.46%	254.91%	91.73%	n/a

주1)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주2) 2018년 반기 성장성 비율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산출(단, 총자산증가율은 2017년말과 비교)

주3) 별도 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매출액증가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22.37%, 14.31%, 11.88%로서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취과약물 분야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소화기, 순환기 등 타과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영업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괄약가인하 정책의 만료와 함께 매출액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영업인력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고, 매년 영업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매출의 지속적 증가는 매출채권의 증가로도 이어져 총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2015년부터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 증가율 및 당기순이익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형은 물론 질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일정수준의 판관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한 이익 변동성이 낮아, 매출 및 매출총이익의 증가가 이익의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사의 성장세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신약 및 개량신약의 출시, 원료의약품 수출 등이 가시화 될 경우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재무 안정성 지표 분석

[안정성 지표 추이]

구 분	2018년 반기	2017년	2016년	2015년	업종평균 (주1)
부채비율	58.86%	74.44%	106.53%	188.89%	66.10%
차입금의존도	15.09%	20.57%	26.99%	40.30%	19.40%
유동비율	177.13%	160.54%	177.37%	155.55%	161.50%
당좌비율	130.22%	120.99%	124.50%	113.32%	121.60%

주1)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주2) 별도 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2016년 기준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업종평균 대비 소폭 높은 편이나, 2017년 및 2018년 반기 기준 부채비율은 각각 74.44%, 58.86%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 역시 각각 20.57%, 15.09%로 2015년 이후 지속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2011년과 2015년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인한 비용납입과 매출확대를 위한 투자로 인해 실적변동성이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우수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기반하여 차입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재의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차입금과 부채비율은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기타 경영환경

(1) 소송 및 분쟁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를 피고로 하여 계류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사건	2018가단 8862 물품대금 등
소 제기일	2018.02.07
원고	하나제약 주식회사
피고	편안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누리의원 외 1명
사건 개요	피고 법인 폐업 후 외상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 법인 및 연대보증에 대한 소송진행
소송가액	45,193,872원
진행경과	1심 진행중 1. 피고 1(편안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누리의원)에 대하여 : 소송 진행중 2. 피고 2(이건욱) 대하여 : 화해전고결정(확정 안되었음)

주) 최종 소송결과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지만, 동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규제위험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은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약값에 대한 통제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제약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률 및 규제 내역으로는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정상화 방안에서부터 2012년 4월 실시된 일괄 약가인하,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약가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영업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 경영 투명성 및 안정성

(1) 기업 지배구조

(가)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이사회는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선임일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2018.02.19	사장 (상근/등기)	이윤하 (1958.10.03)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85.02) 일양약품㈜ 개발부, 라이센싱 업무담당('85.03~'87.07) CJ제일제당 상무, 제약개발, 연구기획('02.01~'05.01) 종근당㈜ 전무, 개발본부장('11.04 ~'13.08) 하나제약(주) 대표이사('18.02~현재)
2011.03.31	부사장 (상근/등기)	조동훈 (1980.09.26)	하와이 주립대 경영학과 졸업 ('04.05) 하나제약(주) 경영본부장('10.10~'15.01) 하나제약(주) 서울사무소 부사장('15.01~현재)
2016.06.24	이사 (상근/등기)	조혜림 (1979.07.24)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졸업('05.06) 하나제약㈜ 경리부('06.11~'15.11) 하나제약(주) 자금부 이사('16.04~현재)
2018.03.30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이상국 (1961.08.24)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생명약학 약학석사('85.03~'87.02)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87.01~'93.08)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소장('11.07~'13.07) Future Medicine 이사('17.07~현재)
2018.03.30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조상수 (1962.11.18)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81.03~'85.02) 제28회 사법시험 합격('86.10)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10.8~'11.9)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13.05~현재) 주식회사 애경산업 사외이사('16.12~현재)

동사는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동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와 2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였고, 이들은 통해 동사의 주요 경영 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상근 감사 1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이사회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경영진 구성

동사의 사내이사는 관계회사 또는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 2인 만이 타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국 사외이사는 퓨처메디신(주)의 사내이사, 조상수 사외이사는 (주)애경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사의 사외이사는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사외이사의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주요 이력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이상국 (1961.08.24)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생명약학 약학석사('85.03~'87.02)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87.01~'93.08)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소장('11.07~'13.07) Future Medicine 이사('17.07~현재)	관계 없음	없음
조상수 (1962.11.18)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81.03~'85.02) 제28회 사법시험 합격('86.10)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10.8~'11.9)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13.05~현재) ㈜애경산업 사외이사('16.12~현재)	관계 없음	없음

(다) 감사의 독립성

동사는 2015년 12월 4일 상법 411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신현채 감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동사의 상근감사의 과거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사의 상근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내부통제제도

동사는 상장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준하여 정관을 정비하였으며, 주주명부 관리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이사회운영 및 경영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내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정관을 포함하여 경영관련 규정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대주주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공시체계

(가) 회계처리 투명성

동사의 회계관리 업무는 경리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금관리 업무는 자금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담당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견제기능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2017년 11월 3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의 책임은 이윤하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인 윤홍주 관리본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자,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역시 해당사항 없는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적정 공시 능력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정법인으로서 제반 공시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전담인력 및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동사의 재무, 회계, 법무 등 경영지원부문에서 근무하여 동사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력으로 동사의 공시 조직은 적절한 공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관하는 공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시 수행 인력]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근무년수
공시책임자		이윤하	대표이사	회사총괄	1년
공시담당자	정	윤홍주	관리본부장	관리본부 총괄	16년
	부	김민철	과장	인사총무팀장	10년

또한 동사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의 방지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상장 후 발생할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시담당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 후 동사의 공시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업경영의 안정성

동사는 설립 이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77.94%이며, 공모 후 기준으로는 약 58.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관련사채 및 스톡옵션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변경에 따른 경영권의 변동가능성이 낮아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특수관계인 거래

(1) 거래의 적정성

(가) 매출, 매입 거래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증권 등 매수내역

설립이후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동사의 산업, 영업, 재무, 경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동사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종합평가 결과

가. 평가결과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제약㈜가 협의하여 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공모희망가액	24,500원 ~ 28,000원
확정공모가액	26,000원
확정 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하나제약㈜의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평가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2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공모희망가액 산출 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제약㈜의 사업 특성, 경영성과,

재무제표 및 비율 현황 등과 산업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공모희망가액 산출 방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법과 상대가치 평가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 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 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 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추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 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SR 비교, PBR 비교, PER 비교, EV/EBITDA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써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SR 비교, PBR 비교, PER 비교, EV/EBITDA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적, 기술적, 관련 시장의 성장성, 주력 제품군 등의 질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평가대상회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회사의 공모예정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가치 산출을 위해 상대가치 평가법 중 PER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비교평가모형의 선정

1) 상대가치 평가방법 적용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평가기관의 주관성이 개입 가능성이 낮으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동사의 상대가치를 산출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의 2017년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나제약㈜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ER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하나제약㈜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제외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3) 유사기업 선정

(가) 유사기업 선정 개요

동사는 한국산업표준 세세분류상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에 속해 있으며, 해당 산업분류 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78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모집단에서 사업내용의 유사성, 재무적 비교가능성 및 비재무적 비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유사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유사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의 구성, 목표시장 등은 동사와 상이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기업 선정 요약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기준	해당기업
모집단 선정	업종 유사성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78개사
1차 유사기업	사업의 유사성	① 전문의약품(ETC)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② 바이오시밀러, 신약개발 업체 제외 ③ 수액, 피부미용, 염모제 생산기업 제외	24개사
2차 유사기업	재무적 유사성	① 12월 결산법인 ②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 시현 ③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각 10% 이상인 기업 ④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EPS가 액면가의 50% 초과 기업	5개사
최종 유사기업	일반 기준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②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5개사

(나) 유사기업 선정 내역

① 1차 유사기업 선정

동사는 전문의약품(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에 속해 있으며, 해당 산업분류 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78개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모집단 중 ① 전문의약품(ETC)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② 바이오시밀러, 개량신약, 신약개발 업체 제외, ③ 수액, 피부미용, 염모제 등 생산기업 제외를 기준으로 1차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차 유사기업 선정 내역]

회사명	매출구성	선정여부
동화약품	소화제, 후시딘 등 일반의약품(OTC) 비중 높음(의약품 100%)	X

유한양행	약품사업부문 73% , 생활건강사업부문 8%, 해외사업부문 18% 보유	X
유유제약	의약품 85%, 건기식 15%	O
삼천당제약	안과용제 52%, 항생제 10%, 순환기 질환 11%, 기타(ETC 위주 생산)	O
삼일제약	병의원용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비중 높음	O
JW중외제약	항암제, 항생제 / 신약 개발	X
삼성제약	일반의약품(OTC) 제품 비중 높음(까스명수, 쓸기담, 우황청심화 등)	X
안국약품	클리오시럽 등 전문의약품(ETC) 비중 높음	O
동성제약	염모제 제품 비중 87%, 화장품 비중 13%	X
알보젠코리아	카리메트 등 전문의약품 비중 높음	O
한독	의약품(OTC 비중 높음) 43%, 진단기기 17%, 건강기능식품 2% 등 영위	X
오리엔트바이오	자동차사업 23%, 전원공급장치사업 52%, 실험소재 19%	X
국제약품	의약품(OTC,ETC) 75%, 노인복지용품 25%	O
신신제약	파스 39%, 기타 25%	X
부광약품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ETC) 생산, 판매	X
에이프로젠제약	전문의약품(ETC) 비중 높음, 바이오시밀러 관련 신규사업 진행	X
일성신약	항생제 30%, 마취제 23%	O
대원제약	진해거담제 등 전체 매출 대부분 전문의약품(ETC) / 신약개발	X
영진약품	항생제, 정신신경, 순환기관 관련 제품	O
보령제약	카나브 패밀리 등 완제의약품 생산 53%(일반의약품(OTC) 위주), 수탁 생산 실시	X
현대약품	탈모 치료제, 미아로화이바 등 일반의약품(OTC) 비중 높음	X
우리들제약	전문의약품(ETC) 주력	O
삼진제약	정제 68%, 주사제 16%, 캅셀제 14% 등 / 전문의약품(ETC) 90%, 일반의약품(OTC) 10%	O
녹십자	혈액제제류 28%, 백신 15%+ 신약개발(백신 등)	X
동구바이오제약	의약(ETC) 71%, CMO 20% / 신약개발	O
진양제약	순환계 및 소화기관용약 비중 높음(전문의약품(ETC))	O
일양약품	전립선치료제 등 일반의약품(OTC), 신약개발/백신	X
광동제약	쌍화탕류, 우황청심원, 비타500, 항암제(독시플루딘, 코포랑 등)	X
삼아제약	호흡기계 54%, 항생제 11%, 피부기계 10% 등/신약개발	X
한올바이오파마	전문의약품(ETC), 바이오의약품, 기능성복합 신약 등	X
진원생명과학	Plasmid DNA CMO 39%, 의류용 심지 42%	X
경동제약	전문의약품(비중↑),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 '15년부터 일반의약품(OTC) 활성화에 집중	O
신일제약	OEM+동물용 의약품 포함 의약품 97%	X
고려제약	중추신경계용제 및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등(전문의약품(ETC))	O
환인제약	정신신경용제(78%), 순환계용약(7%), 소화성궤양용제(6.2%), 등, 전문의약품(ETC)비중 큼	O
명문제약	근골격계 및 마취제 약물군 등의 전문의약품(ETC)와 멀미약 등 OTC 보유	O
우진비앤지	동물용의약품 생산	X
서울제약	개량신약 개발 및 구강붕해필름 제조, 판매	X
신풍제약	바르코민정 등 일반의약품 비중 높음	X
대한약품	수액제품(영양보급및치료제) 79%, 앰플 및 바이알제품 16% 등	X
유나이티드제약	완제의약품 생산, 경쟁우위: 개량 신약 개발 및 투자 (매출액의 13% 수준)	X
조아제약	일반의약품(OTC) 주력 및 건강기능식품 생산, 판매	X

대성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생산	X
오스코텍	치과용 뼈이식재 36%, 기능성소재 및 관련제품 46%	X
에스텍파마	원료의약품 생산	X
코미팜	동물용의약품 생산	X
제일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생산	X
바이넥스	바이오 17%, 의약품 제조 80%	X
경남제약	일반의약품(OTC) 85%, 전문의약품(ETC) 2%, 기타 13% / 주력 레모나	X
대한뉴팜	바이오, 동물의약품 생산	X
CMG제약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OTF(구강붕해필름) 사업 영위/개량신약	O
화일약품	원료의약품 생산	X
종근당바이오	원료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생산	X
테라젠이텍스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 헬스케어 및 유전체 분석 등	X
대화제약	의약품 제조, 도매, API, 화장품 / 신약개발	X
JW신약	전문의약품(ETC), 일반의약품(OTC) 생산(항진균제, 피부질환치료제,내과용제, 모발용제)	X
셀트리온제약	간질환치료제 42%, 기타 제네릭 25%, 자가면역질환치료제12%, 상품매출 비중 높음	O
대웅제약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ETC), 신약개발	X
대봉엘에스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소재 생산	X
동국제약	정제(잇몸: 인사돌) 33%, 수액제(조영제, 전신마취제) 22%, 프리필드 11%	X
이연제약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진단제의약품 생산	O
한미약품	전문의약품(ETC), 바이오신약, 합성신약 등	X
디에이치피코리아	점안제(티어린프리 외) 96%, 주사제 1%	X
코아스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X
동아에스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박카스, 스티렌, 플라비톨 등), 신약개발	X
종근당	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의약품 생산, 판매 (R&D 매출비중의 14%이상)	X
휴메딕스	관절염 치료제 36%, 더말 필러(주름 개선) 28%, 전문의약품(ETC) 14%	X
비씨월드제약	마취통증약 24%, 항생제 28%, 순환계약 21% 등	O
퓨쳐켐	방사성의약품 생산	X
팬젠	바이오시밀러 생산	X
JW생명과학	수액제품 생산	X
에스티팜	원료의약품(API) 생산	X
휴온스	의약품 51%, 뷰티/헬스케어 37%, 수탁 12%	X
일동제약	의약품 제조 33%, 기타 67% / 아로나민류(비타민) 14%	O
알리코제약	전문의약품(ETC), 일반의약품(OTC) 생산, CMO	O
제일약품	제네릭 의약품 생산	O
한국유니온제약	전문의약품(ETC), CMO	O
아이큐어	제약 35%, 화장품 65%	X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② 2차 유사기업 선정

1차 유사기업에 속한 업체들 중 ①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②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각 10% 이상이며, ③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EPS가 액면가의 50%를 초과하며, ④ 기업결산일이 동사와 동일한 12월 결산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 유사기업 선정 내역]

(단위: 백만원, 원)

회사명	2017년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액면가	EPS>액면가/2	결산월	선정여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EPS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EPS				
유유제약	62,852	3,568	4,289	5.68%	559	63,301	3,608	3,780	5.70%	493	1,000	X	12월	X
삼천당제약	**161,112**	**26,512**	**23,028**	**16.46%**	**1,042**	**164,342**	**26,979**	**23,059**	**16.42%**	**1,043**	**500**	**O**	**12월**	**O**
삼일제약	92,038	1,307	(1,267)	1.42%	(230)	94,916	(2,441)	(4,605)	-2.57%	(837)	1,000	X	12월	X
안국약품	183,600	10,403	8,192	5.67%	628	177,601	9,407	8,674	5.30%	665	500	O	12월	X
알보젠코리아	190,057	25,812	10,399	13.58%	877	190,977	23,701	12,100	12.41%	1,020	5,000	X	12월	X
국제약품	123,310	2,564	1,039	2.08%	58	122,580	1,641	642	1.34%	36	1,000	X	12월	X
일성신약	67,043	2,590	2,629	3.86%	988	65,724	2,785	2,936	4.24%	1,104	5,000	X	12월	X
영진약품	195,009	3,029	1,868	1.55%	10	187,510	(2,234)	(2,450)	-1.19%	(13)	500	X	12월	X
우리들제약	79,894	6,011	4,433	7.52%	383	85,413	6,851	5,380	8.02%	465	500	O	12월	X
삼진제약	**245,272**	**46,947**	**35,796**	**19.14%**	**2,575**	**252,450**	**52,357**	**40,026**	**20.74%**	**2,880**	**1,000**	**O**	**12월**	**O**
동구바이오제약	101,124	13,326	10,943	13.18%	1,139	106,044	10,190	7,971	9.61%	830	500	O	12월	X
진양제약	43,450	(5,291)	(5,768)	-12.18%	(481)	43,858	(5,616)	(6,180)	-12.80%	(515)	500	X	12월	X
경동제약	**177,772**	**30,909**	**20,226**	**17.39%**	**762**	**181,528**	**31,596**	**18,449**	**17.41%**	**695**	**500**	**O**	**12월**	**O**
고려제약	55,403	5,299	4,683	9.56%	426	55,085	4,271	3,932	7.75%	357	500	O	12월	X
환인제약	**147,953**	**29,651**	**27,172**	**20.04%**	**1,461**	**153,087**	**26,663**	**24,176**	**17.42%**	**1,300**	**500**	**O**	**12월**	**O**
명문제약	140,138	7,473	8,131	5.33%	331	142,469	5,830	2,738	4.09%	112	500	X	12월	X
CMG제약	41,536	2,327	(187)	5.60%	(2)	45,987	2,855	(1,357)	6.21%	(12)	500	X	12월	X
셀트리온제약	135,860	4,519	(2,877)	3.33%	(85)	141,468	1,509	(2,368)	1.07%	(70)	500	X	12월	X
비씨월드제약	**50,207**	**8,874**	**8,065**	**17.67%**	**1,007**	**53,044**	**9,316**	**8,105**	**17.56%**	**1,012**	**200**	**O**	**12월**	**O**
일동제약	460,651	25,361	19,841	5.51%	919	486,262	30,802	24,534	6.33%	1,136	1,000	O	12월	X
알리코제약	71,358	8,871	3,339	12.43%	348	82,803	8,213	(2,092)	9.92%	(218)	500	X	12월	X
제일약품	371,592	4,966	1,068	1.34%	73	621,037	6,031	1,383	0.97%	94	500	X	12월	X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주1) 이연제약은 분석기준일(2018년 8월 14일) 현재 2018년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③ 최종 유사기업 선정

2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5개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비재무적 비교가능성을 갖춘 회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이 없을 것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최종 유사기업 선정 내역]

회사명	6개월 내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상장 후 6개월 경과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최종선정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 없음			
삼천당제약	O	O	O	O
삼진제약	O	O	O	O
경동제약	O	O	O	O
환인제약	O	O	O	O
비씨월드제약	O	O	O	O

최종 유사기업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총 5개사]

(라) 유사기업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발행회사인 하나제약㈜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비재무적 및 재무적 기준 등의 선정 기준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최종 유사기업 현황은 상기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요약]을 참조). 상기와 같은 유사기업의 선정은 유사기업의 사업내용이 일정부분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 유사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14일 분석기준일로 하고 분석기준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간(2018년 07월 16일 ~ 8월 14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18년 8월 8일 ~ 8월 14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분석기준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비교회사 시가총액]

(단위: 원)

구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일자	2018.07.16	958,286,993,550	658,860,000,000	342,495,000,000	408,271,536,500	212,620,842,900

	2018.07.17	946,128,796,400	648,435,000,000	337,185,000,000	398,041,498,000	212,220,427,000
	2018.07.18	900,811,879,750	647,740,000,000	334,530,000,000	389,671,466,500	207,815,852,100
	2018.07.19	873,179,613,500	645,655,000,000	330,547,500,000	385,021,449,000	204,212,109,000
	2018.07.20	878,706,066,750	649,130,000,000	334,530,000,000	385,951,452,500	205,813,772,600
	2018.07.23	838,915,603,350	633,840,000,000	323,910,000,000	379,441,428,000	194,602,127,400
	2018.07.24	841,126,184,650	639,400,000,000	323,910,000,000	379,441,428,000	195,402,959,200
	2018.07.25	792,493,396,050	611,600,000,000	325,237,500,000	378,511,424,500	197,004,622,800
	2018.07.26	840,020,894,000	617,160,000,000	326,565,000,000	383,161,442,000	201,008,781,800
	2018.07.27	880,916,648,050	609,515,000,000	329,220,000,000	385,021,449,000	201,409,197,700
	2018.07.30	874,284,904,150	622,025,000,000	322,582,500,000	389,671,466,500	201,008,781,800
	2018.07.31	867,653,160,250	638,705,000,000	321,255,000,000	391,531,473,500	205,813,772,600
	2018.08.01	912,970,076,900	649,825,000,000	318,600,000,000	391,531,473,500	211,820,011,100
	2018.08.02	884,232,520,000	623,415,000,000	319,927,500,000	385,021,449,000	211,419,595,200
	2018.08.03	933,970,599,250	656,080,000,000	319,927,500,000	390,601,470,000	210,618,763,400
	2018.08.06	924,022,983,400	669,285,000,000	319,927,500,000	389,671,466,500	211,820,011,100
	2018.08.07	912,970,076,900	668,590,000,000	315,945,000,000	393,391,480,500	212,220,427,000
	2018.08.08	912,970,076,900	695,000,000,000	314,617,500,000	392,461,477,000	211,820,011,100
	2018.08.09	938,391,761,850	696,390,000,000	318,600,000,000	390,601,470,000	213,021,258,800
	2018.08.10	930,654,727,300	696,390,000,000	317,272,500,000	391,531,473,500	216,625,001,900
	2018.08.13	880,916,648,050	704,730,000,000	313,290,000,000	380,371,431,500	206,214,188,500
	2018.08.14	889,758,973,250	725,580,000,000	319,927,500,000	374,791,410,500	208,616,683,900
1개월 평균 시가총액 (A)		891,517,390,193	654,879,545,455	324,091,022,727	387,896,005,273	206,960,418,132
1주일 평균 시가총액 (B)		910,538,437,470	703,618,000,000	316,741,500,000	385,951,452,500	211,259,428,840
분석기준일 시가총액 (C)		889,758,973,250	725,580,000,000	319,927,500,000	374,791,410,500	208,616,683,900
시가총액 (Min[(A),(B),(C)])		889,758,973,250	654,879,545,455	316,741,500,000	374,791,410,500	206,960,418,132

(자료: KRX)

(3)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

(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률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방법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17년 온기 및 2018년 반기 연환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17년 지배주주순이익 및 2018년 반기 연환산 지배주주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PER 배수 = 기준시가총액 ÷ 당기순이익

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률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 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 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① 유사기업 PER 산출

[2017년 실적을 적용한 PER 산출]

구분	단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시가총액 (A)	백만원	889,759	654,880	316,742	374,791	206,960
당기순이익 (B)	백만원	23,028	35,796	20,226	27,172	8,065
PER (C=A÷B)	배	38.64	18.29	15.66	13.79	25.66
적용 여부	-	O	O	O	O	O
평균 PER	배	22.41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주) 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18년 8월 14일)의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적용한 PER 산출]

구분	단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시가총액 (A)	백만원	889,759	654,880	316,742	374,791	206,960
최근 12개월 (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순이익	백만원	23,059	40,026	18,449	24,176	8,105
PER (C=A÷B)	배	38.59	16.36	17.17	15.5	25.53
적용 여부	-	O	O	O	O	O
평균 PER	배	22.63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주) 시가총액의 경우 분석기준일(2018년 8월 14일)의 Min[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준일 종가]

② 주당 평가가액 산출

구분	2017년 기준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비고
지배주주 순이익 (주1)	24,305 백만원	24,774 백만원	A
적용 PER 배수 (주2)	22.41 배	22.63 배	B
평가 시가총액	544,652 백만원	560,651 백만원	C = A ×B
평균	552,651 백만원		E
적용 주식수 (주3)	16,200,000주		F
주당 평가가액	34,114 원		G = E ÷ F

주1) 적용 당기순이익 : 동사의 2017년 온기 당기순이익(지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순이익(지배)을 적용

주2) 적용 PER 배수 : 유사기업의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기준 PER을 적용

주3) 적용 주식수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118,540주 + 신주모집 주식수 4,081,460주

(나)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하나제약㈜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제약㈜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 분	내 용
상대가치 주당 평가가액	34,11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28.3% ~ 18.0%
공모희망가액 밴드	24,500원 ~ 28,000원
확정 공모가액 (주1)	26,000원

주1)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제약㈜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28.3% ~ 18.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4,500원 ~28,0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7년 온기 및 최근 12개월(2017년 3분기 ~ 2018년 2분기)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는 상기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

정할 예정입니다.

다. 기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제약㈜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업종유사성, 사업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비교가능성,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총 5개 회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유사회사들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하나제약㈜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2017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유동자산	131,207	157,271	110,127	171,814	40,948
비유동자산	103,937	84,577	141,300	103,024	77,393
[자산총계]	235,143	241,847	251,428	274,838	118,341
유동부채	23,699	43,206	29,908	27,987	19,419
비유동부채	12,688	5,174	2,171	3,768	17,461
[부채총계]	36,387	48,380	32,079	31,755	36,881
자본금	11,053	13,900	13,575	9,700	1,462
이익잉여금	106,089	177,620	213,870	219,706	47,350
[자본총계]	198,757	193,467	219,348	243,084	81,460
매출액	161,112	245,272	177,772	147,953	50,207
영업이익	26,512	46,947	30,909	29,651	8,874
당기순이익(지배)	23,028	35,796	20,477	27,172	8,083
기본주당순이익(원)	704	2,891	1,741	1,780	1,156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8년 반기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유동자산	131,980	166,541	122,431	176,932	49,848
비유동자산	112,616	84,573	122,667	99,494	89,033
[자산총계]	244,596	251,114	245,098	276,426	138,880
유동부채	26,804	39,627	25,422	20,701	26,257
비유동부채	10,045	5,659	2,172	4,473	25,803
[부채총계]	36,849	45,286	27,595	25,174	52,061
자본금	11,053	13,900	13,575	9,700	1,602
이익잉여금	119,692	192,625	214,427	230,424	50,500
[자본총계]	207,747	205,827	217,503	251,252	86,820
매출액	82,214	129,996	86,566	77,938	27,026
영업이익	14,003	29,076	17,407	14,309	4,674
당기순이익(지배)	7,327	22,544	9,988	11,979	3,995
기본주당순이익(원)	342	1,832	424	785	519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7년 재무비율]

구 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11.35	19.14	17.79	20.04	17.68
	매출액 순이익률	8.83	14.59	11.49	18.37	16.10
	총자산 순이익률	7.12	15.25	8.33	10.49	7.62
	자기자본 순이익률	8.85	19.71	9.41	11.73	10.42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374.48	364.00	391.25	613.91	216.26
	부채비율	23.27	25.01	13.37	13.06	42.50
	차입금의존도	3.37	1.65	0.03	-	21.08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7.98	2.49	11.82	4.65	9.96
	영업이익 증가율	3.33	11.62	32.89	37.11	28.47
	당기순이익 증가율	109.76	18.63	19.66	65.71	24.83
	총자산 증가율	12.67	6.27	5.95	12.90	20.05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8년 반기 재무비율]

구 분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경동제약	환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17.03%	22.37%	20.11%	18.36%	17.30%
	매출액 순이익률	13.50%	17.34%	11.59%	15.37%	14.51%
	총자산 순이익률	9.26%	18.29%	8.08%	8.69%	6.10%
	자기자본 순이익률	10.92%	22.58%	9.19%	9.69%	6.10%
안정성	유동비율	492.38%	420.27%	481.59%	854.71%	189.84%

비율	부채비율	17.74%	22.00%	12.69%	10.02%	59.96%
	차입금의존도	2.27%	-	0.39%	-	25.82%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4.09%	5.84%	4.54%	7.05%	11.73%
	영업이익 증가율	3.45%	22.86%	4.11%	-17.27%	10.44%
	당기순이익 증가율	-4.56%	23.10%	-12.43%	-20.01%	-0.80%
	총자산 증가율	4.02%	3.83%	-2.52%	0.58%	17.36%

주1)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2) 2018년 반기 성장성 비율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산출하였으며, 총자산순이익률 및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18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실적*2)하여 산출

※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	산 식	설 명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영업이익 / 당기매출액 ×100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당기매출액 ×100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100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100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당기말 유동부채 ×100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당기말 자기자본 ×100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 ×100 당기말 총자산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 매출액 ——————— ×100 - 100 전기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 영업이익 ——————— ×100 - 100 전기 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 ——————— ×100 - 100 전기말 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매출채권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모집 및 매출총액 (1)	106,118
발행제비용(2)	2,045
매출대금(3)	-
순조달금액 [(1)-(2)-(3)]	104,072

주1) 모집총액, 발행 제비용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비고
인수수수료	1,841.8	공모금액 500억원 이하 2.0%, 500억원 초과 1.5%	주2)
발행분담금	19.1	공모금액의 0.018%	주3)
등록세	8.2	증가 자본금의 0.4%	-
교육세	1.6	등록세의 20%	-
상장수수료	24.8	1,475만원 + 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4.5만원	-
기타 비용	150.0	당사가 부담하는 IR비용 등 제반 비용	-
합 계	2,045.5	-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기 발행 제비용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인수수수료 등을 포함한 발행제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이하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모금액 기준 500억원 초과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대표주관회사에게지급합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시설투자	생산시설의 확장 및 생산 및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	79,200
연구개발	연구시설 확장 및 장비/인력 투자	14,872
차입금 상환	-	10,000
합 계	-	104,072

주1) 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26,000원** 기준입니다.

당사는 조달자금을 하기 기재한 시기에 사용할 예정이며, 사용시기까지의 조달금액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1) 시설투자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EU-GMP 수준 주사제공장 신축	200	13,000	13,000	26,200
레미마졸람 동결건조라인 증설	-	2,000	5,000	7,000
생산량 확장을 위한 신규 정제, 주사제 생산시설 확충	4,000	2,000	-	6,000
BFS 시스템 도입	8,000	12,000	-	20,000
통합물류시스템 자동화	6,000	14,000	-	20,000
합 계	18,200	43,000	18,000	79,200

당사는 본 공모자금으로 현재 생산시설 중 생산량의 밀집도가 높은 주사제의 신규 공장을 신축하여 EU-GMP 수준의 인증을 받고 당사의 주력 주사제 제품들과 함께 신약 레미마졸람을 대량생산할 예정입니다. 레미마졸람은 동결건조제품으로서 신규 주사제 공장의 2개층을 레미마졸람 전용 동결건조라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기존의 정제, 주사제 및 일부 노후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추가설비를 신규로 도입하여 총 생산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PP(폴리프로필렌) 재질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시 PP용기를 외부에서 매입하여 약품을 주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 및 생산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BFS(Blow-Fill-Seal) 시스템을 도입하여 PP용기 제조에서부터 약품의 주입 및 밀봉까지 원스톱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와 함께,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생산/판매량의 증대로 인해 현재 통합물류시스템의 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시스템의 완전자동화를 통해 물류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하고 처리속도를 증대시켜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이룰 것이며, 늘어나는 판매물량을 흡수하고 도매상을 통한 거래의 상당부분을 직접

거래로 전환함으로써 마진율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센터 확장/이전	-	11,000	-	11,000
우수 연구인력 확충 및 연구개발장비 도입	1,872	2,000	-	3,872
합 계	1,872	13,000	-	14,872

현재 당사의 연구센터는 합성연구에 주력하는 향남중앙연구소와 DDS 및 신약개발에 집중하는 향남R&D 연구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자체신약개발과 국책연구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HNP-2006', 'HNP-6002', 'HNP-6003'의 연구개발속도를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소화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할 것이며, 현재의 약 66여명의 연구개발인력을 90명까지 늘리고 신규 연구개발장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차입금 상환

(단위: 백만원)

차입처	내역	만기	금리	상환예정액	상환예정일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8-11-17	4..14%	495	2018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8-12-31	3.37%	4,505	2018년
하나은행	운영자금대출	2019-08-16	3.70%	1,000	2019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19-09-15	2.43%	1,000	2019년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	2020-06-15	3.07%	500	2019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04-14	3.78%	420	2020년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06-30	3.70%	1,000	2020년
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21-10-02	3.03%	1,080	2020년
합 계				10,000	-

당사의 차입금은 2007는 하길공장 건립으로 인해 발생한 차입금이 대부분으로서 2018년 반기 현재 약 214억원입니다. 해당 차입금의 일부를 해소하여 자본비율을 업계수준보다 높이는 동시에 이자비용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억제하여 수익성 또한 개선하고자 합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당사는 바이오의약품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2017년 3월 17일 하나바이오 주식회사를 당사의 자회사로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바이오의약품보다 신약 및 개량신약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2018년 5월 16일 하나바이오 주식회사의 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하나바이오 주식회사	2017.03.1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바이오의약품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1,192	의결권의 과반소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 13)	해당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연결	-	-
연결제외	하나바이오 주식회사	2018년 5월 16일 청산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하나제약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ANA PHARM CO., LTD.(약호 HANA PHARM)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78년 1월 19일 전신인 우천제약으로 설립되어, 우천제약을 인수하면서 1996년

11월 11일 우천제약(주)가 하나제약(주)로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내 용
본사의 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전화번호	031-366-5511
홈페이지	http://www.hanaph.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관련법규	관련사항
약사법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에 관한 법률이며, 영업방식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의 금지에 관한 규정도 해당 법에 명시되어있으며, 이 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이 의무화 되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당사는 의료용 마약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마약류에 대한 취급, 생산, 판매에 대하여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당사는 의약품 제조회사로 의약품 안전(판매허가, 임상실험 등)에 관하여 해당 규칙의 영향을 받음
국민건강보험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적용을 정지하고, 위반횟수 및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존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교직원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규정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대기환경 보전법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대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수질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목적으로 함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 전신인 우천제약을 인수하며 하나제약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문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증통증에 쓰이는 마약성진통제와 마취제 부문의 오랜 강점을 살려 다년간 마약성진통제 시장과 마취의약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제품을 비롯 순환기의약품, 진통제, 소화기의약품, 신경과 및 피부과 의약품 등 의약품 제조사 중 최상위권 수준인 260여개의 다양한 의약품을 통해 전방위적인 전문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화성에 2개소의 제조공장과 화성에 원료합성연구 중심의 연구소와 판교에 R&D중심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동 공시서류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적 사 업	비 고
1. 의약품 등 제조업 2. 의약품 등 수출입업 3. 의약품의 도매업 4. 의약품 등 소분업 5. 식품(건강보조식품제조) 제조 판매 및 부대되는 사업일체 6. 의료용 마약류제조, 판매업 7.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류 수출입업 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9. 화공약품 판매업(독극물 화약류 제외) 10.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 도매업 11. 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 12.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전대업 13.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14. 의료기기 및 의료용구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전자상거래업	당사 정관 제2조(목적)

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신용평가에 관한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설립 후 본점소재지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 짜	주 소	비 고
1978.01.19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907-3	최초 소재지
2017.03.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소재지 변경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증권신고서 신고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이윤하, 조동훈, 조혜림)과 사외이사 2인(이상국, 조상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 중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비고
2012.11.15	장사정	조경일 조동훈 장사정	-	강유미	예윤순 감사 사임 강유미 감사 선임
2014.11.6	장사정	조경일 조동훈 장사정 정재운	-	강유미	정재운 이사 선임
2014.11.22	정재운	조경일 조동훈 정재운	-	강유미	장사정 대표이사 퇴임 정재운 대표이사 선임 장사정 이사 퇴임
2015.03.26	정재운	조경일 조동훈 정재운	-	조봉수	강유미 감사 퇴임 조봉수 감사 선임
2015.09.01	최동재	조경일 조동훈 최동재	-	조봉수	정재운 대표이사 사임 최동재 대표이사 선임 정재운 이사 사임 최동재 이사 선임
2015.12.04	최동재	조경일 조동훈 최동재	-	신현채	조봉수 감사 사임 신현채 감사 선임

2016.06.24	최동재	조동훈 최동재 조혜림	-	신현채	조경일 이사 사임 조혜림 이사 선임
2018.2.19	이윤하	조동훈 조혜림 이윤하	-	신현채	최동재 대표이사 사임 이윤하 대표이사 선임 최동재 이사 사임 이윤하 이사 선임
2018.3.30.	이윤하	조동훈 조혜림 이윤하	이상국 조상수	신현채	이상국 사외이사 선임 조상수 사외이사 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경

당사는 최근 5개년 동안 최대주주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동 공시서류의 "V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의 설립 이후 상호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1989.08.	우천제약	우천제약 주식회사	상호 변경
1996.11.11.	우천제약 주식회사	하나제약 주식회사	우천제약(주) 인수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원)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5.12.11	유상증자	보통주	2,261,000	500	800	주주배정
2016.11.09	유상증자	보통주	2,333,877	500	800	주주배정
2017.07.17	유상증자	보통주	2,373,663	500	800	주주배정
계		보통주	12,118,540	500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50,000,000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식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2,118,540	-	12,118,54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12,118,540	-	12,118,54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Ⅳ-Ⅴ)	12,118,540	-	12,118,540	-

주) 상기 발행주식, 유통주식수에는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제외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2,118,54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2,118,54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0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나. 최근 3사업년도 배당 내역

구 분		2017년도 (제40기)	2016년도 (제39기)	2015년도 (제38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4,305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4,310	17,431	4,911
(연결)주당순이익(원)		2,243	2,248	93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005	1,023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12.4	5.9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248	105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2015년도 및 2016년도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2016년도 현금배당성향은 개별 기준입니다.

다. 이익참가부사채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의 사업의 개요에 앞서, 전문용어와 약어가 많은 제약산업 특성으로 인해 관련 용어해설을 기재하였습니다.

용 어	내 용
KGMP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약품 등의 업종별 제조업 허가신청 등)의 [별표4]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및 소분업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The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Pharmaceutical Products in Korea(KGMP)라고 함
EU-GMP	EU GMP란 cGMP와 같은 개념으로 유럽 식약처라 할 수 있는 EMEA 실사를 받아 EU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허가를 의미. 서유럽, 동유럽을 막론하고 실사를 진행할 국가가 EU 회원국이면 EU-GMP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사를 진행
cGMP	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제조에 있어서는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lity) 등을 재현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따라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FDA 등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cGMP 등 GMP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의약품의 수입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개발된 의약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GMP 규정을 만족시키는 기술(이하, cGMP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필수적임. cGMP(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이 보장된 의약품을 재현성 있게 제조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품질관리·보증,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기본규정임
전문의약품 (Ethical Drug, ETC)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감독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OTC)	전문의약품외의 의약품, 처방 없이 사용 가능, 부작용의 범위가 작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의약품, 환자가 직접 선택, 용법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 및 처치가 가능한 의약품, 경미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네릭의약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후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든 복제약, 몇가지 스펙으로 구조적 동일성은 쉽게 확인되므로 효능평가를 생략, 생물학적동등성실험을 통해 약동학적 특성(PK)과 약력학적 특성(PD)에 유의적 차이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제품 출시가 가능
First Generic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끝난 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네릭 의약품
개량신약	오리지널 의약품의 API는 그대로 두고, 염이나 부형제를 변경하여 약의 효능이나 안정성, 투약방식을 변경한 제품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의약원료물질, 약효를 나타내는 효능물질로 일반적으로는 화학의약품 원료물질을 지칭, API에 체내 체류기간 증가나 약효를 돕는 염과 부형제들을 결합하면 의약품이 됨

생동성실험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하는 임상실험, 레퍼런스 의약품과의 PK(약동학)와 PD(약력학)를 확인하는 임상실험, 주로 제네릭 허가에 많이 이용
요양기관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을 총칭하며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의료기관'이라 함
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급여비 (공단부담금, 보험자부담금)	심사 결정된 총 진료비나 약제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선별등재방식 (Positive List System)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대상으로 선정한 품목만을 급여목록에 등재하는 방식
Negative list 방식	요양급여가 되지 않는 사항(비급여대상)을 정하고 그에 해당되지 않은 의료행위(치료재료포함)는 모두 요양 급여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식
급여의약품, 등재의약품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에 등재된 의약품, 약제급여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을 지칭, 환자가 일부 약값을 지불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나머지 약값을 지불하게 됨
비급여의약품	급여대상이 아닌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경우 환자가 의약품 가격의 전부를 지불함
퇴장방지의약품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
DDS (Drug Delivery System)	약물의 복용편의성을 향상 또는 1회 투여로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원하는 조직에 약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제제기술의 통칭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MR (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담당자(영업사원)

당사는 전문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은 중증통증에 쓰이는 마약성진통제와 수술 및 진정에 쓰이는 마취제의약품으로 업계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치료제, 혈액순환개선제 등 50여개 품목으로 구성된 순환기의약품과 다양한 성분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진경제로 구성되어 모든 진료과에서 타약물과의 병용처방이 가능한 소화기용약, 감염성질환 및 정형외과에서 관절염과 수술 후 통증에 쓰이는 진통제 및 피부비뇨기용약, 당뇨, 골다공증, 호흡기, 신경과, 정형회과, 산부인과 약물 등 다양한 특성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업계 최고 수준으로 260여개의 전문의약품은 모든 진료과와 다양한 병증에 두루 처방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입니다.

가. 산업의 정의

제약산업이란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한약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며,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나뉘며,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Ethical drug: ETC)과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 OTC)으로 나뉩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제형, 약리 작용의 특성상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감독 하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의료상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적응증을 갖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독약, 극약 등도 전문의약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나. 산업의 특성

(1)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의약품 산업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 보건향상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세계적인 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및 신종질병의 증가, 웰빙(well-being)과 웰에이징(well-aging)에 대한 욕구증대와 새로운 의료기술의 출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향후에도 의약품 관련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2)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차별성 및 기술에 따른 독점성이 강한 사업으로 막대한 투자에 따른 위험과 동시에 부가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의약품산업은 과학기반산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물질특허 및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선진제약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특히 오리지널 제품으로 무장한 다국적 제약사는 의약분업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급팽창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의 자본투자를 통한 기술개발능력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3) 허가, 제조, 유통, 가격, 지적재산권 등 전 부문에서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산업

의약품 산업의 특성은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산업으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 제조, 유통 등의 안정성 및 유효성 확보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더하여, 의약품 산업은 다른 제조업의 제품에 비하여 개발비용이 막대한 반면 복제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특허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4)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 불균형

의약품 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의약품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반면에, 공급자는 수요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구매자가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하는데 제한이 따르는 산업입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중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소비자가 아닌 처방의사에게 있어 제약기업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다른 산

업에 비해 소비자 주권의 제도적 보호가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전문의약품의 최종선택권을 가진 처방의사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일괄약가인하정책(2012년)이나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등 관련 유인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

(1) 글로벌 제약시장

2016년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는 11,046억 달러로 2015년 대비(10,690억 달러) 3.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약시장은 지난 2011년 이후 연 평균 6.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평균 4~7% 성장하여 1조 4,5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IQVIA, 2016). 이와 같은 성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소득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대, 생활패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건강증진・유지・개선을 위한 의료 분야의 지출이 크게 확대되는 측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추이]



(출처: QuintilesIMS Institute,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6)

선진국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등 브랜드・신약 중심으로 고가 품목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의료체계 확대 및 개선으로 인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파머징 시장에서의 의약품 사용량 증가 또한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은 파머징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 확대, 고령화,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머징이란 제약을 뜻하는 '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와 태국,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약산업 신흥시장을 뜻합니다.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파머징 국가가 최근 5년간 연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제약시장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21.7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성장하며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넘어섰습니다.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3.1%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의약품 생산액의 경우 2016년 기준 약 18.8조원으로 전년대비 10.82%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3.62조원으로 전년대비 8.58%, 수입액은 6.54조원으로 전년대비 16.76%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의약품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시장규모
단위	조원	조원	억$	조원	억$	조원
2012	15.71	2.34	20.78	5.85	51.95	19.23
2013	16.38	2.33	21.28	5.28	48.21	19.32
2014	16.42	2.54	24.15	5.49	52.18	19.37
2015	16.97	3.33	29.47	5.60	49.50	19.24
2016	18.81	3.62	31.20	6.54	56.36	21.73
전년대비 증가율	10.82%	8.58%	5.87%	16.78%	13.87%	12.95%
연평균 성장률	4.59%	11.52%	10.70%	2.81%	2.06%	3.10%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2017), 식약처)

한편, 2016년 완제의약품 생산액 기준 전문의약품은 13조 6,581억원, 일반의약품은 2조 6,743억원을 생산하며 전년 대비 각각 10.0%, 9.9%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은 83.6%로 전문의약품 위주의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2년 이후 83%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생산 품목은 13,069개, 일반의약품 생산 품목은 5,477개로 전체 생산 품목 내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분류별 생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의약품	품목수	5,957	5,841	6,075	5,624	5,477
	생산액	22,974	23,717	24,130	24,342	26,743
	비중	16.7%	16.8%	16.9%	16.4%	16.4%
전문의약품	품목수	9,860	10,781	12,282	12,283	13,069
	생산액	114,526	117,608	118,675	124,218	136,581
	비중	83.3%	83.2%	83.1%	83.6%	83.6%

(출처: 한국제약협회(2017))

현재 국내 제약시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평균수명 증

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둔화와 약가 규제 지속으로 인해 이전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제약시장은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에 편승하여 제네릭 위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약가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4월부터 가장 큰 폭의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국내 의약품 시장은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약가규제 등 보험약가의 감소로 이어져 최근까지 성장세가 다소 정체되었습니다.

한편, 특화전력 없이 단순 제네릭의 내수 판매에 기댄 수익모델은 곧 성장한계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제네릭 진입장벽 완화로 공급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특허 만료 신약 수가 2020년까지 빠르게 감소하며 신규 출시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특허 만료 품목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규모가 31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고, 2019년 900억원, 2020년 1,600억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즉, 과거처럼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도전을 통해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거나, 특허 만료 시기에 맞춰 개량신약 혹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웰빙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한국이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이상)에서 고령사회(14%이상)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17년으로 앞서 가장 빨랐던 일본의 25년 대비 8년이나 빠른 수준입니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 역시 가파른 속도로 늘어 최근 1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가폭은 3.2%p로 OECD 평균(1.6%p)의 2배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다수 제약사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확보한 원천기술과 우수한 완제의약품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기술수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내수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변동에 대해 비교적 비탄력적인 산업입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당시 한국 GDP 성장이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한국이 7.7%로 OECD 평균 9.0% 보다는 낮지만 해마다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실을 통해 한국의 경상의료비 지출은 외부 경제환경에 미미한 영향을 받음은 물론, 일반경기성장률과 정비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 계절성

의약품은 제품별로 특성이 다양하므로 계절변화에 따른 비수기, 성수기 구분이 뚜렷하게 나

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제한되고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절변동으로 인한 매출의 증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취·마약류>
마취·마약류의 경우 수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군이므로 계절적 요인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만 성형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휴가시즌, 방학시즌과 건강검진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말 경에 마취제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환기용약>
순환계질환의 경우 약물치료 없이 수술만으로 정상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경우 질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는 겨울철에 고혈압으로 유발되는 질환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화기용약>
소화기약물군은 주로 소화성궤양 치료제 및 관련약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제품군은 식생활변화 및 인구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험급여의 점차적인 확대 및 내시경검사의 보편화로 경기변동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이 고가의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이 많이 이루어지는 년말경에 소화성궤양치료제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작으로 2012년 '일괄약가제 시행' 등 본격적인 약가규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1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4월부터 가장 큰 폭의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국내 의약품 시장은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약가규제 등 보험약가의 감소로 인해 최근까지 성장세가 다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의약품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연장시켜왔고, 기대수명의 연장은 다시 의약품 등 보건산업 신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로 인해 제약산업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의약품 및 제약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시장의 경쟁상황

국내 제약시장은 500개가 넘는 기업이 난립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상위 30개사의 생산총액은 전체 생산의 54.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영업능력 및 연구개발능력

과 같은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약기업의 대부분은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R&D에 소홀해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조 가운데 2012년 4월 1일 약가인하 정책 시행으로 단순하게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만 의존했던 제약사의 경우 마진율 저하로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관련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형 신약이나 개량신약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의 실적은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실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근 많은 국내 제약사들은 내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기댄 기존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R&D를 활용한 신약이나 개량신약,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퍼스트제네릭 등의 개발, 출시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당사는 원외처방액 순위 기준 2015년 740억원으로 37위, 2016년 903억원으로 36위, 2017년 1,070억원으로 33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사별 국내 원외처방액 순위 변동(2015년~2017년, 100개사)								
2015년			2016년			2017년		
회사명	십억원	순위	회사명	십억원	순위	회사명	십억원	순위
대웅제약	485	1	종근당	481	1	종근당	482	1
화이자	426	2	한미약품	456	2	한미약품	476	2
종근당	412	3	대웅제약	454	3	유한양행	467	3
한미약품	397	4	화이자	441	4	화이자	436	4
엠에스디	375	5	유한양행	422	5	대웅제약	435	5
노바티스	337	6	엠에스디	381	6	엠에스디	382	6
유한양행	309	7	노바티스	339	7	노바티스	307	7
동아에스티	288	8	동아에스티	297	8	베링거인겔하임	265	8
베링거인겔하임	264	9	베링거인겔하임	280	9	동아에스티	265	9
CJ헬스케어	209	10	CJ헬스케어	228	10	CJ헬스케어	233	10
일동제약	207	11	일동제약	216	11	일동제약	206	11
비엠에스	190	12	삼진제약	196	12	대원제약	205	12
삼진제약	171	13	대원제약	180	13	삼진제약	202	13
제일약품	162	14	보령	169	14	제일약품	180	14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60	15	사노피	167	15	아스텔라스	175	15
사노피	157	16	제일약품	167	16	JW중외제약	173	16
대원제약	156	17	아스트라제네카	166	17	보령	164	17
보령	151	18	비엠에스	166	18	유나이티드	159	18
아스트라제네카	150	19	아스텔라스	163	19	아스트라제네카	158	19

신풍제약	138	20	한림제약	154	20	사노피	157	20
SK케미칼	136	21	JW중외제약	152	21	한림제약	155	21
한림제약	133	22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48	22	대웅바이오	151	22
한독	132	23	유나이티드	146	23	경동제약	147	23
JW중외제약	131	24	한독	144	24	한독	145	24
유나이티드	130	25	경동제약	140	25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42	25
경동제약	130	26	SK케미칼	137	26	휴텍스	140	26
안국약품	129	27	안국약품	129	27	SK케미칼	132	27
아스텔라스	128	28	신풍제약	126	28	안국약품	124	28
알보젠코리아	112	29	바이엘	123	29	비엠에스	122	29
바이엘	104	30	휴텍스	118	30	바이엘	122	30
부광약품	101	31	대웅바이오	113	31	명문제약	113	31
다이이찌산쿄	91	32	부광약품	108	32	다이이찌산쿄	109	32
명문제약	84	33	명문제약	106	33	**하나제약**	**107**	**33**
휴텍스	78	34	알보젠코리아	99	34	신풍제약	105	34
얀센	78	35	다이이찌산쿄	94	35	부광약품	104	35
에자이	77	36	**하나제약**	**93**	**36**	LG화학	104	36
하나제약	**74**	**37**	LG화학	87	37	에자이	89	37
국제약품	73	38	에자이	85	38	국제약품	85	38
건일제약	72	39	국제약품	84	39	한국콜마	85	39
삼천당	71	40	삼천당	81	40	삼천당	83	40

(출처: 유비스트)

사.회사의 경쟁력

(1) 주요제품군의 높은 진입장벽

당사는 전국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을 주 거래처로 처방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크게 주사제와 정제(경구용 의약품)를 공급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마취과가 주요 사용처이며 마약성진통제와 마취제를 메인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 선정을 반드시 주기적인 의약품심의위원회(Drug Committe)를 통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제품의 진입이 어려우나 반대로 한번 진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이탈이 적은편이며, 다음 심의위원회전까지 사용기간을 보장받습니다. 특히 마취과의 경우 수술 및 처치관련과 특성상 MR(영업사원)과의 만남을 통해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편이므로 경쟁사의 위협은 크지 않으며 약품의 선택 및 교체에 있어서도 보수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에 있어 종합병원 마취과의 수요는 안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칭하는데 약품의 특성상 오용 및 남용의 위해성이 높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추가적인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의료마약 1개 품목 당 해외수입 5개와 국내제조 5개까지만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허가자체가 엄격합니다.

또한, 2016년 기준 전체 제약사 353곳 중 허가제조업자는 73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약류, 마취의약품의 시장은 독과점 시장입니다. 대표적인 중증도 진통제인 구연산펜타닐의 경우 당사가 56%의 시장점유율(2017년 기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비씨월드제약 15%, 한림제약 12% 순으로 소수의 제약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흡입마취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세보플루란 성분의 제품의 경우 당사가 시장점유율 약 50%로 1위이며, 한국애브비 20%, 경보제약 19% 순으로 이 역시 독과점 체제입니다. 과거 일반 마취제의약품에서 오남용 우려로 2011년 2월 1일부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의 경우에도 프레지니우스카비 36%, 동국제약 26%, 당사 25%로 소수의 제조사가 독식하는 시장입니다. 이처럼 당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마약류, 마취제의약품의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매출안정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성화 제품군과 업계 최고 수준의 제품라인업의 매출상승 시너지 효과

당사는 1996년 창립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내 소수제약사에 허가된 마약류의약품과 마취제 시장을 필두로 하여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마약성진통제인 하나구연산펜타닐과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성분의 아네폴은 출시 초기부터 독보적인 수준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하나제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고혈압약물, 당뇨병약물, 근이완제, 항구토제, 소화제 등 기타 제네릭의약품의 매출을 견인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당사는 시장의 어떤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 대기업 수준인 260여개의 제네릭 제품라인업을 완성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3) 생산 경쟁력 및 우수한 R&D 인프라

당사는 2007년 기존의 향남공장에 이어 EU GMP 기준에 걸맞는 수준의 최첨단 시설의 하길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생산량의 한계에 부딪혀 400억 수준에서 더디게 성장하던 매출은 생산량 기준으로 약 2,000억원 가까이 capacity를 늘렸으며,2015년 약 1,089억원의 매출 달성이후에는 제네릭 의약품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6년 판교 테크노밸리 R&D센터에 판교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판교 연구소는 향남제약단지에 위치한 기존 향남중앙연구소에 이어 1750㎡의 면적에 제제연구실, 바이오약리연구실 등을 갖추었으며 현재 유수인력 확충을 통해 바이오신약, DDS(Drug Delivery System)기반 개량신약 및 조영제 등의 특화된 연구와 각종 국책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와 신약 및 개량신약의 연구개발 이외에 원료의약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분위기이며 일본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원료보다는 고품질의 대한민국의 의약품 원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우수한 합성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구토제인 Granisetron, 안과용제인 Moxifloxacin, 호르몬관련치료제인 Cinacalcet 등의 원료 의약품을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일본에 첫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같은 선진시장에서 원료의약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므로 일본에의 원료의약품 수출은 당사의 원료의약품 사업에 있어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효능군	품목	2018연도 (제41기 반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39기)		2015연도 (제38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순환기	아리토정	3,283	4.42%	6,699	4.81%	6,663	5.35%	6,129	5.63%
	로스토정	1,939	2.61%	3,655	2.62%	3,269	2.62%	2,308	2.12%
	클로베인정	1,787	2.41%	3,381	2.43%	3,235	2.60%	2,738	2.51%
	로스토린정	1,824	2.45%	2,682	1.93%	871	0.70%	0	0.00%
	코사탄플러스정	1,047	1.41%	2,183	1.57%	2,267	1.82%	2,210	2.03%
	순환기기타	11,536	15.52%	20,594	14.78%	17,116	13.74%	13,625	12.51%
	소계	21,416	28.82%	39,194	28.13%	33,419	26.84%	27,011	24.79%
마약, 마취	하나구연산펜타닐주	5,010	6.74%	9,323	6.69%	8,278	6.65%	7,382	6.78%
	세보프란흡입액	3,542	4.77%	7,118	5.11%	7,369	5.92%	7,616	6.99%
	아네폴주사	2,926	3.94%	6,117	4.39%	6,026	4.84%	5,887	5.40%
	레미바주	1,506	2.03%	2,085	1.50%	1,538	1.23%	649	0.60%
	오코돈서방정	420	0.57%	765	0.55%	728	0.58%	741	0.68%
	마약,마취기타	2,930	3.94%	5,484	3.94%	4,835	3.88%	4,659	4.28%
	소계	16,335	21.98%	30,892	22.17%	28,774	23.11%	26,934	24.72%
소화기	파라메트정	1,402	1.89%	2,783	2.00%	2,501	2.01%	2,575	2.36%
	넥스파정	1,430	1.92%	2,597	1.86%	2,278	1.83%	1,455	1.34%
	모노틴정	1,013	1.36%	2,025	1.45%	2,097	1.68%	1,813	1.66%
	비스원정	1,204	1.62%	1,770	1.27%	697	0.56%	0	0.00%
	레스탐정	730	0.98%	1,542	1.11%	1,673	1.34%	1,453	1.33%
	소화기기타	3,578	4.81%	7,559	5.43%	7,677	6.16%	7,276	6.68%
	소계	9,357	12.59%	18,276	13.12%	16,924	13.59%	14,572	13.38%
진통제	러키펜정	1,066	1.43%	2,081	1.49%	2,100	1.69%	1,894	1.74%
	타이리콜이알정	920	1.24%	1,942	1.39%	2,194	1.76%	2,088	1.92%
	세니탈정	845	1.14%	1,764	1.27%	1,862	1.50%	1,505	1.38%
	케로민주사	621	0.84%	1,385	0.99%	1,477	1.19%	1,518	1.39%
	메모빅캡슐	654	0.88%	1,354	0.97%	1,410	1.13%	1,317	1.21%
	진통제기타	2,644	3.56%	5,637	4.05%	5,317	4.27%	4,732	4.34%
	소계	6,750	9.08%	14,162	10.16%	14,360	11.53%	13,053	11.98%
기타 제제	람세트주	4,276	5.75%	8,153	5.85%	6,995	5.62%	5,565	5.11%
	히알원주	2,289	3.08%	4,115	2.95%	3,466	2.78%	2,773	2.55%
	뉴가바캡슐	1,465	1.97%	3,099	2.22%	3,037	2.44%	2,600	2.39%
	하나클러캡슐	1,095	1.47%	2,169	1.56%	2,217	1.78%	2,028	1.86%
	하나온단세트론주사	869	1.17%	1,672	1.20%	1,558	1.25%	1,595	1.46%
	상기품목외 기타제제	9,483	12.76%	15,845	11.37%	12,282	9.86%	11,134	10.22%
	소 계	19,476	26.21%	35,053	25.16%	29,556	23.73%	25,695	23.59%
상 품 총 계		977	1.31%	1,754	1.26%	1,501	1.21%	1,677	1.54%
매 출 총 계		74,310	100.00%	139,331	100.00%	124,535	100.00%	108,942	10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1)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구분		2018연도 (2분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40기)	2015연도 (제40기)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 20ml	내 수	15,749	15,749	15,749	15,749
람세트주0.3밀리그램	내 수	21,118	21,118	22,634	22,634
세보프란흡입액	내 수	93,664	99,000	99,000	99,000
아리토정20밀리그램	내 수	712	712	712	712
아네폴주사 20ml	내 수	4,671	4,713	4,713	4,760
히알원주2mL/관	내 수	15,299	15,299	15,299	15,299
로스토정20mg	내 수	686	686	686	762
클로베인정	내 수	1,163	1,163	1,163	1,164
뉴가바캡슐300mg	내 수	407	407	407	407
로스토린정10/20mg	내 수	1,263	1,263	1,263	-
넥스파정40mg	내 수	1,078	1,078	1,078	1,198
코사탄플러스정	내 수	488	488	488	488
하나클러캡슐250mg	내 수	438	438	438	438
레미바주5mg	내 수	29,936	29,936	30,641	30,641
러키펜정	내 수	125	125	125	125
모노틴정	내 수	103	103	103	103
트라미펜정	내 수	190	190	190	190
트라미펜세미정	내 수	126	126	126	126
파라메트정20mg	내 수	1,069	1,069	1,069	1,069
타이리콜이알정	내 수	51	51	51	51
코바라탄정160/12.5mg	내 수	831	831	831	831
코사탄정	내 수	487	487	487	488
비스원정	내 수	261	261	261	-
세니탈정	내 수	188	188	188	188
노마로크정5밀리그람	내 수	365	365	365	367
세비원정5/40밀리그람	내 수	758	758	758	787
푸로케어정	내 수	731	731	731	732
레스탐정	내 수	103	103	103	103
알피트주사	내 수	500	500	500	-
데이칸캡슐	내 수	1,784	1,784	1,784	1,784
하나온단세트론주사4mL	내 수	7,943	7,953	7,958	-
엘카트정	내 수	575	575	575	575
메모빅캡슐7.5밀리그람	내 수	270	270	270	270
발라디핀정10/160밀리그램	내 수	1,128	1,128	1,128	-
케로민주사	내 수	767	825	863	-
글리트연질캡슐	내 수	523	523	523	523
하루탐캡슐	내 수	547	547	547	547

아시크라정625mg	내 수	568	568	568	568
도네트정10mg	내 수	1,537	1,537	1,537	1,537
프리스톤정	내 수	108	108	108	108
레코푸정	내 수	139	139	139	139
바라탄정160mg	내 수	976	976	976	976
레보민정	내 수	119	119	119	119
리페돌캡슐	내 수	328	328	328	328
하니반주	내 수	54,246	54,246	54,246	54,246
다이세린캡슐	내 수	212	212	212	212
사포란정	내 수	535	535	535	535
후루겐정	내 수	174	174	174	174
티파스정	내 수	135	135	135	135
클로팜정	내 수	3,847	3,847	3,847	3,847
파라메트정10mg	내 수	534	534	534	534
에페라정	내 수	115	115	115	115
엘테인캡슐	내 수	196	196	196	292
오코돈서방정40밀리그램	내 수	1,597	1,597	1,597	1,597
프라섹캅셀	내 수	787	787	787	789
에스타렌정	내 수	124	124	124	138
유앤비캡슐	내 수	260	260	260	260
바스캄주15mg(3mL/앰플)	내 수	823	885	885	983
아시크라듀오시럽	내 수	81	81	81	81
텔미디핀정80/5mg	내 수	853	853	853	-
바다라제정	내 수	70	70	70	-
셀비트캡슐	내 수	476	476	476	476
씨프론정	내 수	522	522	522	522
다이리드정	내 수	185	185	185	185
풀카드정	내 수	220	220	220	222
칼디플러스정	내 수	70	70	70	70
스포코라정	내 수	1,267	1,267	1,267	1,268
오스톨정	내 수	5,067	5,067	5,067	5,068
하니반정150mg	내 수	19,302	19,302	19,302	19,302
실로탄정	내 수	488	488	488	488

(2) 가격 변동 원인

사용량-연동 협상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퍼스트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약가가산 만료 후 조정 등 정부의 약가정책에 따라 연동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매입 현황

(단위 : 원)

품목	매입처	구분	2018년도 (상반기)	2017년도 (제40기)	2016년도 (제39기)
원료	SHANDONG NEW TIME	수입	1,880,754,390 (USD 1,676,700)	2,766,944,070 (USD 2,582,550)	4,525,711,650 (USD 3,744,900)
	삼응산업주식회사	국내	488,020,000	177,375,560	96,200,000
	화일약품	국내	446,268,000	714,242,800	265,850,000
	㈜삼오제약	국내	184,242,000	288,000,000	359,820,000
	화원약품	국내	112,140,000	395,707,000	773,893,000
	MSN	수입	109,926,600 (USD 98,000)	214,280,000 (USD 200,000)	435,060,000 (USD 360,000)
	팜스웰바이오지점	국내	60,520,000	-	-
	백수의약㈜	국내	51,000,000	321,000,000	125,860,000
	WEIHAI DISU	수입	45,428,850 (USD 40,500)	173,566,800 (USD 162,000)	48,944,250 (USD 40,500)
	노사케미컬㈜	국내	-	865,000,000	486,700,000
	동방에프티엘	국내	-	-	166,500,000
	UQUIFA S.A.	수입	-	75,623,698 (USD 70,584)	61,633,500 (USD 51,000)
	기타(국내)	국내	2,797,377,170	3,566,601,290	4,345,447,900
	기타(수입)	수입	783,314,673 (USD 558,204) (EUR 65,180) (JPY 5,656,000)	1,903,571,220 (USD 1,254,077) (EUR 423,326) (JPY 7,241,000)	2,841,946,556 (USD 1,485,911) (EUR 766,891) (JPY 7,148,142)
	소계	국내	4,139,567,170	6,327,926,650	6,620,270,900
		수입	2,819,424,513 (USD 2,381,811) (EUR 65,180) (JPY 5,656,000)	5,133,985,788 (USD 4,198,627) (EUR 423,326) (JPY 7,241,000)	7,913,295,956 (USD 5,682,311) (EUR 766,891) (JPY 7,148,142)
		계	6,958,991,683 (USD 2,381,811) (EUR 65,180) (JPY 5,656,000)	11,461,912,438 (USD 4,198,627) (EUR 423,326) (JPY 7,241,000)	14,533,566,856 (USD 5,682,311) (EUR 766,891) (JPY 7,148,142)
부자재	㈜연합유리	국내	163,319,692	389,619,212	337,505,748
	벡톤디킨슨	국내	158,168,600	380,681,800	255,428,600
	㈜성원피엔아이	국내	97,528,075	222,717,749	181,637,400
	정은테크㈜	국내	54,867,471	119,169,344	122,535,551
	서흥㈜	국내	26,720,000	74,099,500	65,370,000
	아림인쇄사	국내	12,712,000	16,534,000	11,632,600
	QORPAK	수입	9,429,896	8,632,838	37,258,526

			(USD 8,407)	(USD 8,058)	(USD 30,830)
	㈜해성씨엔피	국내	5,917,650	-	-
	㈜풍림파마텍	국내	4,500,000	13,500,000	9,000,000
	케이엠피	국내	3,283,200	11,992,800	11,278,200
	네오프린텍㈜	국내	726,000	1,452,000	-
	영신인쇄공사	국내	-	-	8,152,800
	BORMIOLI	수입	-	31,018,793 (EUR 24,248)	46,180,519 (EUR 36,431)
	기타(국내)	국내	1,485,184,803	2,691,956,965	2,254,480,355
	기타(수입)	수입	-	7,584,358 (EUR 5,928)	7,264,695 (EUR 5,741)
	소계	국내	2,012,927,491	3,921,723,370	3,257,021,254
		수입	9,429,896 (USD 8,407)	47,235,989 (USD 8,058) (EUR 30,176)	90,703,740 (USD 30,830) (EUR 42,172)
		계	2,022,357,387 (USD 8,407)	3,968,959,359 (USD 8,058) (EUR 30,176)	3,347,724,994 (USD 30,830) (EUR 42,172)
외주가공비	아주약품㈜	국내	470,679,570	756,382,170	443,828,250
	㈜한국파비스제약	국내	452,393,500	678,105,190	310,842,880
	㈜경보제약	국내	297,304,000	669,858,600	668,471,660
	대원제약㈜	국내	296,877,000	830,689,100	356,263,180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국내	257,781,000	464,091,060	240,392,600
	대한뉴팜㈜	국내	-	-	455,960,000
	㈜유영제약	국내	-	-	610,173,600
	기타	국내	3,646,298,915	8,667,102,522	8,500,907,733
	소계	계	5,421,333,985	12,066,228,642	11,586,839,903
총합계		국내	11,573,828,646	22,315,878,662	21,464,132,057
		수입	2,828,854,409	5,181,221,777	8,003,999,696
		합계	14,402,683,055	27,497,100,439	29,468,131,753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1)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g, 외주가공 단위 : 원/정)

효능군	품목명	원재료명	2018연도 (상반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39기)	비고
순환기	아리토정	아토르바스타틴칼슘	680	980	1,200	-
	로스토정	로수바스타틴칼슘	2,748	2,679	3,626	-
	로스토린정	로스토린정	220	242	244	외주가공
마취 및	하나구연산	펜타닐시트르산염	150,000	150,000	145,385	-

마약	펜타닐주					
	세보프란흡입액	세보플루란	97	92	112	-
	아네폴주	프로포폴	410	410	410	-
	레미바주	레미펜타닐염산염	725,000	740,000	741,772	-
	오코돈서방정	옥시코돈염산염	4,280	4,280	4,041	-
소화기	파라메트정	파라메트정10mg	-	125	125	외주가공
	넥스파정	넥스파정20mg	180	180	180	외주가공
		넥스파정40mg	250	250	250	외주가공
	비스원정	비스원정	79	79	79	외주가공
	레스탐정	레스탐정	29	29	33	외주가공
진통제	러키펜정	록소프로펜나트륨	166	154	176	-
	타이리콜이알정	아세트아미노펜	7	7	7	-
	세니탈정	아세클로페낙	110	110	110	-
	케로민주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	-	729	822	-
기타제제	히알원주	히알루론산나트륨	44,000	43,517	47,000	-
	뉴가바캡슐	가바펜틴	70	63	88	-
	하나클러캡슐	하나클러캡슐	100	100	102	외주가공

(2) 가격변동원인

원재료의 가격 상승요인은 환율의 급등, 작황의 실패에 따른 원자재 수급불안, 원료 제조사의 인건비 상승, 정부의 규제에 따른 제조, 관리 방법의 강화 등이며, 원재료의 가격 하락요인은 환율의 급락, 원재료 제조사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 대량 매입으로 인한 가격하락, 염변경 등 특허 회피 된 원료의 등장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순환기 품목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재료 매입가격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가 변동이 있는 일부 원재료의 가격변동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원재료명	내용
순환기	아토르바스타틴칼슘	- 원료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경쟁사 원료의 출시로 단가 인하
	로수바스타틴칼슘	- 연간 구입물량에 대한 선주문을 통하여 제조사의 생산비용 절감 - 낮은 공급가 계약을 통해 단가 인하
마취, 마약	세보플루란	
	펜타닐시트르산염	- 마약, 향정원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원료단가가 소폭 인상
	프로포폴	
	레미펜타닐염산염	
	옥시코돈염산염	
진통제	록소프로펜나트륨	- 주성분 제조원 추가등록을 통한 매입단가 절감을 이루었으나, 최근 중국 내 환경문제로 인한 공급 불균형으로 단가 상승 중임
기타제제	가바펜틴	

4. 생산 및 생산설비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EA)

구분	품 목	사업소	제품명		2018연도 (2분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39기)	2015연도 (제38기)
완제 의약품	정제	하길공장	아리토정 외	생산능력	562,500,000	1,125,000,000	1,125,000,000	875,000,000
				생산실적	160,527,124	296,240,705	290,909,791	265,874,329
	캡슐제		다이세린 캡슐 외	생산능력	112,500,000	225,000,000	225,000,000	225,000,000
				생산실적	19,406,220	37,538,398	36,072,810	29,786,802
	액상 주사제		아네폴주사 외	생산능력	18,5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생산실적	21,077,800	42,033,430	42,149,770	38,870,310
	PP앰플주사제		하나구연산펜타닐 주PP 외	생산능력	4,625,000	9,250,000	9,250,000	9,250,000
				생산실적	1,047,528	1,947,585	1,849,378	1,574,612
	동결건조 및 비멸균 Vial주사제		레미바주 외	생산능력	75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생산실적	277,510	342,285	220,270	90,860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제		히알원주 외	생산능력	1,025,000	2,050,000	2,050,000	-
				생산실적	325,592	566,196	215,454	-
	흡입액제	상신공장	세보프란흡입액	생산능력	210,000	420,000	420,000	420,000
				생산실적	65,558	108,346	117,455	110,530

주) 2018년도 2분기 생산능력은 과거 년도 대비 생산설비 변동사항이 없어 2017년도 2분기의 생산능력 값을 입력하였습니다.

(1) 생산능력의 산출기준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가동기기	생산능력
완제 의약품	정제	하길 공장	타정기 1호기	450,000T/일
			타정기 2~4호기	각 750,000T/1일
			타정기 5호기	800,000T/1일
			타정기 6호기(16년 도입)	1,000,000T/1일
	캡슐제		캡슐충전기	900,000C/1일
	액 상 주사제		1~5㎖ Ample	120,000A/1일
			10~20㎖ Ample 및 Vial	28,000EA/1일
	PP앰플 주사제		2㎖ PP Ample	23,700EA/1일
			10~30㎖ PP Ample	13,300EA/1일
	동결건조 및 비멸균 Vial 주사제		동결건조기	30,000V/1일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제		충전기(16년 도입)	20,500S/1일
	흡입액제	상신 공장	충전기	2,100병/일

(2) 연간 생산능력 산출방법

사업 부문	품 목	사업소	가동기기	산출방법
완 제 의약품	정제	하길 공장	타정기 1호기	타정기 6기 × 1일 7시간 가동 × 250일(50주)
			타정기 2~4호기	
			타정기 5호기	
			타정기 6호기(16년 도입)	
	캡슐제		캡슐충전기	캡슐충전기 1기 × 1일 7시간 가동 × 250일(50주)
	액상 주사제	하길 공장	1~5㎖ Ample	1~5㎖ Ample 1기 × 1일 5시간 가동 × 250일(50주)
			10~20㎖ Ample 및 Vial	10~20㎖ Ample 및 Vial 충전기 1기 × 1일 5시간 가동 × 250일(50주)
	PP앰플 주사제		2㎖ PP Ample	2㎖ PP Ample 1기 × 1일 5시간 가동 × 250일(50주)
			10~30㎖ PP Ample	10~30㎖ PP Ample 1기 × 1일 5시간 가동 × 250일(50주)
	동결건조 및 비멸균 Vial 주사제		동결건조기	동결건조기 1기 × 1주 1회가동 × 50일(50주)
	프리필드 시린지 주사제		충전기(16년 도입)	충전기1기 × 1주일 2회 가동 × 100일(50주)
	흡입액제	상신 공장	충전기	충전기1기 × 1주일 4회 가동 × 200일(50주)

나. 생산시설 현황

(1) 생산시설

(단위 : 백만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최근 분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상신 공장	토지	상신리 907-3	2,799	-	-	-	2,799	2,799	310,300원 4,945.4㎡
		상신리 61-8	80	-	-	-	80	80	351,600원 4,699㎡
	건물	상신공장(상신리)	3,231	-	-	123	3,108	3,231	-
		기타(상신리)	2,551	-		108	2,443	2,551	-
	구축물	상신리	-	-	-	-	-	-	-
	기계장치	상신리	276	-	-	106	170	197	-
	공구와기구	상신리	49	46	-	22	73	75	-

(단위 : 백만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최근 분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하길 공장	토지	하길리 1402	11,453	-	-	-	11,453	11,453	338,500원 19,386.7㎡
		하길리	101	-	-	-	101	101	-
	건물	하길리	9,590	-	-	311	9,279	311	-
		하길GMP공장	3,117	-	-	78	3,039	3,117	-
		기타(하길리)	1,692	50	-	57	1,685	1,692	-
	구축물	하길리	123	-	-	26	97	97	-
	기계장치	하길리	4,607	1,055	-	1,671	3,991	4,038	-
	공구와기구	하길리	336	227	-	140	423	441	-

(2) 최근 3사업연도 중 중요한 변동사항

(단위 : 원)

설비자산명	취득가액	취득일	취득사유	용 도	취득처
대표바코드발행기	21,000,000	2015년03월13일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대응	제품 일련번호 수집	한신라벨부착기
2D인쇄기4	45,000,000	2015년03월13일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대응	제품 일련번호 인쇄	한신라벨부착기
2D바코드 시스템	543,180,360	2015년06월01일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대응	제품 일련번호 수집	루텍
Pre-Filled Syringe	750,130,706	2015년06월12일	신규제품생산	생산장비	OPTIMA
캡슐충전기 change part	13,000,000	2015년06월15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세종파마텍
2D바코드 H/W	22,000,000	2015년07월07일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대응	시스템 구축	루텍
카톤정렬장치	10,000,000	2015년07월20일	장비 성능 향상	생산자동화	현대자동포장기
설명서공급장치	22,000,000	2015년07월20일	장비 성능 향상	생산자동화	현대자동포장기

LEAKAGE TESTER	9,300,000	2015년10월28일	제조 기준 강화	공정검사	큐시스템
서비스탱크(SUS)	3,000,000	2015년10월29일	신규제품생산	생산장비	퓨라
고압증기멸균기	314,000,000	2015년11월23일	신규제품생산	생산자동화	화인에프에이
주원료조제탱크 (프리필드)	90,000,000	2015년11월23일	신규제품생산	생산자동화	화인에프에이
부원료조제탱크 (프리필드)	35,000,000	2015년11월23일	신규제품생산	생산자동화	화인에프에이
서비스탱크 (프리필드)	43,000,000	2015년11월23일	신규제품생산	생산자동화	화인에프에이
NEWMAN 6VIAL라벨기	374,145,020	2015년12월07일	신규제품생산	생산장비	OCS
카톤포장기 change part	1,800,000	2015년12월10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현대자동포장기
카톤포장기 change part	1,800,000	2015년12월10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현대자동포장기
ALU/ALU충전장치	8,000,000	2016년01월13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블리스텍
ALU/ALU충전장치	8,000,000	2016년01월13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블리스텍
고속혼합기(SM-200)	93,500,000	2016년03월24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장비	세종파마텍
고속스캐너	7,500,000	2016년03월29일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대응	제품 일련번호 수집	루텍
열수건조기4	56,666,667	2016년04월20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장비	남주기계
열수건조기5	56,666,667	2016년04월20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장비	남주기계
열수건조기6	56,666,666	2016년04월20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장비	남주기계
열전사 잉크젯 프린터	10,000,000	2016년05월31일	기존 장비 대체	인쇄장비	위드엘케이
무빙장치	6,000,000	2016년05월31일	기존 장비 대체	생산자동화	위드엘케이
열전사 잉크젯 프린터	10,000,000	2016년05월31일	기존 장비 대체	인쇄장비	위드엘케이
이동식 스탠드	1,800,000	2016년05월31일	기존 장비 대체	생산자동화	위드엘케이
고정형 DRUM LIFTER	31,000,000	2016년07월22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자동화	남주기계
고정형 DRUM LIFTER	31,000,000	2016년07월22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자동화	남주기계
FOG MACHINE (과산화수소 훈증기)	19,000,000	2016년08월18일	제조 기준 강화	제조환경 관리	퓨어텍코리아
FOG MACHINE (과산화수소 훈증기)	19,000,000	2016년08월18일	제조 기준 강화	제조환경 관리	퓨어텍코리아
초음파 세척기	1,300,000	2016년09월06일	기존 장비 대체	부품 세척	계측기옥션
물류 DPS (Digital Picking System)	102,000,000	2016년10월26일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대응	물류자동화	루텍
이중정타정기(R292F)	787,185,356	2016년10월27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장비	GEA
시린지 핑거그립 조립기 (HSP-300)	28,000,000	2016년11월22일	신제품생산	생산자동화	하나파마텍
동결건조 냉각기	40,000,000	2017년03월21일	신제품생산	생산 보조 설비	와쿨
정제,캡슐 자동선별기	400,000,000	2017년07월25일	생산장비 추가	생산장비	대용파마텍
매뉴얼팩 자동상면부착기	15,000,000	2017년07월31일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한신라벨부착기
블리스터포장기 (BT-6)	146,000,000	2017년08월16일	생산라인 증설	생산장비	블리스텍
반자동번들장비3	269,412,766	2017년09월15일	생산장비 추가	제품 일련번호수집	OCS
LABEL CHECK STATION	30,000,000	2017년10월25일	생산장비 추가	제품 일련번호 인쇄	한국유니콤
카톤포장기 change part	1,800,000	2017년10월30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현대자동포장기
카톤포장기 change part	1,800,000	2017년10월30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현대자동포장기

카톤포장기 change part	1,800,000	2017년10월30일	신제품생산	생산장비	현대자동포장기
앰플파쇄기	3,500,000	2017년11월16일	폐의약품 처리	포장 후 잔여 의약품 폐기	남주기계
밀봉검사기2	50,000,000	2017년12월28일	기존 장비 대체	생산장비	남주기계
2ml플라스틱 앰플 라벨러기	30,000,000	2018년02월28일	생산장비 추가	생산장비	한신
시린지 핑거그립 및 밀대 자동조립기	88,000,000	2018년04월12일	생산장비 추가	생산장비	아성기계
이산화염소 가스멸균기	400,000,00	2018년04월18일	제조 기준 강화	생산 보조 설비	국제씨엘에스
2D인쇄 케이스봉함 및 중량 선별기	556,638,460	2018년05월11일	제조 기준 강화	생산장비	OCS
잉크젯트프린터(HITACHI INKJET PRINTER)	25,000,000	2018년05월24일	인쇄 장비 추가	인쇄장비	HITACH
병정렬기 및 에어세척기	42,500,000	2018년05월25일	생산장비 추가	생산장비 증설	카운텍
자동계수기	82,500,000	2018년05월25일	생산장비 추가	생산장비 증설	카운텍
압축공기 공급시스템 개선작업 및 공기압축기 (50HP)	145,000,00	2018년05월 31일	기존 장비 대체	생산 보조 설비	MITSUISEIKI

(3)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

당사는 향후 주문증가에 대응하여 생산능력 확대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성 향상 및 생산자동화를 위해지속적인 설비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FS시스템을 도입(전용 2층 시설)하여 기존 앰플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임상 진행 중인 제품의 예상되는 수요량에 맞게 동결건조전용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제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증축, 신축을 통하여 생산량을 늘려갈 예정이며, 일부 노후된 설비로 인한 작업자의 위험성, 생산수율의 떨어짐을 막고자 오버홀 혹은 신규장비로의 교체를 매년 진행 중입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품 목		2018연도 (제41기 반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39기)		2015연도 (제38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순환기	내수	867,831	21,416	1,558,780	39,126	1,178,116	33,260	1,075,78	26,923
		수출	-	-	11,514	68	26,006	159	14,476	88
	마약, 마취	내수	745,659	16,232	1,454,678	30,738	1,356,43	28,346	1,262,48	26,640
		수출	17868	102	28,187	154	53,150	429	37,651	294
	소화기	내수	337,151	9,357	612,212	18,276	519,846	16,924	539,544	14,572
		수출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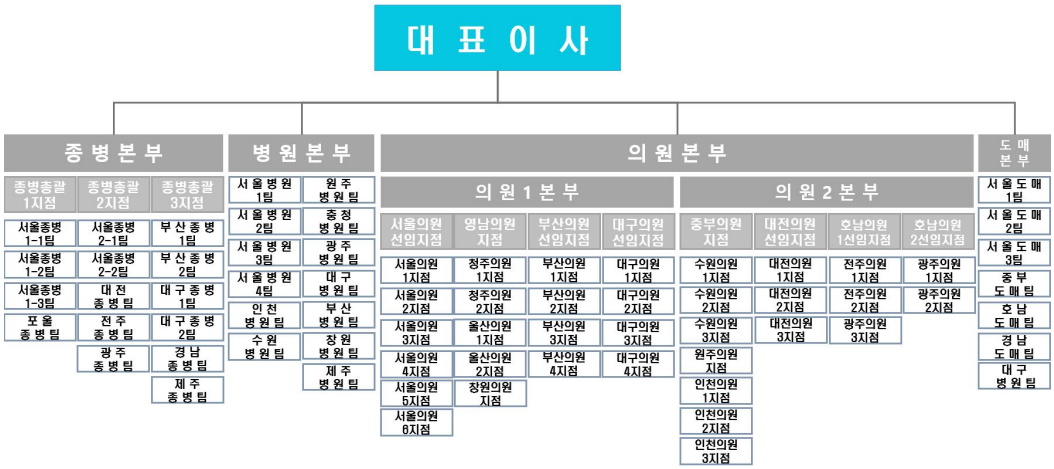
	진통제	내수	176,890	6,696	382,855	14,107	325,664	14,304	372,465	12,995
		수출	10,843	54	10,846	56	10,777	56	10,751	58
	기타	내수	-	19,358	-	34,854	-	29,410	-	25,540
		수출	-	118	20,949	200	18,180	146	19,666	155
제 품 계			-	73,333	-	137,577	-	123,034	-	107,265
상품	마약, 마취	내수	-	-	-	-	-	-	1,622	246
		수출	-	-	-	-	-	-	-	-
	기타	내수	44,439	977	83,003	1,754	67,216	1,501	49,579	1,431
		수출	-	-	-	-	-	-	-	-
상 품 계			44,439	977	83,003	1,754	67,216	1,501	51,201	1,677
합 계		내수	-	74,036	-	138,854	-	123,745	-	108,099
		수출	-	275	71,496	477	-	790	82,544	596
		합계	-	74,310	-	139,331	-	124,535	-	108,942

주) 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 매출이 포함된 항목은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판매경로

(1) 판매조직도의 구성

(가) 영업조직 및 담당업무



본부명	영업대상	지역	비고
종병본부	200병상 이상의 병원,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전국	-
병원본부	200병상 이하 병원	전국	-
의원1본부	의료법상 '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서울,영남,충북	문전약국의 관리(판매,수금 등)도 겸함
의원2본부	의료법상 '의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호남	문전약국의 관리(판매,수금 등)도 겸함
도매본부	의약품 도매상	전국	판매, 수금 외 담보수령업무도 겸함

① MR(Medical Representative, 영업사원)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 약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제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제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품의 적정한 사용과 보급을 책임지며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울, 수원, 인천, 원주, 대전, 청주, 부산, 대구, 창원, 광주, 울산, 전주, 제주 지역 총 14개의 영업소에 271명의 MR이 근무하고 있으며 MR은 200병상이상 종합병원 담당자, 200병상 이하 병원담당자, 로컬의원 담당자, 도매상 담당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영업지원조직 및 담당업무



① 마케팅부

회사의 모든 제품에 대해 마케팅 담당자가 존재하며, 해당 제품 담당자를 PM(Product manager)이라고 합니다. PM은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와 전략수립 및 실행, 예산 집행 등을 가장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품 관련 학회나 모임을 통한 제품 홍보, 심포지엄 및 세미나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영업사원의 제품 디테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술지원 및 영업사원 교육, 판촉물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MR의 거래처 활성화를 위한 동행방문, 시장성 있는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및 상품화, 신제품의 Pre-marketing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영업기획팀

영업조직 및 영업사원의 실적에 대한 예측, 기획, 분석이 주 업무입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마진 책정, 품목별, 성장률별 영업사원 인센티브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③ 영업관리부

매출처의 주문결재와 반품 등의 영업관리 업무, 월별 실적 마감 업무, 도매상별 판매, 재고, 수금여신 관리 등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2) 영업판매경로



영업판매경로

구분	판매경로 및 상세설명
판매경로 1	하나제약 → 도매상 → 병원/의원 → 소비자(환자)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기타 규모가 있는 병원은 원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도매상을 거쳐서 유통이 됩니다.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대부분 의약품 공급 도매상 1~2곳을 통해 여러 제약사의 의약품을 납품받기 때문입니다.
판매경로 2 (직거래)	하나제약 → 약국 → 소비자(환자) 약국의 경우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 직접 판매가 됩니다. 즉, 경구제가 원외로 처방되고 있는 병/의원의 문전약국과는 주로 당사와 직거래를 하고,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최종 제품을 구입합니다.
판매경로 3	하나제약 → 도매상 → 약국 → 소비자(환자) 약국의 경우 대부분 직거래를 하지만 일부 대형도매(지오영, 복산나이스팜 등)를 통해 약국에 유통이 됩니다.
판매경로 4 (직거래)	하나제약 → 병원/의원 → 소비자(환자) 중소규모 병원이나 의원은 원내 처방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 되기도 합니다.

(3) 판매전략

유통	전략	세부내용
종합병원	1. 신제품 랜딩: 파록시, 레미바, 덱스메딘 2. 신약임상 및 프리마케팅: 레미마졸람 3. 영업 영역 확대: - 중환자실 및 관련과 (진정제 및 마취제) -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 소화기내과, 가정의학과 (수면내시경용 진정제, 항궤양제) 4. 주요 고객(처방의사) 발굴 및 관리	1. 심포지엄 개최: 마취과, 중환자실 2. 제품설명회 활성화 → 전문강사 초빙 강의 3. 학회참석(마취통증/중환자/암학회, 병원약사회) → 제품 및 회사 홍보, 런천 심포지엄 4. 신약 임상 진행 → 학회 및 심포지엄, 저널 발표
병원	1. 신제품 랜딩: 파록시, 네큐팜, 히알원 2. 영업 영역 확대: - 중환자실 및 관련과 (진정제 및 마취제) - 건강검진센터 (수면내시경용 진정제, 항궤양제) 3. 처방의약품(경구제) 활성화	1. 제품설명회 활성화 → 전문강사 초빙 강의 2. 도매부 협조 품목 셋팅 및 매출관리 3. 비급여품목 활성화

의원	1. MR 인력 확충 2. 장기처방약물(순환기, 신경과약물) 활성화 3. 수면내시경용 마취/진정제 + 항궤양제 시너지 전략 4. 성형외과 비급여약물(마취/진정제, 진통제) 공략 5. 호흡기약물 시장확대로 인한 영업력 집중	1. 제품 설명회 진행 → 지역 모임, 특정질환 관련 연구회 2. 의원 담당 MR 인력 충원 및 교육 강화 → 마취/진정제 전문 인력 양성 → Selling skill, 디테일 능력 강화 3. 개원의 학회 참석 및 홍보 → 회사 및 제품 인지도 상승
공통	1. 근거(Reference) 중심 영업 지향 2. MR 능력 강화 - 학술 능력 배양 -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수행능력 배양 3. 회사 홍보 방안 개발 (회사 이미지 증대) 4. CP 준수 영업 5. 감성영업 유도 6. Key Dr. 관리 7. 업무효율 증대	1. 회사 및 제품 홍보용 판촉물 제작(분기별, 제품별, 고객별 차별화) 2. 학술데이터 구축: 정기적으로 제품 관련 논문 및 이슈로 다양한 리플렛, 디테일 자료 제작 3. 심평원 및 유관 기관과의 의사소통 강화 4. 영업 우수 직원 시상 강화(동기부여) 5. 성공사례 공유: 우수 사원 성공 노하우 발굴 및 시상/공유 6. 전문강사 초청 강연 활성화 7. CP 교육 강화 및 상벌제 시행 8. 부작용발생보고체계 및 효율적 문제해결 방안에 관한 프로세스 구축 9.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6. 수주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가. 주요 시장위험 내용

당사는 해외 영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외환에 대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외환위험은 미래 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이자율위험은 주로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계약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

힐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재무 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한 추산액에 근거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도래 시에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입니다. 그 결과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금융보증 및 미사용 대출약정을 이행할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과 유동성관리규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회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 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가.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1천 EUR)

품목	계약 상대방	대상 지역	계약 체결일	계약 종료일	총 계약 금액	지급 금액	진행단계
레미마졸람	Paion	한국	2013.10.28	제품 발매 후 10년 또는 보유 특허의 마지막 만료일로부터 10년 중 더 늦은 일까지	3,861 (EUR 3,000)	1,287 (EUR 1,000)	임상 3상

합 계	3,861 (EUR 3,000)	1,287 (EUR 1,000)	-

(1) 레미마졸람

구 분	내 용
계약상대방	Paion(독일)
계약내용	하나제약은 Paion사로부터 레미마졸람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제공을 통해 한국에서의 개발, 판매, 유통 및 제조 등의 독점 권한을 부여받음.
대상지역	한국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13.10.28. 계약종료일: 제품 발매 후 10년 또는 보유 특허의 마지막 만료일로부터 10년 중 더 늦은 일까지
총 계약금액	3,861백만원(EUR 300만), 로열티는 별도
지급금액	① 계약금(Upfront payment): 1,287백만원(EUR 100만), 2013년 11월 <환수 가능 금액> - 해당없음
계약조건	① 계약금(Upfront payment): 1,287백만원(EUR 100만) - 지급조건: 계약 체결 시 ② 마일스톤(Milestone): 2,574백만원(EUR 200만) - 일본 라인센스인 계약자의 일본 PMDA 허가제출 시: 644백만원(EUR 50만) - 일본 라이센스인 계약자의 일본 PMDA 허가승인 시: 644백만원(EUR 50만) - 당사의 국내 허가승인 시: 1,287백만원(EUR 100만) ③ 로열티(Royalty) - 순 매출액의 10% - 보유 특허의 마지막 만료일 이후이며, 레미마졸람을 함유한 경쟁품목이 시장점유율 10%를 초과할 시 순 매출액의 5%로 감소 임상, 등록, 상업화 실패시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시에도 Paion사의 당사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음
회계처리방법	계약금 - 장기선급금 계정 반영
대상기술	레미마졸람의 원료 및 완제품 제조 및 제제기술
개발 진행경과	<거래 상대방(Paion)> - 유럽 임상 3상 시작일: 2018.08.24 <회사(하나제약)> - 임상 3상 승인일: 2017.10.31 - 임상 시작일: 2018.03.22
기타사항	- 일본 라이센스인 계약자의 PMDA 품목허가서류 제출 예정일: 2018년 10월 - 미국 라이센스인 계약자의 FDA 품목허가서류 제출 예정일: 2018년 11-12월 - 하나제약 외 판권 계약국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러시아, 터키, MNENA region (유럽: Paion에서 개발 및 허가 진행 예정)

다. 기술제휴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판매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타계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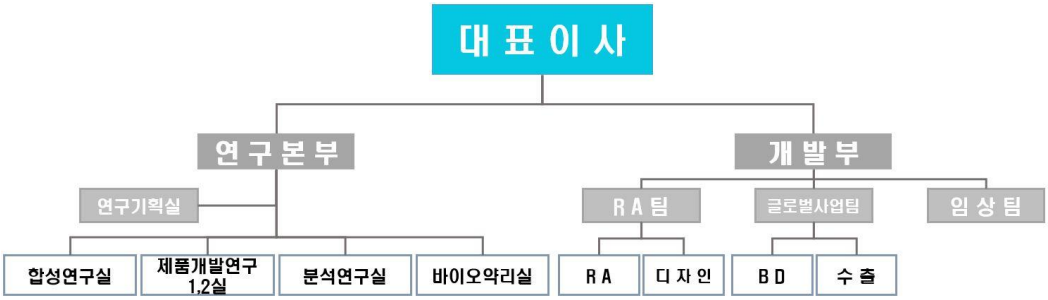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 연구본부는 그동안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연구본부에서 자체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들의 매출은 연간 30%씩 성장하였으며, 제네릭 의약품 개발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은 하나제약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난용성 약물 서방화 기술, 확산제어형 서방화 기술, 복합제제 제조 기술, OROS (Osmotic controlled-release oral delivery system)제제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종 국책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인 신약 개발에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합성연구실, 제품개발연구실, 바이오약리실 및 분석연구실로 구성된 연구본부와 RA팀, 글로벌사업팀 및 임상팀으로 구성된 개발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 연구개발 본부 조직도



(3) 연구개발본부 인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기타	계
연구본부장	1	-	-	-	-	1

합성연구실(하길)	-	7	-	-	-	7
공정연구실(하길)	-	-	3	2	3	8
분석연구실(하길)	-	-	5	1	-	6
기획 및 조사실(판교)	-	-	2	-	-	2
제품연구 1, 2실(판교)	-	13	-	-	-	13
분석연구실(판교)	-	2	3	-	-	5
바이오약리실(판교)	2	1	-	-	-	3
연구기획실(판교)	1	2	-	-	1	4
개발부 총괄이사	-	1	-	-	-	1
RA팀(개발부)	-	1	8	-	1	10
글로벌사업팀(개발부)	-	-	4	-	-	4
임상팀(개발부)	-	-	2	-	-	2
총계	4	27	27	3	5	66

(4) 연구개발본부 실별 업무

구분	부서(담당업무)	상세내용
연구본부	합성연구실(고품질,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 생산 및 염변경 개량신약 개발)	- 신약/개량신약 합성 기술 - 원료의약품 생산 및 공정 최적화 - 고품질 원료 합성 기술 개발
	제품개발연구실(신제품 출시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개발 및 새로운 제제기술 적용)	- 제제설계 및 물성연구 - 제제공정 개선 및 최적화 연구 -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연구 - 신규 특수제형 연구
	분석연구실(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준 시험법 설정 및 분석법 개발)	- 기준 및 시험법 확립 - 신제품 시험설계 및 분석 - Method validation
	바이오약리실(약효 및 druggability 검증을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 Druggability evaluation - 약효 및 약리 연구 -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 비임상 과제 관리
	연구기획실(연구본부 운영, 정책 관리,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기술 도입 및 검증)	- 연구 방향, 정책 수립 및 기획 - 외부기술 검증 및 도입 -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제휴
개발부	RA 팀 (신제품 허가/약가 신청 및 제품 관리)	- 신제품 허가 자료 검토, 신제품 허가신청 및 약가신청 - 허가변경, 품목갱신, 연차보고등 제품 관리, 사용량 연동, 사용범위 확대, 실거래가 관리 - 식약처 규정에 따른 표시부자재 제작 - 신제품 발굴 및 검토, 신제품 발매 일정 관리 - 특허 소송 및 특허 방어 등 특허 관련 업무
	글로벌사업팀	- 전세계 개발 중인 신약 등 검색, 검토 및 license-in 진행

		- 국내 연구 개발 개량신약 등 공동 개발 검토 및 진행 - 원료 및 완제 신규 해외 수출 파트너 탐색 및 수출 지역 검토 - 원료 및 완제 해외 등록, 수출 진행
	임상팀 (신약의 임상시험 진행)	- 임상 1 ~ 3상 IND 신청 - 임상 시험 진행 관리, 결과 분석 - PMS(임상 4상) 진행 및 관리, 결과 분석

(5) 핵심 연구인력

당사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주요 연구실적
연구 본부장 (부사장)	조영우	연구총괄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05.0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10.07~'16.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신기술전문위원 ('07.10~'11.12) 동아제약 수석연구원('86.12~'10.12) 대화제약 연구개발본부 본부장('11.01~'16.01) 하나제약(주) 연구본부장 전무이사('16.01~'18.03) 하나제약(주) 연구본부장 부사장('18.04~현재)	[논문] 1) Enhancement of bone growth by sustained delivery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in a polymeric matrix('01년, Pharmaceutical Research) 2) Synthesis and antibacterial activity of oxazolidinones containing pyridine substituted with heteroaromatic ring(`04년, Bioorg Med Chem) 3) Long-acting Recombinant human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rhG-CSF) with a Trimer-Structured Polyethylene Glycol ('10년, 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 4) Metronomic oral paclitaxel shows anti-tumor effects in an orthotopic mouse model of ovarian cancer ('14년, Gynecol Oncol) [학회발표] 1) R&D Trends in Therapeutic Portein Delivery System ('04, Ewha NanoBio International Symposium 2004) 2) The Effects of Polymer Molecular Weight on the Release Kinetics of Recombinant Human Growth Hormone in Vitro and in Vivo from the Growth Hormone-Loaded PLGA Microspheres ('03, AAPS) 3) Ethanolic extract of the Seed of Zizyphus jujuba var, spinosa and its active compound spinosin, ameliorates memory impairment induced by scopolamine in mice ('13, FENS) 4) Ameliorating effect of swertisin in MK-801 induced prepulse inhibition deficits and cognitive impairment ('15, GA2015) 5) Spinosin, a C-glycoside flavonoid, enhances cognitive performance and adult hippocampal neurogenesis in mice. ('16년, Pharmacol Biochem Behav) 6) Predicting the efficacy of an oral paclitaxel formulation (DHP107) through modeling and simulation, ('15년, Clin Ther.)

연구위원 (상무이사)	송릿다	연구기획	프랑스 Universite de Toulouse III 졸업('96.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과학부 박사후 및 선임연구원 ('97.09~'03.02)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기획협력 실장 ('04.12~'14.09) 하나제약(주) 연구기획실 상무이사('17.06~'현재)	[논문] 1) Metalloporphyrin-Catalyzed Oxidation of 2-Methylnaphthalene to Vitamin K3 and Methyl-1, 4-naphthoquinon by Potassium Monopersulfate in Aqueous Solution ('97, Journal of Organic Chemistry) 2) Synthesis and Selective Tumor Targeting Properties of Water Soluble Porphyrin-Pt(II) Conjugates ('02, Journal of Inorganic Biochemistry) 3) Synthesis and Antitumor Activity of DNA-binding Cationic Porphyrin-platinum(II) Complexes. ('03, Tetrahedron Letters) 4) Controlled Stoichimetric Synthesis of DNA-Quantum Dot Conjugates Using Ni-mediated Coordination Chemistry ('10, Chem. Commun) 5) Characterization and cancer cell specific binding properties of anti-EGFR antibody conjugated quantum dots, ('10, Bioconjugate Chemistry) 6) Novel hepatitis C virus inhibitors interfering with viral entry and release, ('16 Antiviral Research)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도 (제41기 2분기)	2017연도 (제40기)	2016연도 (제39기)	2015연도 (제38기)
원 재 료	753	1,108	940	985
인 건 비	1,190	2,129	2,238	851
제 조 경 비	-	-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586	922	981	1,472
합계	2,529	4,159	4,159	3,308
자 산 계 상	-	-	-	-
비 용 계 상	2,529	4,159	4,159	3,308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	3%	3%	3%

라.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적응증	연구시작년도	현재 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년도	
화학합성	신약	레미마졸람 (HNP-2001)	진정 수면 마취제	2018	임상3상 (한국)	2017	라이센스인
		HNP-2006	MRI 조영제	2017	전임상	2016	국책사업
		HNP-6002	당뇨성 망막병증	2018	후보물질 개발	2018	국책사업

		HNP-6003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2018	후보물질 개발	2018	국책사업

(가) HNP-2001(진정수면마취 신약, 레미마졸람)

구분	화합합성 신약
적응증	진정 수면 마취제
작용기전	- 정맥 내 투여경로에 의한 진정효과로써 전신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Benzodiazepine계 ultra-short-acting 약물임. - 펜타닐의 short-acting opiate ester인 레미펜타닐을 모티브로 하여 개발된, 미다졸람의 ultra-short-acting 버전의 약물이며, 기존 benzodiazepine과 동일한 GABAA 수용체에 positive allosteric modulator로 작용함
제품의 특성	- 체내에서 신속하게 가수분해되는 ester 기반의 약물로, 조직에 존재하는 esterase에 의해 비활성 카복실산 대사체인 CNS7054로 전환됨 - 대사과정에서 CYP isoenzymes가 관여하지 않아, 간독성 위험이 적음
진행경과	- 당사의 연구개발능력, 기술력 및 영업력 등을 인정받아Originator인 Paion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판권을 독점 보유함 - 2상 임상이 완료된 상태로 기술 이전된 파트너 국가별로 개별적인 3상 임상을 진행중에 있음 - 전 세계적으로 1,700명 이상의 지원자가 글로벌 임상시험에 참여하였으며, 동 약물의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을 통해 발매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임
향후계획	-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적응증으로 당사가 협약된 한국시장 외에도 중국, 러시아, 터키, MENA 지역 및 캐나다의 각 라이센스 사용권자에게 권리양도되어 있음
경쟁제품	- 프로바이브주1%(명문제약) - 프레조폴엠시티2%주(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 포폴주사2%(동국제약)
관련논문 등	-Remimazolam: New Beginnings or Just a Me-Too Sneyd, J.R. (Anesthesia and analgesia, Vol.115 No.2, [2012]) [SCI,SCIE,SCOPUS] -Remimazolam: Pharmacologic Considerations and Clinical Role in Anesthesiology Wesolowski, A. M.; Zaccagnino, M. P.; Malapero, R.; (PHARMACOTHERAPY, Vol.36 No.9, [2016]) [SCI,SCIE,SCOPUS] -Remimazolam Versus Midazolam in Upper GI Endoscopy unknown (Anesthesia and analgesia, Vol.120 No.4, [2015]) [SCI,SCIE,SCOPUS]
시장규모	- 국내 930억 원(IMS Data 2017) - 전세계 약 4.8조 원(IMS Data 2016)
기타사항	-

(나) HNP-2006(조영제 신약)

구분	화학합성 신약
적응증	MRI 촬영에 필요한 조영제

작용기전	고리형 구조의 가돌리늄을 통해 기존의 선형구조의 가돌리늄이 신장 및 뇌에 잔류하는 문제점을 개선
제품의특성	MRI 조영제 제품들의 치명적 부작용인 신원성 전신 섬유증(Nephrogenic systemic fibrosis, NSF) 발병률을 낮춤
진행경과	2018년 현재 임상1상 IND 진행 중
향후계획	- 2020년 Clinical trial phase 2 - 2022년 Clinical trial phase 3 - 2024년 품목허가 및 약가 획득
경쟁제품	기존 선형 구조의 가돌리늄 조영제(바이엘코리아, GE헬스케어, 동국제약, 태준제약)
관련논문 등	작성기준일 현재 논문개재 또는 학회발표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시장규모	- 국내: 335억원(한국 IMS Health Data) - 해외: Market Research (Apr 14, 2016, Nicholas Leider) 기준 4조8000억원
기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다) HNP-6002(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제)

구분	화학합성 신약
적응증	당뇨성 망막병증
작용기전	- 혈관신생에 관여하는 tube formation 및 cell migration을 효과적으로 저해 - 당뇨성 망막병증 mimic zebrafish model에서 high glucose에 의한 혈관 확장 및 증식 저해 - VEGFR2 및 하위 PI3K-AKT-eNOS, FAK 신호 전달 억제를 통한 혈관신생 저해
제품의특성	- 기존 치료제의 유리체강 내 직접 주사로 인한 환자의 통증 및 편의성 문제를 해결 할 경구용 약물 - 고가의 항체치료제를 대체할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 - Off-label로 사용하는 치료제(아바스틴, 항암제)의 부작용 및 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성이 매우 낮은 안전한 경구용 치료제
진행경과	ST2-VI-66 물질로 선행연구 진행 (ACS Med Chem Lett. 2017; 8(10):1066-1071.) 및 지속적 물질 합성, 최적화 진행 중
향후계획	- 비임상 후보 화합물 도출 - 총 연구 기간 : 2018. 04. 30. ~ 2020. 12. 31. (36개월)
경쟁제품	현재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제는 없음.
관련논문 등	작성기준일 현재 논문개재 또는 학회발표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시장규모	- 국내시장: 연평균 7.3%증가, 2010년 약 329억원, 2014년 약 436억원 - 해외시장: 2014년 10억 6천만달러 (출처: Grand View REsearch, 2015 AMD and Other Retinal Diseases, VisionGain. 2013)
기타사항	2018년 보건복지부 과제 수행,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공동연구 중

(라) HNP-6003(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구분	화학합성 신약
적응증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작용기전	지방간으로 인한 염증과 섬유화의 발생기전을 타겟으로 함
제품의특성	생리지질활성 이상 및 이상지질 축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물질을 도출하여 지방간으로부터 간경변까지의 근본적인 치료
진행경과	- 천연물 유래 단일 물질 유도체 발굴 - In-vitro 세포 기전 연구 - In-vivo 지방간 동물모델 효능평가
향후계획	- 2021 물질 최적화 완료 및 전임상 진입 - 2023 임상 진입
경쟁제품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는 없음.
관련논문 등	작성기준일 현재 논문개재 또는 학회발표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시장규모	현재 치료제가 없는 시장으로서 시장규모는 특정하기 어려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2015년 기준 국내 28,865명)
기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책과제 선정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기타 연구개발 실적

(가)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1	전략적핵심소재기술 개발사업 (산업자원부)	150kPa 이상의 접착력을 갖는 조직접합치유 생체소재 개발	10년 (2016.03.01~ 2025.12.31)	5,800	하나제약은 핵심소재 연구 결과물의 수요기업으로서, 상품화된 조직접합제 제형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함 접착강도, 지혈시간, 생분해성 세포독성, 인장강도, 자극성 및 상처치유능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개발
2	안전기술선진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하고 유효한 나노기술 기반 DDS 개발	5년 (2016.06.16~ 2020.12.31)	4,700	나노제형의 개발에 관한 제조기술, 물성 및 안정성, 안전성 및 유효성, CMC 동향등을 분석하여 나노미셀, 단백질나노, 리포좀, 나노에멀젼 제제의 설계 및 제조법을 확립 본 연구의 결과로 확보된 원천기술은 제품개발에, CMC 기초자료는 향후 식약처 허가 심사시 활용

3	바이오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안전성이 향상된 고리형 가돌리늄 자기공명영상 T1 조영제 신약개발	5년 (2017.07.01~ 2022.06.30)	3,000	기존 선형 및 고리형 가돌리늄 조영제보다 높은 안전성과 기관 특이성을 가진 차세대 조영제 HNP-2006을 개발 국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best-in-class MRI 조영제 신약개발을 통해 국내 시판 조영제 제품들의 수입대체효과 및 해외시장 개척
4	중견기업글로벌도약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중등증 및 중증의 통증이 있는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옥시코돈/날록손 서방형 복합제의 국내 최초 제네릭 의약품 개발	5년 (2017.11.01~ 2022.10.01)	1,000	타진서방정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옥시코돈/날록손 서방형 정제의 국내 최초 제네릭 의약품 개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년 이내에 제제연구 및 임상연구를 완료하여, 2019년 국내 최초 제네릭 품목허가를 취득한 후 상용화기간 (2년)을 통해 매출목표액 달성
5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청)	모링가를 이용한 천연건강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소재 개발	2년 (2016.04.01~ 2018.03.31)	500	매우 높은 항산화 및 항균활성을 갖는 모링가 발효 추출물로 천연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소재 개발 및 제품화 핵심소재의 B2B 판매 및 제품개발
6	기초연구사업 (과학기술정통부)	생체활성지질 인터액토믹스 연구센터	7년 (2018.06.01~ 2025.02.28)	938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과 지방간 관련 신약후보물질 발굴 및 개발
7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 연구사업 (보건복지부)	혈관신생억제 효능의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 개발	3년 (2018.04.30~ 2020.12.31)	1,098	원도닌 유도체를 이용하여 경구 또는 점안용 당뇨성 망막병증 치료제 개발

(나) 연구개발을 통해 발매한 신제품 현황

최근 3사업년도 및 당해 사업년도 2분기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발매한 신제품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총 52개의 신제품을 발매하였으며, 당해 사업년도 2분기까지 8품목을 발매하였습니다.

년도	발매	제품명	성분.함량	분류	비고
2018년 상반기	2월	테노헤파정	Tenofovir disoproxil Hemiedisylate 295.69mg	항바이러스제	B형 간염 치료제 염변경
	2월	알리스핀정	Epinastine HCl 10mg	항알러지 약물	항히스타민제
	2월	레코푸시럽	Levodropropizine 6mg/mL	진해거담제	시럽 제형 추가
	3월	액티딘캡슐	Nizatidine 150mg	소화성 궤양용제	항궤양제 제품 라인 추가
	3월	글리트정	Choline Alfoserate 400mg	기타의 중추신경용제	신규제형 정제
	4월	덱시티드정	R-thioctic acid Tromethamine 480mg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치오티드HR정의 이성질체 신제품
	4월	징코엠정 40mg, 80mg	Ginko biloba Leaf Ext. 40mg, 80mg	혈액순환 개선제	은행엽엑스 생약제제
	5월	징코엠플러스	Cilostazol 100mg /	만성동맥	은행엽엑스 생약 + 화합

		정	Ginko biloba Leaf Ext. 80mg	폐색증 치료제	물 복합제

년도	발매	제품명	성분.함량	분류	비고
2017년	2월	클로베인듀오캡슐	Clopidogrel/Aspirin 75mg/100mg	동맥경화용제	심혈관계 복합제
	2월	몬테로정	Montelukast 10mg	항알러지 약물	위탁
	3월	덱스메딘주	Dexmedetomidine HCl 118㎍	최면진정제	자사 생산 품목
	7월	베시큐정	Solifenacin succinate 5, 10mg	배뇨장애 치료제	1st 제네릭 제품
	8월	프가틴캡슐	Pregabalin 75, 150mg	항경련제	위탁
	9월	에제티정	Ezetimibe 10mg	동맥경화용제	1st 제네릭 제품
	11월	에빅시아정	Memantine HCl 10mg	정신신경용제	알츠하이머치료제
	11월	오코돈주	Oxycodone HCl 10mg/ml	마약성진통제	1st 제네릭 제품
	11월	루마세이트주	Flumazenil 300㎍/3mL, 500㎍/5mL	벤조디아제핀계 열 역전제	마취제 역전제, 자사 생산 품목
	12월	랄록시 플러스정	Raloxifene HCl 60mg, Cholecalciferol 800IU	골다공증 치료제	복합제개량신약
	12월	타스린정	Bepotastine besilate 10mg	항히스타민제	자사 생산 및 자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
	12월	파록시주	Palonosetron HCl 0.056mg/ml	최토제, 진토제	오리지널품목알록시주에 특허무효소송,3심(대법원)최종무효승소

년도	발매	제품명	성분.함량	분류	비고
2016년	1월	발라디핀정	Amlodipine besylate / Valsartan 5/80, 5/160, 10/160mg	고혈압치료제	자사 생산 및 자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
	1월	아시크라정 375mg	Amoxicillin sodium 250mg / Potassium clavulanate 125mg	항생제	penicillin계 항생제 + β-Lactamase 저해제 복합제
	2월	아시크라네오시럽	Amoxicillin 54.545g / Potassium clavulanate 5.7mg/mL	항생제	소아용 penicillin계 항생제 + β-Lactamase 저해제 복합제
	2월	아네폴주사	Propofol 180mg/18mL	전신마취제	신규 용량 추가 품목
	3월	황몰핀주사 10mg/mL	Morphine sulfate 10mg/mL	마약성 진통제	신규 용량 추가 품목
	3월	트루윈정4mg	Silodosin 4mg	전립선 비대증	신규제형 정제
	3월	헵세비르정	Adefovir dipivoxil 10mg	항바이러스제	B형 간염 치료제
	4월	바다라제정	Streptodornase/Streptokinase 2500IU/10000IU	소염효소제	자사 생산 품목
	4월	엘테인캡슐	Erdosteine 300mg	거담제	자사 생산 품목
	5월	비스원정	RanitidineHCl/Sucralfate/TripotassiumBismuthDicitrate84/300/100mg	소화성궤양용제	소화기 3제 복합제
	5월	로스토린정	Ezetimibe/Rosuvastatin 5/10, 10/10, 20/10mg	고지혈증 치료제	고지혈증 복합제 개량신약
	6월	바이스틴정	Ezetimibe/Simvastatin 10/10,	고지혈증 치료제	고지혈증 복합제 1st 제

			10/20mg		네릭
	8월	리마론정	Limaprost alfadex 5mcg	혈관확장제	Prostaglandin 유도체
	8월	칼리딘정	Kallidinogenase 50IU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순환장애 치료용 효소제
	9월	알푸론정	Afloqualone 20mg	중추성 근이완제	근긴장 개선제
	10월	미뉴린정0.1, 0.2mg	Desmopressin acetate 100, 200mcg	뇌하수체 호르몬제	야뇨증치료제
	10월	오스톨플러스정	Risedronate sodium 2.5 hydrate/Cholecalciferol concentrated Gr.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복합제
	10월	페로민정	Pelargonium sidoides 11% ethanol extract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생약성분 제제
	10월	로카핀주	Ropivacaine HCl 150mg/20mL	국소마취제	신규 용량 추가 품목
	11월	오코돈정 10mg	Oxycodone HCl hydrate 10mg	마약성 진통제	신규 용량 추가 품목
	11월	히알원5주	Hyaluronate 25mg/2.5mL	관절염치료제	신규 용량 추가 품목
	11월	하니반주	Ibandronate 3mg	골다공증치료제	골다공증 주사제, 프리필드 제형
	12월	텔미디핀정 40/5, 40/10, 80/5mg	Telmisartan/Amlodipine besylate	혈압강하제	고혈압 복합제

년도	발매	제품명	성분.함량	분류	비고
2015년	1월	에페라정	Eperisone HCl 50mg	근이완제	자사 생산 및 자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
	1월	세비원정	Amlodipine(besylate)/Olmesartan5/20,5/40,10/40mg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복합제
	1월	로스토정	Rosuvastatin 5, 10, 20mg	고지혈증 치료제	자사 생산 및 자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
	2월	넥스파정	Esomeprazole 20, 40mg	소화성 궤양용제	수화물 변경 특허회피 제품
	6월	쎌비트캡슐	Celecoxib 200mg	소염진통제	1st 제네릭 제품
	6월	유앤비캡슐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 Ursodeoxycholic acid 12.5mg/50mg	간염치료제	간장질환 복합제
	7월	에스타렌정	Artemisia Herb. 60mg	소화성 궤양용제	1st 제네릭 제품, 생약 성분 제제
	8월	이베자정	Irbesartan 150mg, 300mg	고혈압 치료제	자사 생산 및 자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
	8월	이베자플러스정	Irbesartan/HCTZ 150/12.5mg, 300/12.5mg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복합제
	8월	텔미라정	Telmisartan 40mg, 80mg	고혈압 치료제	자사 생산 및 자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
	8월	텔미라플러스	Telmisartan/HCTZ 40/12.5mg,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복합제

		정	80/12.5mg		
	8월	글리트연질캡슐	Choline alfoscerate 400mg	뇌기능 개선제	뇌신경세포 기능 개선 연질캅셀제
	9월	노마로핀정	Amlodipine(besylate) / Losartan 5/50mg, 5/100mg	고혈압 치료제	고혈압 복합제
	10월	엔테카정	Entecavir 0.5/1mg	항바이러스제	B형 간염 치료제
	11월	록씨클정	Roxithromycin 150mg	항생제	Macrolides계 경구용 항생제
	11월	알렌드플러스디정	Alendronate(Sodium)/VitaminD3 70mg/5,600IU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복합제
	12월	치오티드에이취알정 600mg	Thioctic acid 600mg	당뇨병성 신경염	자사 생산 및 자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

(다) 연구개발을 통해 발매할 신제품 현황

① 연구개발 제네릭 신제품

①-1. 2018년 예상 신제품

발매 예정	제품명	성분.함량	분류	비고
8월	슈도스틴캡슐	Ebastine 10mg + Pseudoephedrine 120mg	항알러지 약물	항알러지 복합제 제네릭
9월	메가액트액	Citrulline maleate 1g	대사성 의약품	기능 무력증 보조 치료제
10월	베로판정	Pancreatine 175mg, Hemicellulase 50mg, Dimethicone 25mg	소화제(OTC)	처방용 소화제 신제품
10월	세니탈CR정	Aceclofenac 200mg	해열,진통,소염제	개량신약의 1st 제네릭, 1일 1회 제형
11월	두로케어정	Dutasteride 0.5mg	전립선비대증/탈모 치료	제형 개선 제네릭 (연질캡슐 → 정제)
12월	바독시정	Bazedoxifene Acetate 22.6mg	골다공증 치료제	1st 제네릭
12월	아시크라정 500mg	Amoxicillin 437.5mg / Potassium clavulanate 62.5mg	항생제	항생제 라인 추가
12월	세라프정 250mg	Cefuroxime axetil 250mg	항생제	항생제 라인 추가

①-2. 2019년 예상 신제품

발매	제품명	성분.함량	분류	비고

예정				
1분기	프롤로정 1mg, 2mg	Prucalopride succinate 1, 2mg	하제, 완장제	First 제네릭 변비 치료제
1분기	에스타렌 투엑스정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90mg	소화성 궤양용제	우판권으로 진행
1분기	파록시 프리필드주 (1.5mL, 5mL)	Palonosetron HCl 0.056mg/ml	항구토제	파록시주바이알제품에 프리필드실린지 추가
2분기	세비원HCT정 (3함량)	Amlodipine+Olmesartan+ Hydrochlorothiazide	혈압강하제	고혈압 3제 복합제 First 제네릭
2분기	앤코프로정	Theobromine 300mg	진해거담제	진해거담제 제네릭 캡슐을 정제로 발매
2분기	실로탄서방캡슐 100mg, 200mg	Cilostazol 100mg, 200mg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단일제 라인에 서방형 제품 확장
2분기	프레진정	Polaprezinc 75mg	소화성 궤양용제	우판권으로 진행
4분기	알리덤연질캡슐 10mg, 30mg	Alitretinoin 10mg, 30mg	습진치료제	First 제네릭 습진치료 연질캡슐제
4분기	사포란 SR정	Sarpogrelate 300mg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서방형 개량신약 제네릭
4분기	하나비모보정 (가칭)	Naproxen 500mg + Esomeprazole 20mg	NSAIDs	진통제+소화기계 복합제
12월	에페라SR정	Eperisone HCl 75mg	근이완제	서방형 개량신약 제네릭

② 연구개발 개량신약

년도	발매 예정	제품명	성분.함량	분류	비고
2018년	9월	텔미디핀알정 (4함량)	(Amlodipine+Telmisartan+ Rosuvastatin) 2함량	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고혈압 3제 복합 개량신약 (추가함량발매 2019년말)
	11월	챔스탑정 0.5mg, 1mg	Varenicline 0.5/1mg	금연치료의 보조요법	염변경 개량신약
	12월	바독시 플러스정	BazedoxifeneAcetate22.6mg+Cholecalciferol800IU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복합제 개량신약
2020년		하나젤잔즈정 (가칭)	Tofacitinib citrate 5mg	관절염치료제	경구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염변경 개량신약

11.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1) 특허권 및 실용신안

구 분	명 칭	출원/등록일	종료예정일
특허권 (한국)	서방성 고형 제제 및 그의 제조방법	출원: 2007.05.29 등록: 2009.04.09	2027.05.29
특허권 (한국)	서방성 고형 제제 및 그의 제조방법	출원: 2008.02.18 등록: 2011.12.08	2028.02.18
특허권 (한국)	서방성 고형 제제의 제조방법	출원: 2010.10.08 (분할출원) 등록: 2010.12.14	2030.10.08
특허권 (PCT)	Sustained release solid formulation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the same	출원: 2008.04.28	-
특허권 (미국)	Sustained release solid formulations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the same	출원: 2008.04.28 등록: 2015.02.15	2028.04.28
특허권 (한국)	수지재 앰플의 절단장치	출원: 2010.01.28 등록: 2012.01.18	2030.01.28
특허권 (한국)	수지재 앰플의 절단장치	출원: 2010.01.28 등록: 2012.01.18	2030.01.28
특허권 (한국)	N-5-(4-[4-메틸-피페라지노-메틸]-벤조일 아미도)-2-메틸페닐-4-[3-피리딜]-2-피리미딘-아민의 신규한 제조방법	출원: 2013.07.18 등록: 2015.10.02	2023.07.18
전용실시권	가돌리늄 착물을 함유하는 MRI 조영제	출원: 2010.09.30 등록: 2013.02.14	2030.09.30
전용실시권	DO3A-아미노메틸사이클로헥산 콘쥬게이트를 포함하는 가돌리늄 착물	출원: 2014.01.10 등록: 2016.03.09	2034.01.10

(2) 상표권

구 분	명 칭	출원/등록일	종료예정일	관련 제품기재
상표권	티그린 Tigrin	출원: 2000.05.18 등록: 2001.08.14	2021.08.14	티그린캡슐 (트리플루살)
상표권	카타스	출원: 2003.06.20 등록: 2004.09.01	2024.09.01	카타스정50mg (디클로페낙칼륨)
상표권	세니탈 Cenital	출원: 2004.03.30 등록: 2005.11.17	2025.11.17	세니탈정 (아세클로페낙)
상표권	바스캄 Vascam	출원: 2004.03.30 등록: 2005.05.23	2025.05.23	바스캄주(미다졸람) 바스캄주15mg
상표권	티파스 Tipas	출원: 2004.03.30 등록: 2005.07.11	2025.07.11	티파스정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상표권	아네폴 Anepol	출원: 2004.03.30 등록: 2005.05.23	2025.05.23	아네폴주사(프로포폴)

상표권	트라미펜 Tramiphen	출원: 2008.02.27 등록: 2009.04.21	2019.04.21	트라미펜정 트라미펜세미정
상표권	클로베인 Clovein	출원: 2008.04.08 등록: 2009.02.12	2019.02.12	클로베인정 클로베인듀오캡슐
상표권	트라씨알 Tra-CR	출원: 2008.04.08 등록: 2009.02.12	2019.02.12	트라씨알정 (트라마돌염산염)
상표권	뉴가바	출원: 2008.07.14 등록: 2009.12.07	2019.12.07	뉴가바캡슐100,300mg (가바펜틴)
상표권	타이리콜	출원: 2008.07.14 등록: 2009.07.02	2019.07.02	타이리콜이알정 (아세트아미노펜)
상표권	오코돈 Ocodone	출원: 2008.10.16 등록: 2009.02.12	2019.02.12	오코돈정,오코돈정10mg 오코돈서방정10,20,40mg 오코돈주사
상표권	덴티스타	출원: 2008.10.24 등록: 2009.12.14	2019.12.14	덴티스타캡슐 (독시사이클린)
상표권	딜리드 Dilid	출원: 2009.01.21 등록: 2010.03.23	2020.03.23	딜리드정2mg 딜리드주1,2mg (히드로모르폰염산염)
상표권	에스타렌 ESTAREN	출원: 2009.02.11 등록: 2010.08.25	2020.08.25	에스타렌정 (애엽에탄올연조엑스)
상표권	다이세린 Daicerin	출원: 2009.05.20 등록: 2010.07.20	2020.07.20	다이세린캡슐 (디아세레인)
상표권	텔미디핀	출원: 2015.03.24 등록: 2015.11.09	2025.11.09	텔미디핀정80/5,40/5 40/10mg
상표권	덱스메딘	출원: 2015.08.27 등록: 2016.04.26	2026.04.26	덱스메딘주 (덱스메데토미딘)
상표권	로스토린	출원: 2015.09.01 등록: 2016.04.26	2026.04.26	로스토린정10/5,10/10 10/20mg
상표권	덴티인	출원: 2017.01.09 등록: 2017.08.18	2027.08.18	제품개발중
상표권	하나제약주식회사 Hana Pharm.Co.,Ltd.	출원: 2010.04.30 등록: 2010.10.15	2020.10.15	-

나. 규제사항

[제약업계 통제 관련 법령 시행사항]

제 도	개 요	근거법안	시행일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금품,향응 등) 제공 적발시 제공하는 업체와 제공받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2010.11.28
리베이트 투아웃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적용을 정지하고, 위반횟수 및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2014.07.02

CP도입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 및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통하여 평가하는 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2016.06.01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의약품공급자는 판매자에게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산매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는 제도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운영 등)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2016.07.01부터 익일보고 시행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제도	약사법 제 47조의2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2018.01.01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현황 등을 보고하는 제도	마약류 관리법 제1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동법 제11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2018.05.18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구 분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유동자산]	79,398	60,476
당좌자산	60,128	42,449
재고자산	19,270	18,027
[비유동자산]	62,153	54,117
투자자산	9,197	614
유형자산	46,653	49,664
무형자산	3,384	1,986
기타비유동자산	2,919	1,853
자산총계	141,551	114,593
유동부채	48,713	34,095
비유동부채	11,540	25,013
부채총계	60,253	59,108
외부주주지분	358	-
자본금	6,059	4,872
연결자본잉여금	3,200	2,495
연결자본조정	-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74	2,160
연결이익잉여금	69,507	45,958
자본총계	81,298	55,485

매출액	139,331	124,535
매출원가	44,954	40,623
매출총이익	94,378	83,912
판매비와 관리비	62,448	60,242
영업이익	31,930	23,67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0,961	21,950
중단사업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24,302	17,431
(비지배지분순이익)	(2)	-
기타포괄손익	282	2,463
총포괄이익	24,584	19,894
(비지배지분포괄이익)	(2)	-
주당순이익(원)	2,243	2,248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구분	18연도 (제41기 반기)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15연도 (제38기)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GAAP
[자산총계]	141,982	141,198	114,592	92,255
유동자산	73,414	78,205	60,476	50,208
비유동자산	68,568	62,993	54,116	42,047
[부채총계]	52,608	60,253	59,108	59,984
유동부채	41,448	48,713	34,095	29,937
비유동부채	11,160	11,540	25,013	30,047
[자본총계]	89,374	80,945	55,485	32,271
자본금	6,059	6,059	4,872	3,706
자본잉여금	3,200	3,200	2,495	1,800
자본조정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42	2,174	2,160	6,650
이익잉여금	77,973	69,511	45,958	20,116
매출액	74,310	139,331	124,535	108,942
매출원가	24,188	44,954	40,623	37,453
매출총이익	50,122	94,378	83,912	71,489
판매비와 관리비	34,361	62,440	60,242	56,048
영업이익	15,761	31,937	23,671	15,44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4,188	30,968	21,950	12,131
중단사업손익	-	-	-	-
당기순이익	11,439	24,310	17,431	4,911
주당순이익(원)	944	2,243	2,248	930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0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39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38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제약 주식회사와 그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15연도 (제38기)
자 산			
Ⅰ.유동자산	79,398,183,027	60,475,843,095	52,989,371,470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1,705	1,388,812,847	568,072,28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3,635	38,620,814,828	34,805,979,528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7,982	1,781,812,953	3,145,408,536
기타유동자산	578,119,382	657,768,037	84,118,996
재고자산	19,269,934,433	18,026,634,430	14,385,792,123
당기법인세자산	65,890	-	-
Ⅱ.비유동자산	62,152,590,496	54,116,495,241	44,450,530,413
매도가능금융자산	986,561,645	613,529,300	367,691,571
유형자산	46,653,103,569	49,663,626,628	40,608,548,140
무형자산	3,383,740,399	1,986,242,271	2,167,318,691
투자부동산	8,210,00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6,883	1,853,097,042	1,306,972,011
기타비유동자산	1,459,228,000	-	-
자 산 총 계	141,550,773,523	114,592,338,336	97,439,901,883
부 채			
Ⅰ.유동부채	48,712,869,792	34,095,106,121	34,065,873,9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858,457,362	16,648,698,401	12,222,863,773
단기차입금	1,729,557,703	1,750,708,020	7,690,993,301
유동성장기차입금	21,101,700,000	8,028,320,000	5,191,32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61,392,807	100,853,236	85,244,163
기타유동부채	2,736,010,518	2,400,068,397	2,430,355,868
유동성반품충당부채	1,488,338,885	1,614,345,426	1,483,361,224
당기법인세부채	4,737,412,517	3,552,112,641	4,961,735,651
Ⅱ.비유동부채	11,540,376,656	25,012,615,068	29,645,396,924
장기차입금	6,214,170,000	21,154,550,000	26,389,270,000

종업원급여부채	2,714,757,023	2,266,072,395	1,868,536,130
기타비유동부채	128,560,812	127,755,393	108,516,932
비유동반품충당부채	1,269,781,387	-	-
이연법인세부채	1,213,107,434	1,464,237,280	1,279,073,862
부 채 총 계	60,253,246,448	59,107,721,189	63,711,270,904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0,939,678,909	55,484,617,147	33,728,630,979
자본금	6,059,270,000	4,872,438,500	3,705,500,000
자본잉여금	3,199,977,442	2,494,962,340	1,800,225,6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74,023,405	2,159,567,955	11,456,365
이익잉여금	69,506,408,062	45,957,648,352	28,211,448,974
비지배지분	357,848,166	-	-
자 본 총 계	81,297,527,075	55,484,617,147	33,728,630,979
부채와자본총계	141,550,773,523	114,592,338,336	97,439,901,883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9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하나제약 주식회사와 그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I. 매출액	139,331,265,576	124,534,998,807
II. 매출원가	44,953,699,223	40,622,785,477
III. 매출총이익	94,377,566,353	83,912,213,330
IV. 판매비와관리비	62,447,923,774	60,241,534,727
V. 영업이익	31,929,642,579	23,670,678,603
VI. 영업외손익	(968,801,690)	(1,720,249,605)
1. 기타수익	267,732,769	6,243,425
2. 기타비용	357,656,662	300,457,591
3. 금융수익	202,922,792	209,259,038
4. 금융원가	1,081,800,589	1,635,294,477
V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960,840,889	21,950,428,998
VIII. 법인세비용	6,658,354,972	4,519,580,596
IX. 당기순이익	24,302,485,917	17,430,848,402
X. 기타포괄손익	281,789,494	2,463,462,566
1.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67,334,044	315,350,976

재평가잉여금	-	2,141,741,243
2. 후속적으로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4,455,450	6,370,347
XI. 총포괄이익	24,584,275,411	19,894,310,968
XII. 당기순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24,304,637,751	17,430,848,402
2. 비지배지분	(2,151,834)	-
XIII. 총포괄이익의 귀속		
1.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24,586,427,245	19,894,310,968
2. 비지배지분	(2,151,834)	-
XIV. 기본주당이익	2,243	2,248

다.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9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하나제약 주식회사와 그외 종속회사 (단위 : 원)

구분		자본금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소수 주주지분	총계
39기	2016. 01 .01.	3,705,500,000	1,800,225,640	11,456,365	28,211,448,974	-	33,728,630,979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17,430,848,402	-	17,430,848,40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15,350,976	-	315,350,97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6,370,347	-	-	6,370,347
	재평가잉여금	-	-	2,141,741,243	-	-	2,141,741,24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유상증자	1,166,938,500	694,736,700	-	-	-	1,861,675,200
	2016. 12. 31.	4,872,438,500	2,494,962,340	2,159,567,955	45,957,648,352	-	55,484,617,147
40기	2017. 01. 01	4,872,438,500	2,494,962,340	2,159,567,955	45,957,648,352	-	55,484,617,147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24,304,637,751	(2,151,834)	24,302,485,91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267,334,044	-	267,334,044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	-	-	14,455,450	-	-	14,455,45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사업결합	-	-	-	-	360,000,000	360,000,000
	유상증자	1,186,831,500	705,015,102	-	-	-	1,891,846,602
	연차배당	-	-	-	(1,023,212,085)	-	(1,023,212,085)
	2017. 12. 31.	6,059,270,000	3,199,977,442	2,174,023,405	69,506,408,062	357,848,166	81,297,527,075

라.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9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하나제약 주식회사와 그외 종속회사 (단위 : 원)

과 목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380,166,498	12,463,934,804
1. 당기순이익	24,302,485,917	17,430,848,402
2. 비현금항목의 조정	11,557,815,286	10,878,318,149
3. 운전자본의 조정	(3,655,210,248)	(8,005,102,36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737,244,125)	(9,189,777,060)
미수금의 감소(증가)	(723,892,652)	1,005,362,725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019,539	(2,536,822)
선급금의 감소(증가)	(507,277,734)	(571,112,21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243,300,003)	(3,640,842,30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44,719,546	574,967,161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21,200,803)	3,836,424,600
선수금의 증가(감소)	17,067,445	10,512,796
예수금의 증가(감소)	78,235,614	67,573,403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93,150)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240,639,062	(108,373,670)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6,966,054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143,774,846	130,984,202
퇴직금의 지급	(291,906,900)	(456,741,880)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106,283,013	338,456,702
4. 법인세의 지급	(5,814,215,288)	(6,530,528,238)
5. 이자의 지급	(1,083,349,535)	(1,426,333,890)
6. 이자의 수취	72,640,366	116,732,75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818,201,685)	(9,309,544,284)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920,000,000	7,08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720,000,000
기계장치의 처분	60,000,000	-
차량운반구의 처분	14,300,000	33,700,000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28,260,000	-
회원권의 처분	630,909,090	166,841,300
보증금의 감소	109,763,128	109,038,89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910,000,000)	(5,382,000,000)
토지의 취득	-	(1,467,565,340)
건물의 취득	(50,000,000)	(5,626,399,916)
구축물의 취득	-	(129,000,000)
기계장치의 취득	(737,956,403)	(1,451,928,999)
기타의유형자산의 취득	(565,709,915)	(466,237,754)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629,545,978)	(636,836,557)
투자부동산의 취득	(8,210,000,000)	-
회원권의 취득	(1,859,128,617)	(218,756,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498,133,159)	(2,218,154,77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53,961,831)	(237,433,577)
사업결합으로인한 순현금흐름	360,000,000	-
보증금의 증가	(126,998,000)	(584,811,560)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010,545,955)	(2,333,649,96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5,877,516	3,397,575,159
장기차입금의 차입	500,000,000	4,000,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220,421,418	531,286,308
유상증자	1,891,846,602	1,861,675,2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018,863,407)	(5,214,418,78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2,367,000,000)	(1,857,08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	(4,540,640,000)
예수보증금의 감소	(219,615,999)	(512,047,847)
배당금의 지급	(1,023,212,085)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1,551,418,858	820,740,560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88,812,847	568,072,287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1,705	1,388,812,847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40(당)기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기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 39(전)기 기초 2016년 01월 01일 현재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하나제약 주식회사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하나제약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여197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와 발안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50백만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6,059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조동훈 외 특수관계인	9,445,152주	77.94%
기획재정부	492,454주	4.06%
기타	2,180,934주	18.00%
합계	12,118,540주	100.00%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개요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당기말		회사개요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하나바이오㈜(*)	대한민국	12월	70%	840,000	의약품 제조업 外

(*) 하나바이오㈜는 2017년 3월 자본금 1,200,000천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하나바이오㈜	1,192,827	-	-	-	-	(7,173)	(7,173)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6년 1월 1일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18년 3월 3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9: 반품충당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9: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32: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주석 35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7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 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는 주석 3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

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

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연결실체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재고는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

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30년 - 40년
구축물	5년
기계장치	5년
집기비품	5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와기구	5년

연셜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개발비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

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의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의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의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의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의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4) 외화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 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 제외)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금융상품의 외화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이익, 금융상품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익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금융상품의 외화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 금융상품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기업회계 기

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실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1)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61,010,021천원, 매도가능금융자산 986,562천원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61,010,021천원을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위 금융자산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실체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948,533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성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 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38,029천원 입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및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영향평가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①-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없음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더라도 해당 금융부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①-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 단계로 구분하여 12 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한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 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하여 예비영향평가를 한 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인식의 정도, 수익인식의 여부 및 수익인식의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할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비교기간에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 위하여 2017년 중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평가 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②-1. 수행의무의 식별 및 거래가격 배분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계약에서 ① 제품 판매, ② 운송서비스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결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2.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고 있으며, 매출할인 등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바,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중 변동대가 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또는 매출할인을 지급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 또는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의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수익에 중대한 변동은 없으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04호'약정에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동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로서 동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소급 적용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하나의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으로 인해, 정액으로 인식되던 운용리스료가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으로 바뀌면서 리스와 관련된 비용의 성격이 변하게 될 것이며, 금융리스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관련 준비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 적용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 분석을 2018년 회계연도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4. 영업부문

(1) 영업부문의 식별

연결실체는 기업 전체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단일 영업부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부문의 선택이나 영업부문의 보고부문으로의 통합과정없이 영업부문과 보고부문이 일치합니다.

(2) 지역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 중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지 역	당기	전기
국 내	139,019,379	124,105,568
해 외	311,887	429,431
합 계	139,331,266	124,534,999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역별 비유동자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 역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국 내	58,246,844	51,649,869	42,775,867

상기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 중 외부고객으로 부터 매출이 연결실체 총 매출액의 10% 이상인 주요고객은 없습니다.

5. 금융상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	-	12,940,2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4	-	-	43,031,154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8	-	-	3,578,678
매도가능금융자산	-	986,562	-	986,5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7	-	-	1,459,957
합계	61,010,021	986,562	-	61,996,583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6,858,457	16,858,457
단기차입금	-	-	1,729,558	1,729,558
유동성장기차입금	-	-	21,101,700	21,101,700
기타유동금융부채	-	-	61,393	61,393
장기차입금	-	-	6,214,170	6,214,170
합계	-	-	45,965,278	45,965,278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388,813	-	-	1,388,81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620,815	-	-	38,620,815
기타유동금융자산	1,781,813	-	-	1,781,813
매도가능금융자산	-	613,529	-	613,52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853,097	-	-	1,853,097
합계	43,644,538	613,529	-	44,258,067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6,648,698	16,648,698
단기차입금	-	-	1,750,708	1,750,708
유동성장기차입금	-	-	8,028,320	8,028,320
기타유동금융부채	-	-	100,853	100,853
장기차입금	-	-	21,154,550	21,154,550
합계	-	-	47,683,129	47,683,129

③ 전기초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68,072	-	-	568,07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805,980	-	-	34,805,980
기타유동금융자산	3,145,409	-	-	3,145,409
매도가능금융자산	-	367,692	-	367,69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06,972	-	-	1,306,972
합계	39,826,433	367,692	-	40,194,125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2,222,864	12,222,864
단기차입금	-	-	7,690,993	7,690,993
유동성장기차입금	-	-	5,191,320	5,191,320
기타유동금융부채	-	-	85,244	85,244
장기차입금	-	-	26,389,270	26,389,270
	-	-	51,579,691	51,579,691

(2) 당기와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89,505	-	-	89,505
이자비용	-	-	(1,043,889)	(1,043,889)
외화환산이익	-	-	21,924	21,924
외환차익	3,946	-	87,548	91,494
외환차손	(10,168)	-	(27,744)	(37,912)
대손충당금환입	389,202	-	-	389,202
기타의대손상각비	(118,508)	-	-	(118,508)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세후)	-	14,455	-	14,455
합계	353,977	14,455	(962,161)	(593,729)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81,137	-	-	81,137
이자비용	(39,367)	-	(1,441,942)	(1,481,309)
외화환산이익	5,296	-	-	5,296
외화환산손실	-	-	(24,733)	(24,733)
외환차익	7,090	-	115,736	122,826
외환차손	(12,824)	-	(116,428)	(129,252)
대손상각비	(201,776)	-	-	(201,776)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세후)	-	6,370	-	6,370
합계	(160,444)	6,370	(1,467,367)	(1,621,441)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1)	948,533	948,53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2)		
-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12,940,23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4	43,031,154
-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8	3,578,67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7	1,459,957
소계	61,010,021	61,010,021
금융자산 합계	61,958,554	61,958,55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858,457	16,858,457
- 단기차입금	1,729,558	1,729,558
- 유동성장기차입금	21,101,700	21,101,700
- 기타유동금융부채	61,393	61,393
- 장기차입금	6,214,170	6,214,170
금융부채 합계	45,965,278	45,965,278

(*1)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 등으로 측정한 금액

(38,029천원)은 상기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근사치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1)	575,500	575,500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2)		
- 현금및현금성자산	1,388,813	1,388,81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8,620,815	38,620,815
- 기타유동금융자산	1,781,813	1,781,81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853,097	1,853,097
소계	43,644,538	43,644,538
금융자산 합계	44,220,038	44,220,038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648,698	16,648,698
- 단기차입금	1,750,708	1,750,708
- 유동성장기차입금	8,028,320	8,028,320
- 기타유동금융부채	100,853	100,853
- 장기차입금	21,154,550	21,154,550
금융부채 합계	47,683,129	47,683,129

(*1)매도가능금융자산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 등으로 측정한 금액
(38,029천원)은 상기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근사치입니다.

③ 전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1)	329,663	329,66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2)		
- 현금및현금성자산	568,072	568,07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805,980	34,805,980
- 기타유동금융자산	3,145,409	3,145,40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06,972	1,306,972
소계	39,826,433	39,826,433
금융자산 합계	40,156,096	40,156,096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222,864	12,222,864
- 단기차입금	7,690,993	7,690,993
- 유동성장기차입금	5,191,320	5,191,320
- 기타유동금융부채	85,244	85,244
- 장기차입금	26,389,270	26,389,270
금융부채 합계	51,579,691	51,579,691

(*1)매도가능금융자산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 등으로 측정한 금액(38,029천원)은 상기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근사치입니다.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매도가능금융자산	-	948,533	-	-

연결실체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수준2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

됩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저축보험): 저축보험으로 공시이율 등을 근거로 측정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5)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말	2016년말	2016년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1,387,667	567,79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4	38,620,815	34,805,980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8	1,781,813	3,145,40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7	1,853,097	1,306,972
합계	61,010,021	43,643,392	39,826,153

(*) 보유한 현금시재는 제외하였습니다.

신용위험은 전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금융상품의 상계
상계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없으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보유현금	500	1,146	281
원화예금	12,939,732	1,387,667	567,792
합 계	12,940,232	1,388,813	568,073

7. 사용제한금융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은행명	사용제한내용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IBK기업은행	타점권	42,712	155,374	-
단기금융상품	KEB하나은행	차입금담보	-	-	900,000
장기금융상품	우리은행	차입금담보	-	180,000	60,000
	IBK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3,000	3,000	3,000
합계			45,712	338,374	963,000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매출채권	37,974,777	35,266,873	30,292,821
대손충당금	(449,805)	(868,347)	(714,493)
미수금	5,506,182	4,222,289	5,227,652
합 계	43,031,154	38,620,815	34,805,980

(2)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868,347	714,493
대손상각비(환입)	(389,202)	201,776
제각	(29,340)	(47,922)
기말금액	449,805	868,347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발생일 기준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3개월 이내	41,107,012	129,758	38,241,858	228,641
6개월 이내	1,737,773	4,890	532,653	48,223
9개월 이내	198,345	19,235	166,266	83,187
12개월 이내	83,421	13,339	133,632	93,543
12개월 초과	354,408	282,583	414,753	414,753

합계	43,480,959	449,805	39,489,162	868,347

연결실체는 매출채권과 회수 관련하여 현금, 어음, 채권, 보증보험, 근저당 등을 담보설정하고 있습니다.

(4) 연결실체는 양도 또는 할인한 매출채권이 금융상품의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장부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으로 계속인식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자산의 장부금액	-	-	4,128,436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	(4,128,436)
양도자산에 한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			
자산의 공정가치	-	-	4,128,436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	-	(4,128,436)
순포지션	-	-	-

9.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단기금융상품	3,550,000	-	1,770,000	-	3,098,000	-
장기금융상품	-	246,375	-	538,242	-	410,087
보증금	-	1,213,582	-	1,314,855	-	896,885
미수수익	28,678	-	11,813	-	47,409	-
합 계	3,578,678	1,459,957	1,781,813	1,853,097	3,145,409	1,306,972

10. 기타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유동	비유동	유동	유동
선급금	545,657	-	623,379	52,267
선급비용	32,369	-	34,389	31,852
부가세대급금	93	-	-	-
장기선급금(*)	-	1,459,228	-	-
합 계	578,119	1,459,228	657,768	84,119

(*)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으로부터 계정대체 되었습니다.

11.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8,878,191	(384,294)	8,493,897	9,816,039	(591,570)	9,224,469	7,548,291	(441,241)	7,107,050
상품	263,478	(920)	262,558	146,707	(3,209)	143,498	206,797	(58,655)	148,142
재공품	6,817,107	(311,135)	6,505,972	5,776,449	(633,513)	5,142,936	5,001,636	(661,548)	4,340,088
원재료	3,368,498	(137,052)	3,231,446	3,040,058	(235,120)	2,804,938	2,011,408	(147,637)	1,863,771
부재료	335,535	(11,131)	324,404	303,632	(20,060)	283,572	290,970	(18,958)	272,012
저장품	494,683	(43,026)	451,657	351,330	(6,967)	344,363	280,773	(6,911)	273,862
미착품	-	-	-	82,858	-	82,858	380,867	-	380,867
합 계	20,157,492	(887,558)	19,269,934	19,517,073	(1,490,439)	18,026,634	15,720,742	(1,334,950)	14,385,792

연결실체는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887,558천원 및 1,490,439천원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12. 매도가능금융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취득원가	장부금액	취득원가	장부금액	취득원가	장부금액
<지분증권>						
한국제약협동조합	38,029	38,029	38,029	38,029	38,029	38,029
<채무증권>						
흥국 저축보험	408,468	449,230	272,004	300,088	154,561	177,949
롯데 저축보험	359,971	364,060	279,977	275,412	159,987	151,714
삼성 저축보험	137,506	135,243	-	-	-	-
소계	905,945	948,533	551,981	575,500	314,548	329,663
합계	943,974	986,562	590,010	613,529	352,577	367,692

(2) 당기와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613,529	367,692
취득금액	353,962	237,433
평가손익	19,071	8,404

기말금액	986,562	613,529

13.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1)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합 계
기초장부가액	15,936,934	24,574,511	122,761	5,095,888	2,231,065	1,702,468	49,663,627
취득	-	50,000	-	737,956	629,546	565,710	1,983,212
감가상각비	-	(796,701)	(26,004)	(1,851,697)	-	(838,862)	(3,513,264)
처분	-	-	-	(3)	(28,260)	(17,980)	(46,243)
대체(*2)	-	-	-	640,446	(2,272,942)	198,268	(1,434,228)
기말장부가액	15,936,934	23,827,810	96,757	4,622,590	559,409	1,609,604	46,653,104
취득원가	15,936,934	31,286,583	459,203	27,690,327	559,409	9,515,600	85,448,056
감가상각누계액	-	(7,458,773)	(362,446)	(23,067,737)	-	(7,905,996)	(38,794,952)

(*1)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말 장부금액은 재평가차액 2,825,51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장기선급금으로 대체된 1,459,228천원 및 선급금으로부터 대체된 25,000천원이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합 계
기초장부가액	11,643,852	19,640,117	27,498	5,250,548	1,975,274	2,071,260	40,608,549
취득	1,467,566	5,626,400	129,000	1,451,928	636,837	466,237	9,777,968
감가상각비	-	(708,806)	(33,737)	(1,970,834)	-	(789,192)	(3,502,569)
처분	-	-	-	-	-	(45,837)	(45,837)
대체	-	16,800	-	364,246	(381,046)	-	-
기타(재평가)	2,825,516	-	-	-	-	-	2,825,516
기말장부가액	15,936,934	24,574,511	122,761	5,095,888	2,231,065	1,702,468	49,663,627
취득원가	15,936,934	31,236,583	459,203	26,893,703	2,231,065	8,854,918	85,612,406
감가상각누계액	-	(6,662,072)	(336,442)	(21,797,815)	-	(7,152,450)	(35,948,779)

(2) 토지에대한 재평가의 적용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한 후속측정을 재평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평가금액은재평가일의 공정가치입니다. 2016년말 재평가한 토지의 공정가치는 연결실체와 독립적이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 2017년 3월 20일에 평가한 것을 근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은 2,825,516천원이며 법인세 효과 683,775천원을 제외한 2,141,741천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재평가된 토지가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13,111,418천원입니다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종류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유형자산	토지	15,936,934	49,988,000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외
	건물	23,827,810			
	기계장치	4,622,590			
합계		44,387,334	49,988,000		

14. 무형자산

당기와 전기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개발비	회원권	합 계	개발비	회원권	합 계
기초장부가액	8,410	1,977,832	1,986,242	183,768	1,983,551	2,167,319
취득	-	1,859,129	1,859,129	-	218,756	218,756
상각	(8,410)	-	(8,410)	(175,358)	-	(175,358)
손상	-	-	-	-	(108,475)	(108,475)
처분	-	(453,221)	(453,221)	-	(116,000)	(116,000)
기말장부가액	-	3,383,740	3,383,740	8,410	1,977,832	1,986,242

연결실체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습니다. 당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으며 전기 중 108,475천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회원권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순공정가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순공정가치 및 사용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였습니다.

15. 투자부동산

전기 중 연결실체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없으며 당기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기말
건설중인자산	-	8,210,000	8,210,000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으로 당기 중 관련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투자부동산은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으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전까지 공

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16. 차입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4.13%	1,000,000	1,000,000	1,050,000
	유산스차입금		127,132 (EUR 99,380)	586,835 (EUR 462,950)	373,910 (EUR 291,996)
			102,426 (USD 95,600)	163,873 (USD 135,600)	138,648 (USD 118,300)
	어음할인		-	-	3,943,365
신한은행	기업일반자금	3.81%	-	-	2,000,000
KEB하나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2.95%	500,000	-	-
	어음할인		-	-	185,070
합 계			1,729,558	1,750,708	7,690,993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3.37%	10,705,000	11,727,670	-
	중소기업시설자금	1%~4.14%	10,406,870	9,510,200	27,635,590
	온랜딩대출	2.14%	1,000,000	1,000,000	-
KEB하나은행	온랜딩대출	-	-	900,000	900,000
	기업시설대출	3.39%	1,000,000	1,000,000	-
우리은행	정책공사간접대출	2.95%	500,000	1,000,000	1,000,000
신한은행	온랜딩대출	2.76%	2,000,000	2,000,000	-
한국산업은행	산업시설대출	3.27~3.70%	1,704,000	2,045,000	2,045,000
장기차입금 합계			27,315,870	29,182,870	31,580,590
유동성대체			(21,101,700)	(8,028,320)	(5,191,320)
합 계			6,214,170	21,154,550	26,389,270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유동	유동	유동
매입채무	7,351,884	6,920,925	6,331,515

미지급금	9,506,573	9,727,774	5,891,349
합 계	16,858,457	16,648,699	12,222,864

18.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유동	유동	유동
미지급비용	61,393	100,853	85,244

19. 반품충당부채

당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장부금액	1,614,345	1,483,361
당기전입액	2,758,120	1,614,345
당기사용액	(1,614,345)	(1,483,361)
기말장부금액	2,758,120	1,614,345
유동항목	1,488,339	1,614,345
비유동항목	1,269,781	-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품충당부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거의 반품 발생 경험률 등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추정액을 반품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 기타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예수금	321,570	-	243,335	-	175,761	-
부가세예수금	2,241,838	-	2,001,199	-	2,109,573	-
선수금	172,603	-	155,535	-	145,022	-
예수보증금	-	128,561	-	127,755	-	108,517
합 계	2,736,011	128,561	2,400,069	127,755	2,430,356	108,517

21.납입자본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주	20,000,000주	2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수	12,118,540주	9,744,877주	7,411,000주
자본금	6,059,270,000원	4,872,438,500원	3,705,500,000원

(*) 지배기업은 당기 중 2,373,663주를 주당 800원에 유상증자하여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각각 1,186,832천원 및 705,015천원 증가하였으며, 전기 중 2,333,877주를 주당 800원에 유상증자하여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각각 1,166,939천원및 694,73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주식발행초과금	3,199,977	2,494,962	1,800,226

22.이익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813,285	710,964	710,964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211,561	211,561	211,561
	연구및인력준비개발금	1,733,334	3,871,585	6,133,170
미처분이익잉여금		66,748,228	41,163,538	21,155,754
합 계		69,506,408	45,957,648	28,211,449

(*) 상법상 연결실체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배당금

(1) 당기와 전기 중 지배기업의 배당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배당받을 주식수	12,118,540주	9,744,877주
주당액면금액	500	500

주당배당금	248	105
액면배당률	49.6%	21.0%
배당금액	3,005,397,920	1,023,212,000

(2) 지배기업의 당기와 전기 배당성향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배당액	3,005,340	1,023,212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24,304,637	17,430,848
배당성향	12.37%	5.87%

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재평가적립금	2,141,741	2,141,74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32,282	17,827	11,456
합 계	2,174,023	2,159,568	11,456

25. 매출액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제품매출	137,577,222	123,033,597
상품매출	1,754,044	1,501,402
합 계	139,331,266	124,534,999

26. 매출원가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1)제품매출원가	44,528,708	40,245,735
기초재고	9,224,469	7,107,049
당기제품제조원가	43,913,468	42,394,713
타계정대체	(115,332)	(31,558)
기말재고	(8,493,897)	(9,224,469)
(2)상품매출원가	424,991	377,051
기초재고	143,498	148,143
당기매입	545,751	374,273
타계정대체	(1,700)	(1,867)
기말재고	(262,558)	(143,498)
합 계	44,953,699	40,622,786

27.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28,083,941	26,312,738
퇴직급여	1,856,827	1,788,259
복리후생비	6,192,519	6,037,152
여비교통비	6,459,919	5,639,078
통신비	239,102	306,736
수도광열비	15,027	16,312
수선비	90,779	72,544
보험료	2,216,202	1,842,486
접대비	2,366,799	2,275,939
회의비	2,578,873	2,486,728
광고선전비	424,058	344,509
도서인쇄비	152,280	116,671
운반비	504,836	469,799
소모품비	1,160,065	1,057,108
세금과 공과	137,993	143,577
임차료 및 관리비	933,342	874,095
감가상각비	854,204	481,447
지급수수료	2,933,376	2,876,384
교육훈련비	699,539	651,167
차량유지비	283,566	163,360
대손상각비(환입)	(389,202)	201,776
수출경비	15,997	19,214
경상시험연구비	700,626	1,985,195
무형자산상각비	8,410	175,358
반품비용	-	130,984
경상개발비	417,393	392,143
해외시장개척비	231,025	161,358
사무용품비	18,145	13,798
연구개발비	775,324	747,211
원료개발비	321,147	299,030
학술활동비	449,913	435,454
시장조사비	512,829	494,153
판매촉진비	1,203,070	1,229,772
합 계	62,447,924	60,241,535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원재료 및 상품 등의 매입액	14,055,565	15,117,205
재고자산의 변동	(1,243,300)	(3,640,842)
종업원급여	37,007,645	35,782,869
여비교통비	7,026,568	6,076,453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3,523,445	3,677,927
소모품비	2,731,505	2,172,105
지급수수료	3,789,627	3,672,426
경상시험연구비	2,137,383	1,985,195
외주가공비	11,475,737	11,106,180
기타비용	26,897,448	24,914,802
합 계(*)	107,401,623	100,864,320

(*)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9. 종업원급여

(1) 당기와 전기 중 종업원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급여(*)	34,523,722	33,382,530
퇴직급여	2,483,923	2,400,339
확정급여형	950,026	931,852
확정기여형	1,533,897	1,468,487
합 계	37,007,645	35,782,869

(*) 당기 급여에는 장기종업원급여 36,96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종업원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확정급여부채	2,677,791	2,266,072	1,868,536
장기종업원급여	36,966	-	-
합 계	2,714,757	2,266,072	1,868,536

(3) 보고기간일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급여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957,761	3,652,260	3,574,71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79,970)	(1,386,188)	(1,706,180)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2,677,791	2,266,072	1,868,536

② 확정급여부채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순확정급여부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금액	3,652,260	3,574,716	(1,386,188)	(1,706,180)	2,266,072	1,868,536
당기비용으로 인식(*):						
- 당기근무원가	886,015	875,036	-	-	886,015	875,036
- 이자원가(수익)	92,127	92,110	(28,116)	(35,294)	64,011	56,816
소 계	978,142	967,146	(28,116)	(35,294)	950,026	931,85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경험조정	(328,484)	(424,287)	-	-	(328,484)	(424,287)
- 재무적 가정변화에 의한 효과	(52,250)	(8,573)	-	-	(52,250)	(8,573)
- 인구통계적 가정변화에 의한 효과	-	-	-	-	-	-
- 사외적립자산의수익	-	-	28,051	16,829	28,051	16,829
소 계	(380,734)	(432,860)	28,051	16,829	(352,683)	(416,031)
기타:						
- 퇴직급여 지급액	(291,907)	(456,742)	106,283	338,457	(185,624)	(118,285)
- 국민연금전환금 정산	-	-	-	-	-	-
소 계	(291,907)	(456,742)	106,283	338,457	(185,624)	(118,285)
기말금액	3,957,761	3,652,260	(1,279,970)	(1,386,188)	2,677,791	2,266,072

③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정기예금	1,278,813	1,385,031	1,705,023
국민연금전환금	1,157	1,157	1,157
합계	1,279,970	1,386,188	1,706,180

④ 보험수리적가정

구분	당기	전기
할인율	2.54%	2.03%
임금상승률	3.27%	3.07%

⑤ 민감도 분석

보고기간말 현재 유의적인 각각의 보험수리적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한다면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1% 증가시	1% 감소시	1% 증가시	1% 감소시
할인율	(146,685)	161,384	(146,767)	161,396
임금상승률	162,380	(150,279)	161,845	(149,909)

⑥ 확정급여채무의 만기에 대한 정보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액의 만기구성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6년미만	6년이상
지급액	662,122	992,820	934,514	1,368,305

연결실체의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4.35년이며, 예상 퇴직급여의 지급액은 추정값으로 실제 발생할 퇴직급여 지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 기타수익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64,498	1,499
무형자산처분이익	198,864	2,182
잡이익	4,371	2,563
합 계	267,733	6,244
기타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8,181	13,636
무형자산처분손실	21,175	9,143
기부금	208,662	168,425
잡손실	1,131	779
무형자산손상차손	-	108,475
기타의대손상각비	118,508	-
합 계	357,657	300,458

31.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89,505	81,137
외환차익	91,494	122,826
외화환산이익	21,924	5,296
금융수익 소계	202,923	209,259
금융원가		
이자비용	1,043,889	1,481,309
외환차손	37,912	129,252
외화환산손실	-	24,733
금융원가 소계	1,081,801	1,635,294

32. 법인세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7,446,792	5,116,546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447,343)	4,359
소계	6,999,449	5,120,905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251,130)	185,164
자본에 직접반영된 법인세비용	(89,964)	(786,488)
소계	(341,094)	(601,324)
법인세비용	6,658,355	4,519,581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연법인세:		
재평가잉여금	-	(683,77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615)	(2,034)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5,349)	(100,679)
합계	(89,964)	(786,488)

(3)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960,841	21,950,429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7,031,470	4,850,004
조정사항		
- 비공제비용 등	714,810	678,162
- 세액공제	(1,150,099)	(1,166,844)
-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447,343)	4,359
-기타(세율차이 등)	509,517	153,900
법인세비용	6,658,355	4,519,581
유효세율	21.51%	16.68%

(4)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천원)

구분	순액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당기말		
				순액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매출채권	224,679	(18,065)	-	206,614	206,614	-
대손충당금	111,557	(108,919)	-	2,638	2,638	-
재고자산	360,686	(145,897)	-	214,789	214,789	-
토지	(2,746,861)	-	-	(2,746,861)	-	(2,746,861)
유형자산	(738,615)	233,083	-	(505,532)	-	(505,532)
일시상각충당금	(11,291)	(2,812)	-	(14,103)	-	(14,103)
정부보조금	11,291	2,812	-	14,103	14,103	-
무형자산	175,717	(175,717)	-	-	-	-
회원권	171,011	-	-	171,011	171,011	-
확정급여부채	466,482	213,802	(85,349)	594,935	594,935	-
유급휴가충당부채	-	178,896	-	178,896	178,896	-
반품충당부채	390,671	276,794	-	667,465	667,465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419,467)	322,667	-	(96,800)	-	(96,800)
매도가능금융자산	(5,691)	-	(4,615)	(10,306)	-	(10,306)
기타	545,594	(435,550)	-	110,044	110,044	-
상계 전 법인세자산(부채)	(1,464,237)	341,094	(89,964)	(1,213,107)	2,160,495	(3,373,602)
상계효과	-			-	(2,160,495)	2,160,495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1,464,237)			(1,213,107)	-	(1,213,107)

②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전기말		
				순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매출채권	254,788	(30,109)	-	224,679	224,679	-
대손충당금	85,874	25,683	-	111,557	111,557	-
재고자산	432,499	(71,813)	-	360,686	360,686	-
토지	(1,875,533)	(187,553)	(683,775)	(2,746,861)	-	(2,746,861)
유형자산	(638,155)	(100,460)	-	(738,615)	-	(738,615)
일시상각충당금	(18,698)	7,407	-	(11,291)	-	(11,291)
정부보조금	18,698	(7,407)	-	11,291	11,291	-
무형자산	234,396	(58,679)	-	175,717	175,717	-
회원권	166,844	4,167	-	171,011	171,011	-
확정급여부채	318,959	248,202	(100,679)	466,482	466,482	-
유급휴가충당부채	-	-	-	-	-	-
반품충당부채	326,339	64,332	-	390,671	390,671	-
준비금	(851,749)	432,282	-	(419,467)	-	(419,467)
매도가능금융자산	(3,658)	-	(2,034)	(5,691)	(5,691)	-
기타	270,322	275,272	-	545,594	545,594	-
상계 전 법인세자산(부채)	(1,279,074)	601,324	(786,488)	(1,464,237)	2,451,997	(3,916,234)
상계효과	-			-	(2,451,997)	2,451,997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1,279,074)			(1,464,237)	-	(1,464,237)

33.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지배기업지분순이익	24,304,637,751	17,430,848,40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837,412주	7,755,343주
기본주당이익	2,243	2,24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단위: 주)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9,744,877	7,411,000
신주발행	1,092,535	344,34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837,412	7,755,343

(2) 희석주당이익

지배기업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3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와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등은 없습니다.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등기이사 및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요 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780,600	870,192
퇴직급여	68,927	84,701
합 계	849,527	954,893

(3)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IBK기업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2017년말	2016년말
조동훈 외	차입금지급보증	49,971,796	56,033,059

35.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1) 보기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계약처	약정내용	한도금액	사용금액
IBK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37,840,000	23,111,870
	기한부신용장(*)	USD 1,900,000	USD 95,600
			EUR 99,380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2,000,000	-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3,500,000	2,000,000
KEB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2,500,000	1,500,000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500,000	5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1,704,000	1,704,000

(*) 동 한도와 관련하여 차입거래는 아니나 은행으로 부터 L/G 및 Shipper's Usance금액이 각각 USD 1,092,599.72 및 USD 564,570 실행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52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신한은행과 신용장개설 관련 USD 700,000을 한도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6.현금흐름표

(1) 당기와 전기 중 비현금항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퇴직급여	950,026	931,852
감가상각비	3,513,264	3,502,570
무형자산상각비	8,410	175,358
대손상각비(환입)	(389,202)	201,776
기타의대손상각비	118,508	-
유형자산처분손실	8,181	13,636
무형자산손상차손	-	108,475
무형자산처분손실	21,175	9,142
외화환산손실	-	24,733
법인세비용	6,658,355	4,519,581
이자비용	1,043,889	1,481,309
이자수익	(89,505)	(81,137)
유형자산처분이익	(64,498)	(1,499)
무형자산처분이익	(198,864)	(2,182)
외화환산이익	(21,924)	(5,296)
합계	11,557,815	10,878,318

(2)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토지재평가	-	2,825,516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15,440,380	8,028,320
장기금융상품의 단기금융상품대체	1,790,000	370,000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743,577	381,046
유형자산 미지급금으로 취득	-	863,206
건설중인자산 선급금대체	1,459,228	-

(3) 당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차입	상환	유동성대체	환율변동효과	기말
단기차입금	1,750,708	1,005,878	(1,018,863)	-	(8,165)	1,729,558
유동성장기차입금	8,028,320	-	(2,367,000)	15,440,380	-	21,101,700
장기차입금	21,154,550	500,000	-	(15,440,380)	-	6,214,170

(4) 당기중 지배기업은 하나바이오㈜를 설립취득하였으며, 지배력 획득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총 취득대가	(840,000)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1,20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입	360,000

37.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순부채(총부채에서 현금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제한 금액)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순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부채총계	60,253,246	59,107,721	63,711,271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1,388,813	568,072
순차입금(A)	48,505,682	57,718,908	63,143,199
자본총계(B)	81,297,527	55,484,617	33,728,631
부채비율(A/B)	59.7%	104.0%	187.2%

(2) 재무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외환위험, 가격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재무관리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무관리실은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①-1.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연결실체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	820,178	-	1,014,995	28,928	469,327
EUR	-	133,912	-	586,835	-	373,910

상기 환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①-2. 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82,018)	82,018	(101,499)	101,499
EUR	(13,391)	13,391	(58,684)	58,684
합계	(95,409)	95,409	(160,183)	160,183

② 이자율 위험
②-1. 보고기간말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전기초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3,785,000	2,297,000	3,497,000
금융부채	-	-	-
합계	3,785,000	2,297,000	3,497,000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12,951,107	1,398,909	578,878
금융부채	(29,045,428)	(30,933,578)	(39,271,583)
합계	(16,094,321)	(29,534,669)	(38,692,705)

②-2.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민감도 분석
기말 현재 이자율이 100베이시스포인트 변동한다면, 자본과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이 분석은 환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며, 저금리 금융

상품인 보통예금 12,939,732천원의 경우 변동이자율금융상품에는 포함하였으나 하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본 및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손익		자본	
	100bp상승	100bp하락	100bp상승	100bp하락
변동이자율금융상품	(290,341)	290,341	(290,341)	290,341

③ 유동성 위험 관리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요소를 포함한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1.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이내	3년이내	3년 초과
단기차입금	1,729,558	1,785,628	1,785,628	-	-
유동성장기차입금	21,101,700	21,572,904	21,572,904	-	-
장기차입금	6,214,170	6,565,270	192,412	5,335,366	1,037,49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858,457	16,858,457	16,858,457	-	-
기타유동금융부채	61,393	61,393	61,393	-	-
합 계	45,965,278	46,843,652	40,470,794	5,335,366	1,037,492

③-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이내	3년이내	3년 초과
단기차입금	1,750,708	1,813,926	1,813,926	-	-
유동성장기차입금	8,028,320	8,310,020	8,310,020	-	-
장기차입금	21,154,550	22,626,732	736,091	19,439,572	2,451,06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648,698	16,648,698	16,648,698	-	-
기타유동금융부채	100,853	100,853	100,853	-	-
합 계	47,683,129	49,500,229	27,609,588	19,439,572	2,451,069

③-3. 전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이내	3년이내	3년 초과
단기차입금	7,690,993	7,993,464	7,993,464	-	-
유동성장기차입금	5,191,320	5,400,074	5,400,074	-	-
장기차입금	26,389,270	28,524,043	1,067,387	22,776,775	4,679,88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222,864	12,222,864	12,222,864	-	-
기타유동금융부채	85,244	85,244	85,244	-	-
합 계	51,579,691	54,225,689	26,769,033	22,776,775	4,679,882

3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 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액을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차이조정
① 전환일인 2016년 1월 1일 현재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과거회계기준	92,254,932	59,983,977	32,270,955
조정액:			
감가상각 방법 변경(*1)	2,398,687	-	2,398,687
종업원급여 조정(*2)	-	496,634	(496,634)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방법 변경(*3)	(30,423)	-	
금융자산 양도거래 조정(*4)	4,128,436	4,128,436	-
대손충당금 조정(*5)	(3,672)	-	(3,672)
법인세효과(*6)	(1,308,058)	(897,776)	(410,282)
조정액 합계	5,184,970	3,727,294	1,457,67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97,439,902	63,711,271	33,728,631

②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당기순이익	포괄이익
과거회계기준	113,371,068	59,366,622	54,004,446	17,730,075	19,871,816
조정액:					
감가상각 방법 변경(*1)	2,477,340	-	2,477,340	78,653	78,653
종업원급여 조정(*2)	-	475,800	(475,800)	(395,196)	20,834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방법 변경(*3)	(49,031)	-	(49,031)	(27,012)	(18,608)
대손충당금 조정(*5)	-	-	-	3,672	3,672
법인세효과(*6)	(1,207,039)	(734,701)	(472,338)	40,656	(62,056)
조정액 합계	1,221,270	(258,901)	1,480,171	(299,227)	22,49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4,592,338	59,107,721	55,484,617	17,430,848	19,894,311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2)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방법 적용
(*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금융상품에 대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 회계처리 적용
(*4) 만기가 미도래한 매출채권 할인액을 차입금으로 계상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수취채권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고 그 이외의 수취채권은 유사한신용위험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집합적인 손상검토를 수행한 후 발생된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
(*6) 감가상각 방법 변경, 종업원급여 조정, 대손충당금 조정 등에 따른 법인세 효과

(3)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수입, 법인세부담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제회계기준 하의 현금흐름표는 과거회계기준 하의 현금흐름표와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1 기 반기 2018년 06월 30일 현재

제40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39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38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18연도 (제41기 반기)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15연도 (제38기)
자 산				
Ⅰ.유동자산	73,414,100,786	78,205,355,807	60,475,843,095	52,989,371,470
현금및현금성자산	2,948,502,849	11,747,563,525	1,388,812,847	568,072,28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245,302,910	43,031,153,635	38,620,814,828	34,805,979,528
기타유동금융자산	6,255,673,448	3,578,677,982	1,781,812,953	3,145,408,536
기타유동자산	274,917,387	578,026,232	657,768,037	84,118,996
재고자산	19,440,181,679	19,269,934,433	18,026,634,430	14,385,792,123
단기투자자산	249,522,513	-	-	-
Ⅱ.비유동자산	68,567,840,753	62,992,590,496	54,116,495,241	44,450,530,413
장기투자자산	925,280,109	986,561,645	613,529,300	367,691,571
유형자산	46,513,873,618	46,653,103,569	49,663,626,628	40,608,548,140
무형자산	3,869,740,399	3,383,740,399	1,986,242,271	2,167,318,691
투자부동산	14,278,079,653	8,210,000,00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36,780,974	1,459,956,883	1,853,097,042	1,306,972,011
기타비유동자산	1,544,086,000	1,459,228,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	-	840,000,000	-	-
자산총계	141,981,941,539	141,197,946,303	114,592,338,336	97,439,901,883
부채				
Ⅰ.유동부채	41,447,521,896	48,712,869,792	34,095,106,121	34,065,873,9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697,026,783	16,858,457,362	16,648,698,401	12,222,863,773
단기차입금	1,226,219,075	1,729,557,703	1,750,708,020	7,690,993,301
유동성장기차입금	14,545,680,000	21,101,700,000	8,028,320,000	5,191,32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64,228,317	61,392,807	100,853,236	85,244,163
기타유동부채	3,528,678,587	2,736,010,518	2,400,068,397	2,430,355,868
반품충당부채	-	1,488,338,885	1,614,345,426	1,483,361,224
환불부채	2,012,426,811	-	-	-
당기법인세부채	3,373,262,323	4,737,412,517	3,552,112,641	4,961,735,651
Ⅱ.비유동부채	11,160,383,066	11,540,376,656	25,012,615,068	29,645,396,924
장기차입금	5,655,130,000	6,214,170,000	21,154,550,000	26,389,270,000
종업원급여부채	2,980,154,461	2,714,757,023	2,266,072,395	1,868,536,130
기타비유동부채	420,560,812	128,560,812	127,755,393	108,516,932
반품충당부채	-	1,269,781,387	-	-
환불부채	1,406,324,180	-	-	-
이연법인세부채	698,213,613	1,213,107,434	1,464,237,280	1,279,073,862
부채총계	52,607,904,962	60,253,246,448	59,107,721,189	63,711,270,904
자본				
Ⅰ. 자본금	6,059,270,000	6,059,270,000	4,872,438,500	3,705,500,000
Ⅱ. 자본잉여금	3,199,977,442	3,199,977,442	2,494,962,340	1,800,225,640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41,741,243	2,174,023,405	2,159,567,955	11,456,365
Ⅳ. 이익잉여금	77,973,047,892	69,511,429,008	45,957,648,352	28,211,448,974

자본총계	89,374,036,577	80,944,699,855	55,484,617,147	33,728,630,979
부채와자본총계	141,981,941,539	141,197,946,303	114,592,338,336	97,439,901,883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41 기 반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6월 30일 까지

제40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9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38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하나제약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18연도 (제41기 반기)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15연도 (제38기)
Ⅰ.매출액	74,310,322,779	139,331,265,576	124,534,998,807	108,942,199,007
제품매출액	73,333,338,126	137,577,221,745	123,033,596,780	107,265,001,477
상품매출액	976,984,653	1,754,043,831	1,501,402,027	1,677,197,530
Ⅱ.매출원가	24,188,132,512	44,953,699,223	40,622,785,477	37,452,887,310
제품매출원가	23,954,019,375	44,528,707,882	40,245,734,614	36,654,360,899
상품매출원가	234,113,137	424,991,341	377,050,863	798,526,411
Ⅲ.매출총이익	50,122,190,267	94,377,566,353	83,912,213,330	71,489,311,697
Ⅳ.판매비와관리비	34,360,817,685	62,440,322,874	60,241,534,727	56,048,172,766
Ⅴ.영업이익	15,761,372,582	31,937,243,479	23,670,678,603	15,441,138,931
Ⅵ.영업외수익	(1,573,001,969)	(969,229,810)	(1,720,249,605)	(3,310,359,102)
1. 금융수익	83,144,993	202,494,672	209,259,038	209,325,695
2. 금융원가	571,412,680	1,081,800,589	1,635,294,477	2,152,469,732
3. 기타수익	29,227,931	267,732,769	6,243,425	31,627,784
4. 기타비용	1,113,962,213	357,656,662	300,457,591	1,398,842,849
Ⅷ.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188,370,613	30,968,013,669	21,950,428,998	12,130,779,829
Ⅸ.법인세비용	2,749,272,642	6,658,354,972	4,519,580,596	7,219,423,845
Ⅹ.당기순이익	11,439,097,971	24,309,658,697	17,430,848,402	4,911,355,984
Ⅺ.기타포괄손익	-	281,789,494	2,463,462,566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67,334,044	315,350,976	-
재평가잉여금	-	-	2,141,741,243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455,450	6,370,347	-
Ⅻ.당기총포괄손익	11,439,097,971	24,591,448,191	19,894,310,968	4,911,355,984
ⅩⅢ.기본주당이익	944	2,243	2,248	930

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41 기 반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6월 30일 까지

제40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9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38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하나제약 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38기	2015. 1. 1.	2,575,000,000	1,121,925,640	6,649,615,623	15,206,719,279	25,553,260,542
	IFRS전환효과	-	-	-	8,095,835,981	8,095,835,981
	IFRS 재평가잉여금(간주원가)	-	-	(6,649,615,623)	-	(6,649,615,623)
	2015. 1. 1.	2,575,000,000	1,121,925,640	-	23,302,555,260	26,999,480,900
	당기순이익	-	-	-	4,911,355,984	4,911,355,98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11,456,365	-	11,456,365
	재평가잉여금	-	-	-	-	-
	총포괄이익	-	-	11,456,365	4,911,355,984	4,922,812,349
	유상증자	1,130,500,000	678,300,000	-	-	1,808,800,000
	배당금	-	-	-	(2,462,270)	(2,462,270)
	소유주와의 거래	1,130,500,000	678,300,000	-	(2,462,270)	1,806,337,730
	2015. 12.31	3,705,500,000	1,800,225,640	11,456,365	28,211,448,974	33,728,630,979
39기	2016. 1. 1.	3,705,500,000	1,800,225,640	11,456,365	28,211,448,974	33,728,630,979
	당기순이익	-	-	-	17,430,848,402	17,430,848,40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15,350,976	315,350,97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6,370,347	-	6,370,347
	재평가잉여금	-	-	2,141,741,243	-	2,141,741,243
	총포괄이익	-	-	2,148,111,590	17,746,199,378	19,894,310,968
	유상증자	1,166,938,500	694,736,700	-	-	1,861,675,200
	소유주와의 거래	1,166,938,500	694,736,700	-	-	1,861,675,200
	2016. 12.31	4,872,438,500	2,494,962,340	2,159,567,955	45,957,648,352	55,484,617,147
40기	2017. 1. 1.	4,872,438,500	2,494,962,340	2,159,567,955	45,957,648,352	55,484,617,147
	당기순이익	-	-	-	24,309,658,697	24,309,658,69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267,334,044	267,334,04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14,455,450	-	14,455,450
	총포괄이익	-	-	14,455,450	24,576,992,741	24,591,448,191
	유상증자	1,186,831,500	705,015,102	-	-	1,891,846,602
	배당금	-	-	-	(1,023,212,085)	(1,023,212,085)
	소유주와의 거래	1,186,831,500	705,015,102	-	(1,023,212,085)	868,634,517
	2017. 12.31	6,059,270,000	3,199,977,442	2,174,023,405	69,511,429,008	80,944,699,855
41기 (반기)	2018. 1. 1.	6,059,270,000	3,199,977,442	2,174,023,405	69,511,429,008	80,944,699,85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적용에 따른 조정(세후)	-	-	(32,282,162)	32,282,162	-
	2018. 1. 1. (조정후)	6,059,270,000	3,199,977,442	2,141,741,243	69,543,711,170	80,944,699,855
	당기순이익	-	-	-	11,434,734,642	11,434,734,64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총포괄이익	-	-	-	11,434,734,642	11,434,734,642
	유상증자	-	-	-	-	-
	배당금	-	-	-	(3,005,397,920)	(3,005,397,920)
	소유주와의 거래	-	-	-	(3,005,397,920)	(3,005,397,920)
	2018. 06. 30.	6,059,270,000	3,199,977,442	2,141,741,243	77,973,047,892	89,374,036,577

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41 기 반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6월 30일 까지

제40 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39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제38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하나제약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18연도 (제41기 반기)	17연도 (제40기)	16연도 (제39기)	15연도 (제38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1,739,856,733	25,387,498,318	12,463,934,804	7,875,191,807
1. 당기순이익	11,439,097,971	24,309,658,697	17,430,848,402	4,911,355,984
2. 비현금항목의 조정	5,471,246,158	11,558,243,406	10,896,782,954	14,632,216,419
3. 운전자본의 조정	(40,539,988)	(3,655,117,098)	(8,023,567,174)	(6,136,786,126)
매출채권의감소(증가)	(1,466,302,534)	(2,737,244,125)	(9,189,777,060)	(7,872,019,292)
미수금의 감소(증가)	334,054,210	(723,892,652)	1,005,362,725	(1,538,796,812)
선급비용의감소(증가)	3,430,225	2,019,539	(2,536,822)	(3,038,782)
선급금의 감소(증가)	400,381,231	(507,277,734)	(571,112,219)	9,803,755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93,150	-	-	-
반품제품회수권의 감소(증가)	(8,447,814)	-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70,247,246)	(1,243,300,003)	(3,640,842,307)	(372,418,562)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57,268,555)	444,719,546	574,967,161	1,256,042,801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90,729,104	(221,200,803)	3,836,424,600	2,009,787,748
선수금의 증가(감소)	70,102,074	17,067,445	10,512,796	5,469,231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230,000,000	-	-	-
예수금의 증가(감소)	151,348,230	78,235,614	67,573,403	42,875,953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341,217,765	240,639,062	(108,373,670)	603,696,063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592,244	36,966,054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143,774,846	130,984,202	1,144,503,636
환불부채의 증가(감소)	483,517,922	-	-	-
퇴직금의 지급	(382,353,830)	(291,906,900)	(456,741,880)	(719,936,800)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135,613,836	106,283,013	319,991,897	-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	-	-
유동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	-	-
미지급법인세의증가(감소)	-	-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	-	-	(703,892,865)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증가)	-	-	-	1,137,800

4. 법인세의 지급	(4,628,250,767)	(5,814,149,398)	(6,530,528,238)	(3,726,747,470)
5. 이자의 지급	(522,444,900)	(1,083,349,535)	(1,426,333,890)	(1,969,394,336)
6. 이자의 수취	20,748,259	72,212,246	116,732,750	164,547,33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397,569,941)	(14,018,201,685)	(9,309,544,284)	(4,305,455,772)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040,000,000	7,920,000,000	7,080,000,000	4,622,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1,720,000,000	1,740,000,000
기계장치의 처분	8,500,000	60,000,000	-	11,090,909
차량운반구의 처분	45,890,000	14,300,000	33,700,000	43,090,000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	28,260,000	-	-
회원권의 처분	39,000,000	630,909,090	166,841,300	116,363,637
보증금의 감소	29,772,800	109,763,128	109,038,890	230,791,316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4,560,000,000)	(7,910,000,000)	(5,382,000,000)	(4,220,000,000)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71,360,552)	-	-	-
토지의 취득	-	-	(1,467,565,340)	-
건물의 취득	-	(50,000,000)	(5,626,399,916)	-
구축물의 취득	-	-	(129,000,000)	-
기계장치의 취득	(1,121,438,460)	(737,956,403)	(1,451,928,999)	(2,182,039,569)
기타의유형자산의 취득	(449,796,167)	(565,709,915)	(466,237,754)	(608,263,538)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37,867,360)	(629,545,978)	(636,836,557)	(516,045,510)
투자부동산의 취득	(6,068,079,653)	(8,210,000,000)	-	-
회원권의 취득	(511,000,000)	(1,859,128,617)	(218,756,000)	(674,108,78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74,000,000)	(1,498,133,159)	(2,218,154,771)	(2,041,658,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53,961,831)	(237,433,577)	(360,085,329)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840,00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
보증금의 증가	(10,000,000)	(126,998,000)	(584,811,560)	(466,590,908)
장기투자증권의 감소		-	-	-
지배력상실에 따른 순현금흐름	(357,190,549)			
III.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0,336,057,945)	(1,010,545,955)	(2,333,649,960)	(3,170,818,280)
단기차입금의 차입	177,087,369	1,005,877,516	3,397,575,159	7,237,575,421
장기차입금의 차입	-	500,000,000	4,000,000,000	15,600,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316,278,182	220,421,418	531,286,308	1,130,363,597
유상증자	-	1,891,846,602	1,861,675,200	1,808,800,000
주주임원차입금의 차입	-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684,687,394)	(1,018,863,407)	(5,214,418,780)	(23,970,195,341)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7,115,060,000)	(2,367,000,000)	(1,857,080,000)	(944,84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	-	(4,540,640,000)	(2,225,160,000)
예수보증금의 감소	(24,278,182)	(219,615,999)	(512,047,847)	(1,804,899,687)
배당금의 지급	(3,005,397,920)	(1,023,212,085)	-	(2,462,270)
주주임원차입금의 상환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9,993,771,153)	10,358,750,678	820,740,560	398,917,755
V.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12,940,231,705	1,388,812,847	568,072,287	169,154,532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2,042,297	-	-	-

Ⅷ.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2,948,502,849	11,747,563,525	1,388,812,847	568,072,287

5. 재무제표 주석

제41(당)기 반기 2018년 6월 30일 현재
제40(전)기 반기 2017년 6월 30일 현재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하나제약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하나제약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여1978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와 발안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50백만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6,059백만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조동훈 외 특수관계인	9,445,152주	77.94%
기획재정부	492,454주	4.06%
기타	2,180,934주	18.00%
합계	12,118,540주	100.00%

종속기업인 하나바이오㈜가 2018년 5월 청산됨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결산월	당반기말		전기말		회사개요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하나바이오㈜	대한민국	12월	-	-	70%	840,000	의약품 제조업 外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및 제1109호가 처음 적용되었으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 관련 새로운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초 적용되는 기준서의 주요 영향입니다.

- 매출채권의 회수시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매출할인(수금할인)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변동대가로 파악하여 관련 금액을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
- 반품권이 부여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기존에 반품충당부채로 인식하던 부분(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는 각각 환불부채 및 반품제품회수권으로 인식(총액으로 재무상태표에 인식)
- 기존 채무 상품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던 저축보험의 경우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분류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입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 전에 유효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및 관련 해석서와 비교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서 2017년에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였으나 완료되지 않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른 영향은 없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상태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반기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자로 종료되는 반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반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공시금액	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반영전 금액
자산			
유동자산	73,414,101	(100,703)	73,313,398
기타유동자산(*1)	274,917	(100,703)	174,214
비유동자산	68,567,841	(84,858)	68,482,983
기타비유동자산(*1)	1,544,086	(84,858)	1,459,228
자산총계	141,981,942	(185,561)	141,796,381
부채			
유동부채	41,447,522	(444,218)	41,003,304

유동성반품충당부채(*1)(*2)	-	1,568,209	1,568,209
유동성환불부채(*2)(*3)	2,012,427	(2,012,427)	-
비유동부채	11,160,383	(84,858)	11,075,525
비유동반품충당부채(*1)(*2)	-	1,321,466	1,321,466
비유동환불부채(*2)	1,406,324	(1,406,324)	-
부채총계	52,607,905	(529,076)	52,078,829
자본			
이익잉여금	77,973,048	343,515	78,316,563
자본총계	89,374,037	343,515	89,717,552
자본총계 및 부채총게	141,981,942	(185,561)	141,796,381

(*1) 기존 순액으로 인식하던 반품충당부채 중 자산의 환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반품제품회수권(유동 및 비유동)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기존 순액으로 인식하던 반품충당부채 중 매출의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총액으로 환불부채(유동 및 비유동)를 인식하였습니다.
(*3) 변동대가에 해당하는 수금할인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공시금액	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반영전 금액
매출 (*)	74,310,323	343,515	74,653,838
매출원가	24,188,133	-	24,188,133
매출총이익	50,122,190	343,515	50,465,705
판매비와관리비	34,360,818	-	34,360,81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188,371	343,515	14,531,886
법인세비용	2,749,273	-	2,749,273
반기순이익	11,439,098	343,515	11,782,613
반기포괄순이익	11,439,098	343,515	11,782,613

(*) 변동대가에 해당하는 수금할인금액을 환불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의 세후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분류와 측정으로 인한 효과	32,282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에 따른 이익잉여금 변동	32,282
2018년 1월 1일 영향	32,28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기존 요건을 대부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금융자산의 기존 분류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은 금융부채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당사의 회계정책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 분류와 측정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 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 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

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에 공정가치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나)금융자산의 손상 참조)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최초 측정 범주와 2018년 1월 1일의 금융자산 집합의 각 구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새로운 측정 범주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940,232	12,940,2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3,031,154	43,031,154
기타유동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578,678	3,578,678
장기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_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86,562	986,5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459,957	1,459,957
금융자산 합계			61,996,583	61,996,583

②-2.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을 '기대신용손실

'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신용손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보다 일찍 인식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에서 손실충당금은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 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요구사항 적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3.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손상을 포함한 분류 및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금융자산 분류를 위한 사업모형의 결정
- 특정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및 이전 지정의 철회
-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특정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낮은 신용위험을 갖고 있다면 당사는 최초 인식일 이후 해당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새롭게 제·개정된 기준서와 해석서들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허용됩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기준서에 관하여 최근 연간 재무제표에 제공된 정보에 이어 다음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도입으로 인해, 정액으로 인식되던 운용리스료가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으로 바뀌면서 리스와 관련된 비용의 성격이 변하게 될 것 입니다.

①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당사는 법적 형식은 리스가 아니지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의해 리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면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약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정의를 적용할지,
-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당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계약에 대해 기존의 리스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실무적 간편법 적용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에 의해 리스로 식별된 계약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서 정의를 충족하는지 평가하지 않고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② 전환
리스이용자로서 당사는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완전 소급법
-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 계약에 일관되게 선택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2019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서 조정되고, 비교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하에서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들에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 시, 리스이용자는 다양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리스 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때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영업부문

(1) 영업부문의 식별
당사는 기업 전체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단일 영업부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업부문의 선택이나 영업부문의 보고부문으로의 통합과정없이 영업부문과 보고부문이 일치합니다.

(2) 지역에 대한 정보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지 역	당반기	전반기
국 내	74,109,794	66,367,704
해 외	200,529	136,447
합 계	74,310,323	66,504,151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역별 비유동자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 역	당반기말	전기말
국 내	64,661,694	58,246,844

상기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반기와 전반기 중 외부고객으로 부터 매출이 당사 총 매출액의 10% 이상인 주요고객은 없습니다.

5. 금융상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948,503	-	-	2,948,50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245,303	-	-	44,245,303
기타유동금융자산	6,255,673	-	-	6,255,673
단기투자자산	-	249,523	-	249,523
장기투자자산	-	925,280	-	925,28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36,781	-	-	1,436,781
합 계	54,886,260	1,174,803	-	56,061,063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6,697,027	16,697,027
단기차입금	-	-	1,226,219	1,226,219
유동성장기차입금	-	-	14,545,680	14,545,680
기타유동금융부채	-	-	64,228	64,228
장기차입금	-	-	5,655,130	5,655,130
합 계	-	-	38,188,284	38,188,284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	-	12,940,2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4	-	-	43,031,154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8	-	-	3,578,678

장기투자자산	-	986,562	-	986,5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7	-	-	1,459,957
합 계	61,010,021	986,562	-	61,996,583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6,858,457	16,858,457
단기차입금	-	-	1,729,558	1,729,558
유동성장기차입금	-	-	21,101,700	21,101,700
기타유동금융부채	-	-	61,393	61,393
장기차입금	-	-	6,214,170	6,214,170
합 계	-	-	45,965,278	45,965,278

(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47,744	-	-	47,744
이자비용	-	-	(525,280)	(525,280)
외화환산이익	3,432	-	906	4,338
외화환산손실	-	-	(10,277)	(10,277)
외환차익	2,468	-	11,715	14,183
외환차손	(1,048)	-	(34,808)	(35,856)
대손충당금환입	80,511	-	-	80,511
기타의대손상각비	(30,442)	-	-	(30,4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6,880	-	16,880
합 계	102,665	16,880	(557,744)	(438,199)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30,232	-	-	30,232
이자비용	-	-	(556,226)	(556,226)
외화환산이익	-	-	776	776
외화환산손실	(73)	-	(5,323)	(5,396)
외환차익	2,790	-	74,410	77,200
외환차손	(7,551)	-	(8,264)	(15,815)
대손충당금환입	453,938	-	-	453,938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세후)	-	3,957	-	3,957

합 계	479,336	3,957	(494,627)	(11,334)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단기투자자산	249,523	249,523
- 장기투자자산 (*1)	925,280	925,280
소계	1,174,803	1,174,80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2)		
- 현금및현금성자산	2,948,503	2,948,50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245,303	44,245,303
- 기타유동금융자산	6,255,673	6,255,67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36,781	1,436,781
소계	54,886,260	54,886,260
금융자산 합계	56,061,063	56,061,06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697,027	16,697,027
- 단기차입금	1,226,219	1,226,219
- 유동성장기차입금	14,545,680	14,545,680
- 기타유동금융부채	64,228	64,228
- 장기차입금	5,655,130	5,655,130
금융부채 합계	38,188,284	38,188,284

(*1)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장기투자자산(38,029천원)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근사치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1)	948,533	948,53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2)		

-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12,940,23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4	43,031,154
-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8	3,578,67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7	1,459,957
소계	61,010,021	61,010,021
금융자산 합계	61,958,554	61,958,55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858,457	16,858,457
- 단기차입금	1,729,558	1,729,558
- 유동성장기차입금	21,101,700	21,101,700
- 기타유동금융부채	61,393	61,393
- 장기차입금	6,214,170	6,214,170
금융부채 합계	45,965,278	45,965,278

(*1)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 등으로 측정한 금액(38,029천원)은 상기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근사치입니다.

(4)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단기투자자산	-	249,523	-	249,523
장기투자자산	-	887,251	-	887,251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수준2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단기투자자산(저축보험 등): 저축보험으로 공시이율 등을 근거로 측정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상계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없으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보유현금	5,917	500
원화예금	2,819,765	12,939,732
외화예금	122,821	-
합 계	2,948,503	12,940,232

7. 사용제한금융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은행명	사용제한내용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KEB하나은행	타점권	37,836	-
현금및현금성자산	중소기업은행	타점권	-	42,712
장기금융상품	중소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3,000	3,000
합 계			40,836	45,712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39,407,349	37,974,777
대손충당금	(334,174)	(449,805)
미수금	5,172,128	5,506,182
합 계	44,245,303	43,031,154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449,805	868,347
대손상각비(환입)	(80,511)	(422,292)
제각	(35,120)	(30,343)
기말금액	334,174	415,712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발생일 기준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3개월 이내	42,670,097	75,799	41,107,012	129,758
6개월 이내	1,332,013	3,042	1,737,773	4,890
9개월 이내	132,902	10,321	198,345	19,235
12개월 이내	148,987	26,568	83,421	13,339
12개월 초과	295,478	218,444	354,408	282,583
합 계	44,579,477	334,174	43,480,959	449,805

당사는 매출채권과 회수 관련하여 현금, 어음, 채권, 보증보험, 근저당 등을 담보 설정하고 있습니다.

9.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단기금융상품	6,200,000	-	3,550,000	-
장기금융상품	-	290,375	-	246,375
보증금	-	1,146,406	-	1,213,582
미수수익	55,673	-	28,678	-
합 계	6,255,673	1,436,781	3,578,678	1,459,957

10. 기타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145,276	-	545,657	-
선급비용	28,938	-	32,369	-
부가세대급금	-	-	93	-
반품제품회수권	100,703	84,858	-	-
장기선급금	-	1,459,228	-	1,459,228
합 계	274,917	1,544,086	578,119	1,459,228

11.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8,360,826	(41,998)	8,318,828	8,878,191	(384,294)	8,493,897
상품	188,982	-	188,982	263,478	(920)	262,558
재공품	7,646,606	(507,745)	7,138,861	6,817,107	(311,135)	6,505,972
원재료	3,120,347	(99,682)	3,020,665	3,368,498	(137,052)	3,231,446
부재료	334,611	(3,206)	331,405	335,535	(11,131)	324,404
저장품	481,473	(40,032)	441,441	494,683	(43,026)	451,657
합 계	20,132,845	(692,663)	19,440,182	20,157,492	(887,558)	19,269,934

당사는 당반기 중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692,663천원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12. 투자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말	전기말
단기투자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9,523	-
장기투자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25,280	-
	매도가능금융자산_채무증권	-	986,562
합 계		1,174,803	986,56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장부금액
<채무증권>		
한국제약협동조합	38,029	38,029
흥국 저축보험	476,699	525,403
롯데 저축보험	359,971	369,787
삼성 저축보험	240,635	241,584
합 계	1,115,334	1,174,803

(3) 당반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기초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적용에 따른 조정	986,562
취득금액	171,361
평가손익	16,880
기말금액	1,174,803

(4)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장부금액
<채무증권>		
한국제약협동조합	38,029	38,029
흥국 저축보험	408,468	449,230
롯데 저축보험	359,971	364,060
삼성 저축보험	137,506	135,243
합 계	943,974	986,562

(5)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기초금액	613,529

취득금액	353,962
평가손익	19,071
기말금액	986,562

13. 유형자산

(1) 당반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1)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합 계
기초장부가액	15,936,934	23,827,810	96,757	4,622,590	559,409	1,609,604	46,653,104
취득	-	-	-	1,121,438	137,867	449,796	1,709,101
감가상각비	-	(399,115)	(12,900)	(1,028,005)	-	(382,074)	(1,822,094)
처분	-	-	-	(2)	-	(43,196)	(43,198)
대체(*2)	-	-	-	59,736	(137,961)	95,186	16,961
기말장부가액	15,936,934	23,428,695	83,857	4,775,757	559,315	1,729,316	46,513,874
취득원가	15,936,934	31,286,583	459,203	28,799,502	559,315	10,004,249	87,045,786
감가상각누계액	-	(7,857,888)	(375,346)	(24,023,745)	-	(8,274,933)	(40,531,912)

(*1) 당사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장부금액은 재평가차액 2,825,51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증금으로부터 대체된 16,96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	합 계
기초장부가액	15,936,934	24,574,511	122,761	5,095,888	2,231,065	1,702,468	49,663,627
취득	-	50,000	-	737,956	629,546	565,710	1,983,212
감가상각비	-	(796,701)	(26,004)	(1,851,697)	-	(838,862)	(3,513,264)
처분	-	-	-	(3)	(28,260)	(17,980)	(46,243)
대체(*)	-	-	-	640,446	(2,272,942)	198,268	(1,434,228)
기말장부가액	15,936,934	23,827,810	96,757	4,622,590	559,409	1,609,604	46,653,104
취득원가	15,936,934	31,286,583	459,203	27,690,327	559,409	9,515,600	85,448,056
감가상각누계액	-	(7,458,773)	(362,446)	(23,067,737)	-	(7,905,996)	(38,794,952)

(*) 장기선급금으로 대체된 1,459,228천원 및 선급금으로부터 대체된 25,000천원이포함되어 있습니다.

(2) 토지에 대한 재평가의 적용

당사는 토지에 대한 후속측정을 재평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평가금액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입니다. 2016년말 재평가한 토지의 공정가치는 당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 2017년 3월 20일에 평가한 것을 근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은 2,825,516천원이며 법인세 효과 683,775천원을 제외한 2,141,741천원을 기

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재평가된 토지가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13,111,418천원입니다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종류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내용
유형자산	토지	15,936,934	49,988,000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시설자금 외
	건물	23,428,695			
	기계장치	4,775,757			
합계		44,141,386	49,988,000		

14.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기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회원권	개발비	회원권	합 계
기초장부가액	3,383,740	8,410	1,977,832	1,986,242
취득	511,000	-	1,859,129	1,859,129
상각	-	(8,410)	-	(8,410)
처분	(25,000)	-	(453,221)	(453,221)
기말장부가액	3,869,740	-	3,383,740	3,383,740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당반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회원권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며, 순공정가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순공정가치 및 사용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였습니다.

15. 투자부동산

당반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기초	8,210,000	-
취득	6,068,080	8,210,000
기말	14,278,080	8,210,000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으로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련 수익 및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사의 투자부동산은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으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전까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16. 차입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 EUR, JPY)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4.13%	1,000,000	1,000,000
	Usance		85,707 (EUR 66,080)	127,132 (EUR 99,380)
			103,614 (USD 92,372.5)	102,426 (USD 95,600)
			36,898 (JPY 36,360)	-
KEB하나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2.95%	-	500,000
합 계			1,226,219	1,729,558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내 역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3.37%	10,705,000	10,705,000
	중소기업시설자금	1%~4.14%	3,519,010	10,406,870
	온랜딩대출	2.43%	1,000,000	1,000,000
KEB하나은행	기업시설대출	3.70%	1,000,000	1,000,000
㈜우리은행	정책공사간접대출	3.07%	500,000	500,000
㈜신한은행	온랜딩대출	3.05%	2,000,000	2,000,000
한국산업은행	산업시설대출	3.27~3.70%	1,476,800	1,704,000
장기차입금 합계			20,200,810	27,315,870
유동성대체			(14,545,680)	(21,101,700)
합 계			5,655,130	6,214,170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유동
매입채무	6,899,725	7,351,884
미지급금	9,797,302	9,506,573
합 계	16,697,027	16,858,457

18.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유동
미지급비용	64,228	61,393

19. 기타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예수금	472,918	-	321,570	-
부가세예수금	2,583,056	-	2,241,838	-
선수금	242,705	-	172,603	-
선수수익	230,000	-	-	-
예수보증금	-	420,561	-	128,561
합 계	3,528,679	420,561	2,736,011	128,561

20.환불부채 및 충당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환불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환불부채_반품	1,668,912	1,406,324	-	-
환불부채_수금할인	343,515	-	-	-
반품충당부채	-	-	1,488,339	1,269,781

(*) 전기말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환불부채_반품에서 반품제품회수권을 차감한 순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1.납입자본

(1) 당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주	2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수	12,118,540주	12,118,540주
자본금	6,059,270,000원	6,059,270,000원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3,199,977	3,199,977

22.이익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1,113,825	813,285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211,561	211,561
	연구및인력준비개발금	400,000	1,733,334
미처분이익잉여금		76,247,662	66,748,228
합 계		77,973,048	69,506,408

(*) 상법상 당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재평가적립금	2,141,741	2,141,74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32,282
합 계	2,141,741	2,174,023

24. 매출액

(1) 수익의 구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제품매출	73,333,338	65,677,606
상품매출	976,985	826,545
합 계	74,310,323	66,504,151
한 시점에 이전되는 재화	74,310,323	66,504,151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재화	-	-

(2) 계약잔액
보고기간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계약자산은 없으며, 수취채권 및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당기초 (2018.01.01)
수취채권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9,073,175	37,524,972
계약부채(*)		
기타유동부채(선수금)	242,705	172,603

(*) 계약부채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선수취한 금액에 대한 부채입니다.

25.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1)제품매출원가	23,954,019	21,601,819
기초재고	8,493,897	9,224,469
당기제품제조원가	23,805,319	21,077,361
타계정대체	(26,370)	(98,354)
기말재고	(8,318,827)	(8,601,657)
(2)상품매출원가	234,114	218,612
기초재고	262,557	143,498
당기매입	161,500	271,723
타계정대체	(961)	(1,009)
기말재고	(188,982)	(195,600)
합 계	24,188,133	21,820,431

26.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16,204,127	13,768,934
퇴직급여	879,477	886,586
복리후생비	3,823,792	3,101,463
여비교통비	3,321,263	3,257,524
통신비	96,795	134,464
수도광열비	10,104	7,590
수선비	75,596	46,059
보험료	1,172,834	1,153,276
접대비	1,143,434	1,215,247
회의비	1,307,146	1,314,466
광고선전비	362,477	153,398
도서인쇄비	30,855	58,675
운반비	264,266	243,374
소모품비	673,226	605,089
세금과 공과	59,491	107,339
임차료 및 관리비	481,996	450,775
감가상각비	345,562	369,692
지급수수료	1,634,738	1,270,984
교육훈련비	308,501	321,962
차량유지비	143,006	142,992
대손상각비(환입)	(80,511)	(453,938)
수출경비	12,084	7,995
경상시험연구비	364,245	348,795
무형자산상각비	-	8,410
경상개발비	178,645	149,791
해외시장개척비	134,915	152,100
사무용품비	13,727	9,229
연구개발비	331,844	315,835
원료개발비	133,174	113,047
학술활동비	189,549	206,494
시장조사비	230,389	220,833
판매촉진비	514,071	577,815
합 계	34,360,818	30,266,295

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원재료 및 상품 등의 매입액	7,111,625	7,190,297
재고자산의 변동	(170,247)	(717,235)
종업원급여	21,075,272	18,064,120
여비교통비	3,539,978	3,529,903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822,094	1,726,689
소모품비	1,491,221	1,402,905
지급수수료	2,184,898	1,637,123
경상시험연구비	1,338,696	1,056,303
외주가공비	6,207,165	5,228,341
기타비용	13,948,248	12,968,280
합 계(*)	58,548,950	52,086,726

(*)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8. 종업원급여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업원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19,842,551	16,876,713
퇴직급여	1,232,721	1,187,407
확정급여형	508,545	489,071
확정기여형	724,176	698,336
합 계	21,075,272	18,064,120

(2) 보고기간 종료일 종업원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부채	2,939,596	2,677,791
장기종업원급여	40,558	36,966
합 계	2,980,154	2,714,757

(3) 보고기간일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급여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4,083,952	3,957,76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44,356)	(1,279,970)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2,939,596	2,677,791

② 확정급여부채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순확정급여부채	
	당반기	전기	당반기	전기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3,957,761	3,652,260	(1,279,970)	(1,386,188)	2,677,791	2,266,072
당기비용으로 인식(*):						
- 당기근무원가	446,930	886,015	-	-	446,930	886,015
- 이자원가(수익)	61,615	92,127	-	(28,116)	61,615	64,011
소 계	508,545	978,142	-	(28,116)	508,545	950,026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경험조정	-	(328,484)	-	-	-	(328,484)
- 재무적 가정변화에 의한 효과	-	(52,250)	-	-	-	(52,250)
- 인구통계적 가정변화에 의한 효과	-	-	-	-	-	-
- 사외적립자산의수익	-	-	-	28,051	-	28,051
소 계	-	(380,734)	-	28,051	-	(352,683)
기타:						
- 퇴직급여 지급액	(382,354)	(291,907)	135,614	106,283	(246,740)	(185,624)
기말금액	4,083,952	3,957,761	(1,144,356)	(1,279,970)	2,939,596	2,677,791

③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1,143,199	1,278,813
국민연금전환금	1,157	1,157
합계	1,144,356	1,279,970

29.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11,437	64,498
무형자산처분이익	14,000	198,864
잡이익	3,791	2,578

합 계	29,228	265,940
기타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245	1
무형자산처분손실	-	15,665
기부금	1,082,884	90,915
잡손실	391	955
기타의대손상각비	30,442	-
합 계	1,113,962	107,536

30.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47,744	30,232
외환차익	14,183	77,200
외화환산이익	4,338	77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6,880	-
금융수익 소계	83,145	108,208
금융원가		
이자비용	525,280	556,226
외환차손	35,856	15,815
외화환산손실	10,277	5,396
금융원가 소계	571,413	577,437

31. 법인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3,376,456	3,947,067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112,289)	(447,343)
소 계	3,264,167	3,499,724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514,894)	(361,980)
자본에 직접반영된 법인세비용	-	(1,263)
소 계	(514,894)	(363,243)
법인세비용	2,749,273	3,136,481

32.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11,439,755,588	10,970,118,66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2,118,540	9,744,877
기본주당이익	944	1,126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발행보통주식수	12,118,540	9,744,877
신주발행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2,118,540	9,744,877

(2) 희석주당이익

당사는 당반기말과 전반기말 현재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3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 영업거래 및 자금거래 등은 없습니다.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는 등기이사 및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요 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330,310	415,000
퇴직급여	33,913	55,279
합 계	364,223	470,279

(3)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중소기업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조동훈 외	차입금지급보증	42,156,624	49,971,796

34.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1) 보기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과의 차입한도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계약처	약정내용	한도금액	사용금액
중소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35,840,000	16,224,010
	기한부신용장(*)	USD1,900,000	USD 92,373
			JPY 36,360
			EUR 66,080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2,000,000	-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3,500,000	2,000,000
KEB하나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2,000,000	1,000,000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500,000	500,000
한국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등	1,476,800	1,476,800

(*) 동 한도와 관련하여 차입거래는 아니나 은행으로 부터 Shipper's Usance금액이 USD291,600 실행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48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35.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현금항목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퇴직급여	508,545	470,195
감가상각비	1,822,094	1,718,279
무형자산상각비	-	8,410
대손상각비(환입)	(80,511)	(453,938)
기타의대손상각비	30,442	-
유형자산처분손실	245	1
무형자산처분손실	-	15,665
외화환산손실	10,277	5,396
법인세비용	2,749,273	3,136,481
이자비용	525,280	556,226
이자수익	(47,744)	(30,232)

유형자산처분이익	(11,437)	(64,498)
무형자산처분이익	(14,000)	(198,86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6,880)	-
외화환산이익	(4,338)	(776)
합계	5,471,246	5,162,345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559,040	1,567,340
장기금융상품의 단기금융상품대체	130,000	180,000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137,962	646,582
건설중인자산 선급금대체	-	1,459,228

(3) 당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차입	상환	유동성대체	환율변동효과	기말
단기차입금	1,729,558	177,087	(684,687)	-	4,261	1,226,219
유동성장기차입금	21,101,700	-	(7,115,060)	559,040	-	14,545,680
장기차입금	6,214,170	-	-	(559,040)	-	5,655,130

(4) 당반기 중 종속회사인 하나바이오㈜의 청산으로 인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지배력 상실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총 처분대가(현금 수취 청산배당)	833,444
종속기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1,190,635)
지배력 상실에 따른 순 현금흐름	(357,191)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별도재무제표 기준)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2017년 3월 31일 최초 공시한 2016년 감사보고서의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정정신고 한 바 있으며, 본 정정사유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정대상 공시서류 : 2016년 12월 31일 및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나)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3월 31일

(다) 정정사유 : 매출 및 급여에 대한 기간귀속 오류에 따른 기재 정정

(라)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강조사항	(주1)	(주1)
기타사항	없음	(주2)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일자	2017년 3월 27일	2018년 3월 15일
재무상태표	(주3)	(주3)
손익계산서	(주4)	(주4)
자본변동표	(주5)	(주5)
현금흐름표	(주6)	(주6)
주석	(주7)	(주7)

(주1)
- 정정전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6년 3월 28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자산총계와 자본총계가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각각 2,159백만원과 1,584백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 오류로 인하여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83백만원과 575백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된 전년도 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

- 정정후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재작성

① 재고자산 과대계상 오류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6년 3월 28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자산총계와 자본총계가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각각 2,159백만원과 1,584백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 오류로 인하여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83백만원과 575백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② 매출 및 급여의 기간귀속 오류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7년 3월 27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매출 및 급여의 기간귀속 오류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의 내용을 재작성하였습니다.
매출 및 급여 기간귀속 오류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및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순자산은 각각 1,401백만원, 955백만원 및 1,090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은 446백만원 감소하고,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은 13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된 전년도 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

(주2)
- 정정후
우리는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 3월 27일자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강조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면서 우리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작성된 2016년도와 2015년도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주주총회가 2017년 3월 27일자로 최종 승인한 2016년 재무제표 및 2016년 3월 31일자로 최종 승인한 2015년 재무제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작성된 2016년 및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2017년 3월 21일자로 우리가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3)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목	제 39(당) 기		제 38(전) 기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정정 후
I. 유동자산	62,314,797	61,739,313	50,340,667	50,208,411
매출채권	36,289,701	35,266,873	26,565,927	26,164,385
이연법인세자산	759,696	1,207,038	1,038,772	1,308,058
자산총계	113,946,552	113,371,068	92,387,188	92,254,932
I. 유동부채	33,269,410	34,095,106	29,114,953	29,937,438
미지급금	8,902,078	9,727,774	5,068,864	5,891,349
부채총계	58,540,927	59,366,622	59,161,493	59,983,977
IV. 이익잉여금	39,246,868	37,845,688	21,070,354	20,115,613
자본총계	55,405,626	54,004,446	33,225,695	32,270,954
부채 및 자본총계	113,946,552	113,371,068	92,387,188	92,254,932

(주4)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목	제 39(당) 기		제 38(전) 기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전	정정 후
I. 매출액	125,156,284	124,534,999	108,254,865	108,942,199
제품매출액	123,639,869	123,033,597	106,602,495	107,265,001
상품매출액	1,516,414	1,501,402	1,652,370	1,677,198
III. 매출총이익	84,439,386	83,818,101	70,801,978	71,489,312
IV. 판매비와관리비	59,858,938	59,862,149	55,533,704	56,048,173
급여	26,309,527	26,312,738	21,034,778	21,549,247
V. 영업이익	24,580,448	23,955,952	15,268,273	15,441,139
VIII. 법인세차비용감전순이익	22,914,809	22,290,313	11,957,914	12,130,780
IX. 법인세비용	4,738,294	4,560,238	7,181,393	7,219,424
X. 당기순이익	18,176,514	17,730,075	4,776,521	4,911,356
XI.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원)	2,344	2,286	905	930

(주5) 자본변동표

(단위: 천원)

과목	정정 전		정정 후	
	이익잉여금	총 계	이익잉여금	총 계
2015. 1. 1. (전기초)	17,880,617	28,227,159	17,880,617	28,227,159
전기오류수정(주석3)	(1,584,322)	(1,584,322)	(2,673,898)	(2,673,898)
수정후자본	16,296,295	26,642,837	15,206,719	25,553,261
당기순이익	4,776,521	4,776,521	4,911,356	4,911,356
2015. 12. 31 (전기말)	21,070,354	33,225,695	20,115,613	32,270,954
2016. 1. 1. (당기초)	21,070,354	33,225,695	20,115,613	32,270,954
당기순이익	18,176,514	18,176,514	17,730,075	17,730,075
2016. 12. 31 (당기말)	39,246,868	55,405,626	37,845,688	54,004,446

(주6) 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과목	제 39(당) 기		제 38(전) 기	
	정정 전	정전 후	정정 전	정전 후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470,261	12,470,261	7,839,446	7,839,446
1. 당기순이익	18,176,514	17,730,075	4,776,521	4,911,356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10,409,778)	(9,963,339)	(2,757,587)	(2,892,422)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9,811,062)	(9,189,777)	(7,395,681)	(8,083,015)
유동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279,076	101,020	(826,892)	(788,862)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833,214	3,836,425	1,495,319	2,009,788

(주7) 주석
상기 (주3)부터 (주6)까지 기재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수정과 관련된 주석을 정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별도재무제표 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

사업연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41기 반기	매출채권	39,407,349	334,174	0.8
	미수금	5,172,128		
	합계	44,579,477	334,174	
제40기	매출채권	37,974,777	449,805	1.2
	미수금	5,506,182		
	합계	43,480,959	449,805	
제39기	매출채권	35,266,873	868,347	2.5
	미수금	4,222,289		
	합계	39,489,162	868,347	
제38기	매출채권	30,292,821	714,493	2.4
	미수금	5,227,652		
	합계	35,520,473	714,493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 분	41기 반기	40기	39기	38기
기초금액	449,805	868,347	714,493	895,533
대손상각비(환입)	(80,511)	(389,202)	201,776	3,672
제각	(35,120)	(29,340)	(47,922)	(184,712)
기말금액	334,174	449,805	868,347	714,493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잔액현황

(단위: 천원)

구분	41기 반기	40기	39기	38기
3개월 이내	42,670,097	41,107,012	38,241,858	28,134,442
6개월 이내	1,332,013	1,737,773	532,653	6,639,746
9개월 이내	132,902	198,345	166,266	146,108
12개월 이내	148,987	83,421	133,632	93,155
12개월 초과	295,478	354,408	414,753	507,022
합 계	44,579,477	43,480,959	39,489,162	35,520,473
대손충당금	(334,174)	(449,805)	(868,347)	(714,493)
차감계	44,245,303	43,031,154	38,620,815	34,805,980

당사는 매출채권과 회수 관련하여 현금, 어음, 채권, 보증보험, 근저당 등을 담보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별도재무제표 기준)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41기 반기	40기	39기	38기
제품	8,318,828	8,493,897	9,224,469	7,107,050
상품	188,982	262,558	143,498	148,142
재공품	7,138,861	6,505,972	5,142,936	4,340,088
원재료	3,020,665	3,231,446	2,804,938	1,863,771
부재료	331,405	324,404	283,572	272,012
저장품	441,441	451,657	344,363	273,862
미착품			82,858	380,867
합 계	19,440,182	19,269,934	18,026,634	14,385,792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3.7	13.6	15.7	14.8
재고자산회전율(회수)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2.5	2.4	2.5	2.6

(2) 재고자산 실사내용

일자	내용	실사방법
2016.01.08	2015년 기말 재고자산 실사	대주회계법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 실시
2017.01.10	2016년 기말 재고자산 실사	대주회계법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 실시
2018.01.05	2017년 기말 재고자산 실사	삼정회계법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 실시

2018.07.05	2018년 반기 재고자산 실사	자체적으로 실시

(3) 재고자산의 보유내역 및 평가내역

(기준일: 2018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8,360,826	(41,998)	8,318,828
상품	188,982	-	188,982
재공품	7,646,606	(507,745)	7,138,861
원재료	3,120,347	(99,682)	3,020,665
부재료	334,611	(3,206)	331,405
저장품	481,473	(40,032)	441,441
합 계	20,132,845	(692,663)	19,440,182

라. 수주계약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별도재무제표 기준)

(1)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948,503	-	-	2,948,50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245,303	-	-	44,245,303
기타유동금융자산	6,255,673	-	-	6,255,673
단기투자자산	-	249,523	-	249,523
장기투자자산	-	925,280	-	925,28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36,781	-	-	1,436,781
합 계	54,886,260	1,174,803	-	56,061,063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6,697,027	16,697,027
단기차입금	-	-	1,226,219	1,226,219
유동성장기차입금	-	-	14,545,680	14,545,680
기타유동금융부채	-	-	64,228	64,228
장기차입금	-	-	5,655,130	5,655,130
합 계	-	-	38,188,284	38,188,284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	-	12,940,2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4	-	-	43,031,154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8	-	-	3,578,678
장기투자자산	-	986,562	-	986,56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7	-	-	1,459,957
합 계	61,010,021	986,562	-	61,996,583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6,858,457	16,858,457
단기차입금	-	-	1,729,558	1,729,558
유동성장기차입금	-	-	21,101,700	21,101,700
기타유동금융부채	-	-	61,393	61,393
장기차입금	-	-	6,214,170	6,214,170
합 계	-	-	45,965,278	45,965,278

(나)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47,744	-	-	47,744
이자비용	-	-	(525,280)	(525,280)
외화환산이익	3,432	-	906	4,338
외화환산손실	-	-	(10,277)	(10,277)
외환차익	2,468	-	11,715	14,183
외환차손	(1,048)	-	(34,808)	(35,856)
대손충당금환입	80,511	-	-	80,511
기타의대손상각비	(30,442)	-	-	(30,4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16,880	-	16,880
합 계	102,665	16,880	(557,744)	(438,199)

②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30,232	-	-	30,232
이자비용	-	-	(556,226)	(556,226)
외화환산이익	-	-	776	776
외화환산손실	(73)	-	(5,323)	(5,396)
외환차익	2,790	-	74,410	77,200
외환차손	(7,551)	-	(8,264)	(15,815)
대손충당금환입	453,938	-	-	453,938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이익(세후)	-	3,957	-	3,957
합 계	479,336	3,957	(494,627)	(11,334)

(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단기투자자산	249,523	249,523
- 장기투자자산 (*1)	925,280	925,280

소계	1,174,803	1,174,80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2)		
- 현금및현금성자산	2,948,503	2,948,50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245,303	44,245,303
- 기타유동금융자산	6,255,673	6,255,67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36,781	1,436,781
소계	54,886,260	54,886,260
금융자산 합계	56,061,063	56,061,06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697,027	16,697,027
- 단기차입금	1,226,219	1,226,219
- 유동성장기차입금	14,545,680	14,545,680
- 기타유동금융부채	64,228	64,228
- 장기차입금	5,655,130	5,655,130
금융부채 합계	38,188,284	38,188,284

(*1)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장기투자자산(38,029천원)에 대하여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근사치입니다.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1)	948,533	948,53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2)		
- 현금및현금성자산	12,940,232	12,940,232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031,154	43,031,154
- 기타유동금융자산	3,578,678	3,578,67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59,957	1,459,957
소계	61,010,021	61,010,021
금융자산 합계	61,958,554	61,958,55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858,457	16,858,457
- 단기차입금	1,729,558	1,729,558
- 유동성장기차입금	21,101,700	21,101,700

- 기타유동금융부채	61,393	61,393
- 장기차입금	6,214,170	6,214,170
금융부채 합계	45,965,278	45,965,278

(*1)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 등으로 측정한 금 액(38,029천원)은 상기 내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근사치입니다.

(라)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천원)

구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단기투자자산	-	249,523	-	249,523
장기투자자산	-	887,251	-	887,251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수준2에 속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단기투자자산(저축보험 등): 저축보험으로 공시이율 등을 근거로 측정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41기 반기 (2018년도 반기)	삼정회계법인	주1)	해당사항 없음
제40기 (2017년도)	삼정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제39기 (2016년도)	대주회계법인	적정	주2)
제38기 (2015년도)	대주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주1) 제41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감사보고서의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재작성]

구분	내용
재고자산 과대계상 오류수정	- 회사는 2016년 3월 28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자산총계와 자본총계가 재고자산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각각 2,159백만원과 1,584백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재고자산 오류로 인하여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583백만원과 575백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출 및 급여의 기간귀속 오류수정	- 회사는 2017년 3월 27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매출 및 급여의 기간귀속 오류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의 내용을 재작성하였습니다. - 매출 및 급여 기간귀속 오류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 및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순자산은 각각 1,401백만원, 955백만원 및 1,090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은 446백만원 감소하고,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당기순이익은 13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1기 (2018년도 2분기)	삼정회계법인	2018년 반기검토	-	-
제40기 (2017년도)	삼정회계법인	연간 제무제표 감사 연간 연결재무제표 감사	90	896
제39기 (2016년도)	대주회계법인	연간 재무제표 감사	80	325
제38기 (2015년도)	대주회계법인	연간 재무제표 감사	67	315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 보수	비고
제40기 (2017년도)	2017.06.29	IFRS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용역	2017.07.01. ~ 2017.11.24	28	예일 회계법인
제40기 (2017년도)	2017.07.26.	비상장주식평가 용역	2017.07.26. ~ 2017.09.30	5	현대 회계법인
제41기 (2018년도)	2018.02.02	IFRS 9호, 15호 자문용역	2018.02.02. ~ 2018.03.26	20	성율 회계법인
제41기 (2018년도)	2018.04.24	세무자문용역	2018.04.24. ~ 2018.05.25	35	삼일 회계법인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17년 11월 28일 지정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6월 29일 예일회계법인과 IFRS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용역 계약을 맺어 약 4개월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에 대한 자문을 얻었고, 2017년 11월 3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수함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제40기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중요성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현황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약력 및 담당업무 등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이상국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생명약학 약학석사 ('85.03~'87.02)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87.01~'93.08)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소장('11.07~'13.07) Future Medicine 이사('17.07~현재)	없음	없음	-
조상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81.03~'85.02) 제28회 사법시험 합격('86.10)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10.8~'11.9)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13.05~현재) 주식회사 애경산업 사외이사('16.12~현재)	없음	없음	-

나. 주요 의결사항

이상국	남	1961.08.24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생명약학 약학석사 ('85.03~'87.02)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87.01~'93.08)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소장('11.07~'13.07) Future Medicine 이사('17.07~현재)	-	-	4개월	2021.03.29

조상수	남	1962.11.18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81.03~'85.02) 제28회 사법시험 합격('86.10)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10.8~'11.9)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13.05~현재) 주식회사 애경산업 사외이사('16.12~현재)	-	-	4개월	2021.03.29

(1)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등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2015.03.12	1. 제 37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 3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가결	-
2015.04.02	1. 기업 시설차입 대출의 건	가결	-
2015.05.04	1. 외환은행 앞 신규 차입에 관한 건	가결	-
2015.05.29	1. 종합통장대출 재약정 취급 건	가결	-
2015.06.24	1. 하나은행 할인어음 한도 일십억원 증액에 관한 건	가결	-
2015.08.14	1. 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15.09.01	1. 최동재 대표이사 보선에 관한 건	가결	-
2015.09.17	1. 산업운영자금 차입의 건	가결	-
2015.10.13	1. 승주CC 회원권 매각의 건	가결	-
2015.10.21	1. 운영자금대출 증액 재약정 취급의 건	가결	-
2015.11.18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건 2. 임시주주총회 안건 승인의 건	가결	-
2015.11.20	1. 임시주주총회 일자 변경의 건	가결	-
2015.12.04.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건	가결	-
2015.12.24	1. 성기조 차장대우, 김형윤 부장대우 학자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6.03.02	1. 기업공개 결의에 관한 건	가결	-
2016.03.17	1. 제38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가결	-
2016.04.15	1. KEB하나은행 앞 한도재약정에 관한 건	가결	-
2016.06.09	1. 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16.06.10	1. 태광CC 골프회원권 매각의 건	가결	-
2016.06.29	1. 하나은행 운전자금대출의 건	가결	-
2016.08.23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건	가결	-
2016.08.31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의결의 취소 건	가결	-
2016.09.08	1. 김승일 전무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6.09.22	1. 산업운영자금 조건변경의 건	가결	-
2016.09.29	1. 신주 발행의 건	가결	-
2016.10.07	1. 2016년 9월 29일 신주 발행의 건에 대한 정정의 건	가결	-
2016.11.03	1. 실권주 처리방법의 건	가결	-
2016.11.07.	1. 실권주 처리의 건	가결	-
2016.11.11	1. 운전자금대출 신규 약정의 건	가결	-
2016.12.07	1. 정재운 부사장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7.02.16	1. 김미선 이사 학자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7.03.09	1. 제39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3. 본점이전의 건	가결	-
2017.03.10	1. 자회사 설립의 건	가결	-
2017.03.13	1. 현금배당결정의 건	가결	-
2017.03.29	1. 최현식 부회장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7.03.31	1. 박세호 대리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7.04.28	1. 홍창익 이사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7.05.17	1. 상신공장 주요자산 매각의 건	가결	-
2017.05.18	1. 임시주주총회 취소의 건	가결	-
2017.05.30	1. 허석 부장대우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
2017.05.31	1. 오윤성 사원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
2017.06.09	1. 신주 발행의 건	가결	-
2017.06.13	1. 우리은행 기업기타운전자금 10억 상환 후 신규 차입에 관한 건 2. KEB하나은행 차입연장에 관한 건 3. KEB하나은행 차입에 관한 건	가결	-
2017.06.20	1.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의 건	가결	-
2017.07.06	1. 한현숙 사원 학자금 지급 부결의 건	가결	-
2017.07.10	1. 전세훈 차장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
2017.07.13	1. 실권주 처리의 건	가결	-
2017.07.28	1. (故) 최우현 대리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
2017.08.25	1. 임대목적의 부동산 취득의 건	가결	-
2017.08.28	1. 88CC 골프회원권 매각의 건	가결	-
2017.09.28	1. 산업운영자금 대환의 건	가결	-
2017.10.28	1. 황재웅 이사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
2017.11.03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의 건 2. 감사직무규정 제정의 건	가결	-
2017.11.23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17.12.20	1. 업무분장규정 제정의 건 2. 위임전결규정 제정의 건	가결	-
2018.01.26	1. 이사 선임에 관한 건	가결	-
2018.02.12	1.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 결의에 관한 건	가결	-
2018.02.19	1. 이윤하 대표이사 보선에 관한 건	가결	-
2018.02.26	1. 임대목적의 부동산 신축결정의 건	가결	-
2018.03.06	1. 심경택 차장대우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가결	-
2018.03.14.	1. 제40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가결	-
2018.03.15.	1. 현금배당결정의 건	가결	-

2018.03.28	1. 이찬규 부장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8.03.29	1. 떼제베CC 골프회원권 매각의 건	가결	-
2018.04.02	1. 송릿다 상무 학자금 지급에 관한 건	가결	-
2018.04.04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의 건	가결	-
2018.04.09	1. 증권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
2018.05.02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제정의 건	가결	-
2018.08.09	1. 고문관리규정 제정의건 2.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개정의 건	가결	-
2018.08.20	1. 신주발행 결의의 건	가결	-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2018.04.02	1. 송릿다 상무 학자금 지급에 관한 건	2/2	-
2018.04.04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의 건	2/2	-
2018.04.09	1. 증권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2/2	-
2018.05.02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제정의 건	2/2	-
2018.08.09	1. 고문관리규정 제정의건 2.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개정의 건	2/2	-
2018.08.20	1. 신주발행 결의의 건	2/2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이사의 선임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의해서 결정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습니다.

당사는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을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수행하며,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행이사회의 구성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활동분야 (담당업무)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의 관계
이윤하	대표이사	이사회	-	타인
조동훈	경영총괄	이사회	-	본인
조혜림	자금관리	이사회	-	형제
이상국	사외이사	이사회	-	타인
조상수	사외이사	이사회	-	타인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필요 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바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의거 감사의 권한, 책임,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감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정관	제 46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이사의 의무)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	내용

감사 직무규정	제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3. 이사회에서 감사에게 위촉한 업무 4.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5. 감독기관이 시달하거나, 대표이사가 의뢰하는 업무 제5조【감사의 권한】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비성,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입회 및 조서작성의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서류 등의 봉인 4.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관계임직원의 문책요구 5.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입증서류의 징구 및 피감사인의 확인서 청구 6. 형사범죄 혐의사항의 고발 및 고소 7. 기타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제6조【감사의 의무】 1.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과 총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성실,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기밀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을 위축 또는 침체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이사로부터 대차대조표(별지서식 제1호), 손익계산서(별지서식 제2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별지서식 제3호)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서식 제4호)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를 제출 받고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소정의 감사보고서(별지서식 제5호)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신현채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졸업('69.02) 제일은행 검사부장('69.01~'02.02) 하나제약 감사('15.12~현재)	없음	상근감사

(2)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경영층이 채택한 내부통제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수시감사 및 정기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과 기업 제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3)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감사 참석인원	가결 여부	비 고
2015.03.12	1. 제 37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 3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1/1	가결	-
2015.04.02	1. 기업 시설차입 대출의 건	1/1	가결	-
2015.05.04	1. 외환은행 앞 신규 차입에 관한 건	1/1	가결	-
2015.05.29	1. 종합통장대출 재약정 취급 건	1/1	가결	-
2015.06.24	1. 하나은행 할인어음 한도 일십억원 증액에 관한 건	1/1	가결	-
2015.08.14	1. 이사 선임의 건	1/1	가결	-
2015.09.01	1. 최동재 대표이사 보선에 관한 건	1/1	가결	-
2015.09.17	1. 산업운영자금 차입의 건	1/1	가결	-
2015.10.13	1. 승주CC 회원권 매각의 건	1/1	가결	-
2015.10.21	1. 운영자금대출 증액 재약정 취급의 건	1/1	가결	-
2015.11.18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건 2. 임시주주총회 안건 승인의 건	1/1	가결	-
2015.11.20	1. 임시주주총회 일자 변경의 건	1/1	가결	-
2015.12.04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5.12.24	1. 성기조 차장대우, 김형윤 부장대우 학자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6.03.02	1. 기업공개 결의에 관한 건	1/1	가결	-
2016.03.17	1. 제38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1/1	가결	-
2016.04.15	1. KEB하나은행 앞 한도재약정에 관한 건	1/1	가결	-
2016.06.09	1. 이사 선임의 건	1/1	가결	-
2016.06.10	1. 태광CC 골프회원권 매각의 건	1/1	가결	-
2016.06.29	1. 하나은행 운전자금대출의 건	1/1	가결	-
2016.08.23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6.08.31	1. 신주식 발행에 관한 의결의 취소 건	1/1	가결	-
2016.09.08	1. 김승일 전무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6.09.22	1. 산업운영자금 조건변경의 건	1/1	가결	-
2016.09.29	1. 신주 발행의 건	1/1	가결	-
2016.10.07	1. 2016년 9월 29일 신주 발행의 건에 대한 정정의 건	1/1	가결	-
2016.11.03	1. 실권주 처리방법의 건	1/1	가결	-
2016.11.07	1. 실권주 처리의 건	1/1	가결	-
2016.11.11	1. 운전자금대출 신규 약정의 건	1/1	가결	-

2016.12.07	1. 정재운 부사장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7.02.16	1. 김미선 이사 학자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7.03.09	1. 제39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3. 본점이전의 건	1/1	가결	-
2017.03.10	1. 자회사 설립의 건	1/1	가결	-
2017.03.13	1. 현금배당결정의 건	1/1	가결	-
2017.03.29	1. 최현식 부회장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7.03.31	1. 박세호 대리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7.04.28	1. 홍창익 이사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7.05.17	1. 상신공장 주요자산 매각의 건	1/1	가결	-
2017.05.18	1. 임시주주총회 취소의 건	1/1	가결	-
2017.05.30	1. 허석 부장대우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1/1	가결	-
2017.05.31	1. 오윤성 사원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1/1	가결	-
2017.06.09	1. 신주 발행의 건	1/1	가결	-
2017.06.13	1. 우리은행 기업기타운전자금 10억 상환 후 신규 차입에 관한 건 2. KEB하나은행 차입연장에 관한 건 3. KEB하나은행 차입에 관한 건	1/1	가결	-
2017.06.20	1.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 증대의 건	1/1	가결	-
2017.07.06	1. 한현숙 사원 학자금 지급 부결의 건	1/1	가결	-
2017.07.10	1. 전세훈 차장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1/1	가결	-
2017.07.13	1. 실권주 처리의 건	1/1	가결	-
2017.07.28	1. (故) 최우현 대리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1/1	가결	-
2017.08.25	1. 임대목적의 부동산 취득의 건	1/1	가결	-
2017.08.28	1. 88CC 골프회원권 매각의 건	1/1	가결	-
2017.09.28	1. 산업운영자금 대환의 건	1/1	가결	-
2017.10.28	1. 황재웅 이사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1/1	가결	-
2017.11.03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의 건 2. 감사직무규정 제정의 건	1/1	가결	-
2017.11.23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의 건	1/1	가결	-
2017.12.20	1. 업무분장규정 제정의 건 2. 위임전결규정 제정의 건	1/1	가결	-
2018.01.26	1. 이사 선임에 관한 건	1/1	가결	-
2018.02.12	1. 유가증권시장 기업공개 결의에 관한 건	1/1	가결	-
2018.02.19	1. 이윤하 대표이사 보선에 관한 건	1/1	가결	-
2018.02.26	1. 임대목적의 부동산 신축결정의 건	1/1	가결	-
2018.03.06	1. 심경택 차장대우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1/1	가결	-
2018.03.14	1. 제40기 재무제표 최종 승인의 건 2.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정의 건	1/1	가결	-
2018.03.15	1. 현금배당결정의 건	1/1	가결	-
2018.03.28	1. 이찬규 부장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8.03.29	1. 떼제베CC 골프회원권 매각의 건	1/1	가결	-

2018.04.02	1. 송릿다 상무 학자금 지급에 관한 건	1/1	가결	-
2018.04.04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의 건	1/1	가결	-
2018.04.09	1. 증권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1/1	가결	-
2018.05.02	1.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제정의 건	1/1	가결	-
2018.08.09	1. 고문관리규정 제정의건 2.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개정의 건	1/1	가결	
2018.08.20	1. 신주발행 결의의 건	1/1	가결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조동훈	본인	보통주	4,086,826	33.72	4,086,826	33.72	-
조예림	형제	보통주	1,846,579	15.24	1,846,579	15.24	-
조혜림	형제	보통주	1,778,011	14.67	1,778,011	14.67	-
임영자	모	보통주	694,062	5.73	694,062	5.73	-
조경일	부	보통주	525,466	4.34	525,466	4.34	-
강성화	매형	보통주	128,552	1.06	128,552	1.06	-
강태경	조카	보통주	128,552	1.06	128,552	1.06	-
강은채	조카	보통주	128,552	1.06	128,552	1.06	-
박병주	조카	보통주	128,552	1.06	128,552	1.06	-
계		보통주	9,445,152	77.94	9,445,152	77.94	-
		우선주	-	-	-	-	-

(주) 기초는 2018년 1월 1일이며,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입니다.

나. 최대주주 주요경력

성 명 (생년월일)	직책	주요경력	비고
조동훈 (1980.09.26)	부사장	하와이 주립대 경영학과 졸업('04.05) 하나제약(주) 서울종병팀('06.10~'10.09) 하나제약(주) 경영본부장('10.10~'15.01) 하나제약(주) 서울사무소 부사장('15.01~현재)	-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유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5사업연도 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조동훈	4,086,826	33.72%	-
	조예림	1,846,579	15.24%	-
	조혜림	1,778,011	14.67%	-
	임영자	694,062	5.73%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51	80.95%	1,617,634	13.35%	-

주)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 수입니다.

4. 주식사무

구분	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첨단기술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제 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공고방법	제 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aph.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권 또는 주권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이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의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윤하	남	1958.10.03	대표이사	등기	상근	회사총괄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85.02) 일양약품㈜ 개발부, 라이센싱 업무담당('85.03~'87.07) CJ제일제당 상무, 제약개발, 연구기획('02.01~'05.01) 종근당㈜ 전무, 개발본부장('11.04~'13.08) 하나제약(주) 대표이사('18.02~현재)	-	-	5개월	2021.02.18
조동훈	남	1980.09.26	부사장	등기	상근	경영총괄	하와이 주립대 경영학과 졸업 ('04.05) 하나제약(주) 서울종병팀('06.10~'10.09) 하나제약(주) 경영본부장('10.10~'15.01) 하나제약(주) 서울사무소 부사장('15.01~현재)	4,086,826	-	11년 9개월	2020.03.30
조혜림	여	1979.07.24	이사	등기	상근	자금관리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졸업('05.06) 하나제약(주) 경리부('06.11~'15.11) 하나제약(주) 자금부('16.01~현재)	1,778,011	-	11년 9개월	2019.06.23
양동일	남	1961.12.25	부사장	미등기	상근	생산총괄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84.02) 대우약품공업(주)('90.04~'94.08) 명문제약(주)('94.10~'96.11) 하나제약(주) 생산본부장 이사대우('00.04~'01.05) 하나제약(주) 부사장('13.01~현재)	-	-	21년 9개월	-
조영우	남	1962.01.10	부사장	미등기	상근	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05.0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10.07~'16.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신기술전문위원 ('07.10~'11.12) 동아제약 수석연구원('86.12~'10.12) 대화제약 연구개발본부 본부장('11.01~'16.01) 하나제약(주) 연구본부장 전무이사('16.01~'18.03) 하나제약(주) 연구본부장 부사장('18.04~현재)	-	-	2년 7개월	-
박상돈	남	1960.07.25	전무이사	미등기	상근	종병 사업부장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87.02) 동아제약 도매부부장 역임('86.12~'12.12) 동아ST 종합병원 사업부장 상무('13.01~'15.12) 하나제약(주) 종병본부 전무이사('16.09~현재)	-	-	1년 11개월	-

송릿다	여	1964.12.28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연구기획	프랑스 Universite de Toulouse III 졸업('96.0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과학부 박사후 및 선임연구원 ('97.09~'03.02)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기획협력 실장('04.12~'14.09) 하나제약(주) 연구기획실 상무이사('17.06~'현재)	-	-	1년 1개월	-
석철희	남	1975.07.23	이사	미등기	상근	의원 1본부장	대전산업대학교 졸업('01.08) 하나제약(주) 의원1본부 본부장('18.04~현재)	-	-	6년	-
이동엽	남	1970.12.25	이사	미등기	상근	생산관리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졸업('96.04) 태평약제약 헬스케어사업장 제조파트장('99.11~'09.02) 신신제약 생산1부 부서장('09.04~'12.10) 하나제약(주) 생산관리 이사('14.09~현재)	-	-	3년 10개월	-
이정우	남	1975.11.20	이사	미등기	상근	의원 2본부장	한밭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01.02) 명문제약(주) 영업부('07.04~'12.04) 하나제약(주) 의원2본부 본부장('18.04~현재)	-	-	6년 3개월	-
이일기	남	1977.12.15	이사	미등기	상근	병원 본부장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3.02) 동신제약 병원사업부('04.10~'06.07) B.BRAUNKOREAPharmadiv('06.08~'08.07) 하나제약(주) 병원본부 본부장('18.04~현재)	-	-	10년	-
조계남	남	1964.01.10	이사	미등기	상근	도매 본부장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87.02) 건일제약(주) 도매관리 영남유통지원실장 ('90.03~'03.04) ㈜태준제약 도매관리 도매팀장('03.05~'08.08) 하나제약(주) 도매본부 본부장('13.02~'현재)	-	-	9년 11개월	-
강성구	남	1967.08.13	이사	미등기	상근	합성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졸업('93.02) ㈜신풍제약 중앙연구소 합성연구부('93.01~00.05) 하나제약(주) 합성연구실 이사('13.01~현재)	-	-	18년 2개월	-
김미선	여	1969.12.30	이사	미등기	상근	품질관리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92.02) 한국알피쉐러제제 개발부('96.09~'00.09) 미쓰비시 다나베파마코리아 품질보증 이사 ('09.10~'16.03) 하나제약(주) 품질관리팀 이사('16.04~현재)	-	-	2년 3개월	-
김용배	남	1964.11.01	이사	미등기	상근	공장관리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91.01) 우천제약(주) 총무부('92.01~'96.10) 하나제약(주) 공장관리부 관리이사('11.01~현재)	-	-	18년 6개월	-
박홍준	남	1974.01.16	이사	미등기	상근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98.02) ㈜종근당 약리안전실 책임연구원('97.12~'03.05) 코오롱제약(주) 의약연구소('11.07~'13.02) 하나제약(주) 개발부 이사('13.03~현재)	-	-	5년 4개월	-
윤홍주	남	1977.04.08	이사	미등기	상근	경영총괄	동의대학교 법학과 졸업('03.02) 하나제약(주) 관리부('02.12~'14.02) 하나제약(주) 경영본부 총괄팀장('14.03~현재)	-	-	15년 8개월	-
임종건	남	1960.05.30	이사	미등기	상근	총무관리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85.02) 금호건설 Dubai Canal Proj.('06.09~'08.09)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Luberef 현장('13.02~'16.07) 하나제약(주) 총무부 이사('18.04~현재)	-	-	4개월	-

현명한	남	1974.08.11	이사대우	미등기	상근	마케팅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졸업('99.02) 삼양사 연구원('99.09~'05.03) 건일제약 마케팅부('12.04~'17.04) 하나제약(주) 마케팅부 이사대우('17.05~현재)	-	-	1년 3개월	-
조예림	여	1979.07.24	이사대우	미등기	상근	글로벌 사업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심리학과 졸업('02.06) 하나제약(주) 마케팅부('02.09~'06.08) 하나제약(주) 개발부('06.09~'18.03) 하나제약(주) 글로벌사업팀('18.04~현재)	1,846,579	-	15년 11개월	-
최동재	남	1959.11.05	상임고문	미등기	상근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82.03) 일성신약개발 학술업무('84.07~'87.06) ㈜명문제약 개발학술부('87.12~'94.12) 약국운영('95.01~'99.05) 건일제약 개발학술임원('99.06~'08.01) 명인제약 개발학술임원('08.02~'15.07) 하나제약(주) 대표이사('15.09~'18.02) 하나제약(주) 연구개발 상임고문('18.04~현재)	-	-	2년 11개월	-
이석구	남	1937.03.06	상임고문	미등기	상근	상임고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62.03) 동화약품공업(주) 생산부장 역임('74.03~'86.02) 나누리약국 및 부천나눔약국 대표이사('96~'14) 하나제약(주) 공장관리부 상임고문('17.04~현재)	-	-	1년 3개월	-
이상국	남	1961.08.24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생명약학 약학석사 ('85.03~'87.02)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87.01~'93.08)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소장('11.07~'13.07) Future Medicine 이사('17.07~현재)	-	-	4개월	2021.03.29
조상수	남	1962.11.18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81.03~'85.02) 제28회 사법시험 합격('86.10)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10.8~'11.9)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13.05~현재) 주식회사 애경산업 사외이사('16.12~현재)	-	-	4개월	2021.03.29
신현채	남	1943.06.23	감사	등기	상근	감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졸업('69.02) 제일은행 검사부장('69.01~'02.02) 하나제약 감사('15.12~현재)	-	-	4개월	2021.03.29

나. 임원 겸직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직원의 현황

(기준일: 2018년 6월 30일) (단위: 명,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전체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					
사무	남	33	-	3	-	36	6.2년	1,004	28	-
	여	28	-	6	-	34	4.7년	448	13	-
생산	남	75	-	1	-	76	5.8년	1,464	19	-
	여	53	-	4	-	57	4.3년	894	16	-
영업	남	217	-	55	-	272	5.3년	7,109	26	-
	여	-	-	-	-	-	-	-	-	-
연구	남	31	-	1	-	32	5.4년	815	25	-
	여	33	-	1	-	34	3.5년	765	23	-
합 계		470	-	71	-	541	5.2년	12,499	150	-

주1) 등기임원 6명(등기이사 5명, 등기감사 1명)은 제외한 수치입니다.
주2) 1인평균급여액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지급액 기준입니다.
주3) 평균급여액 합계는 가중평균값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감사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포함)	5	2,000	-
감사	1	100	-

(2) 보수지급금액

(가) 이사・감사 전체

(단위: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6	299	49	-

주) 보수총액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급총액 기준입니다.

(나) 유형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290	96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6	3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3	3	-

주) 보수총액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급총액 기준입니다.

(3)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 내에서 직급과 업무를 고려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있으며, 해당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증권 대여 포함)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차입금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부동산 임대차 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배서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대여금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개최일자	안건	결의내용
2016년 정기주주총회	2016.03.31	제1호 의안: 2015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조경일 이사 보선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6년 임시주주총회	2016.06.24	제1호 의안: 조혜림 이사 보선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7년 정기주주총회	2017.03.27	제1호 의안: 2016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에 관한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이익잉여금 처분 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조동훈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8년 임시주주총회	2018.02.14	제1호 의안: 이윤하 이사 선임에 관한 건	원안대로 가결
2018년 정기주주총회	2018.03.30	제1호 의안: 2017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에 관한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이익잉여금 처분 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정관 전체 변경에 관한 건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이사회운영규정 제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상국, 조상수 사외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신현채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7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8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사건	2018가단 8862 물품대금 등

소 제기일	2018.02.07
원고	하나제약 주식회사
피고	편안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누리의원 외 1명
사건 개요	피고 법인 폐업 후 외상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 법인 및 연대보증에 대한 소송진행
소송가액	45,193,872원
진행경과	1심 진행중 1. 피고 1(편안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누리의원)에 대하여 : 소송 진행중 2. 피고 2(이건욱) 대하여 : 화해전고결정(확정 안되었음)

주) 최종 소송결과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지만, 당사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세무조사 등

당사는 최근 5사업연도 이내에 2건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가 있으며,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가) 2015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구분	내용
조사기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기간	2015 . 10 ~ 2015 . 11
조사대상기간	2012 . 01 ~ 2014 . 12
조사사유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조사내용	-증빙없는 비용사용액, 접대성 경비의 변칙 회계처리 -사전약정 초과하는 매출할인액, 사용처 불분명한 상품권 구입 -대손요건 충족하지 못한 매출채권, 비연구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미사용 재료비 등
조치내용 (납부세액)	합계 4,680,227,558원 법인세 2,922,909,260원, 지방세 425,586,080원, 소득세(인정상여) 1,331,732,218원

주) 예상 고지세액과 실제 세액과의 차이 및 조기 세금 납부로 인한 감면 혜택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과 금액이 상이합니다.

(나)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구분	내용
조사기관	화성시 세정과
조사기간	2016 . 04 . 18
조사대상기간	2011 . 01 ~ 2015 . 12
조사사유	지방세 세무조사
조사내용	-차량 할부이자 취득과표 누락분 -2011년 ~ 2015년 사업장 면적 누락분
조치내용 (납부세액)	합계 4,358,900원 주민세(재산분) 575,250원, 차량취득세 2,405,600원, 가산세 1,378,050원

(2) 기타 법률 또는 제규정 위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5년이 경과되었으나, 2011년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구분	내용
조사기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기간	2011 . 07
조사대상기간	2006 . 01 ~ 2010 . 12
조사사유	지방세 세무조사

조사내용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약 582억원을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인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계상 - 전도금 지출에 대한 증빙 역시 법적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구비
조치내용 (납부세액)	-총 245억원 -법인세 228억원, 개인소득세 16억원

당사는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감하였고, 총 245억원(법인세 228억원, 개인소득세 16억원, 부가가치세 0.97억원)의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당사 및 경영진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기와 같은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구분	내용
회계처리 기준 확립	- 2011년부터 발생한 접대성 경비에 대해 접대비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내부규정 신설	- 내부규정(현금지출관리규정 및 법인카드 사용규정)을 통해 법적 증빙과 규정내의 사용분 외에는 현금과 법인카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음
교육 실시	- 2015년부터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제도의 시행으로 별도 CP담당자를 배정하여 영업사원들의 정기적 교육 및 내부통제를 통해 허용가능한 금품류 제공행위를 규정함

이후 2011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前 대표이사인 조경일, 전영실, 허인구 등 3인은 2016년말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8년 5월 30일 2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동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2심 판결]

구분	세부내용
사건	2017노3586
피고인	1. (前)대표이사 조경일 2. (前)대표이사 전영실 3. (前)대표이사 허인구 4. 하나제약주식회사
공소사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변칙 회계처리

<table>
<tr><td>사건개요
및 결과</td><td>2011년에 있었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기소건으로 재판결과는 다음과 같음

1.범죄사실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하나제약(주)</td><td>(前)대표이사인 조경일, (前)대표이사 전영실, (前)대표이사 허인구는 하나제약 주식회사 업무에 관하여 국세인 법인세 5,044,385,000원 및 부가가치세 27,272,000원 등 총 5,071,657,000원을 포탈함</td></tr><tr><td>조경일 외 2인</td><td>2008년 부터 2011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금원을 불상의 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지출결의서 혹은 경비청구서 등의 장부를 거짓 기장하고 허위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등,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인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누락함으로써 국세인 법인세 합계 7,652,038,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8,362,000원 등 총 7,680,400,000원을 포탈함</td></tr></table>
2. 근거법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 조세범처벌법위반

3. 판결 주문
1)하나제약주식회사: 형의 선고유예(형의 확정)
2)피고인 전영실, 허인구: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형의 확정)
3)피고인 조경일: 징역3년, 집행유예4년, 벌금(77억)(대법원 상고 진행 중)

4. 양형사유
1)추징세금을 납부하여 세입의 감소가 회복됨
2)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td></tr>
</table>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납입일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보통주)	2017.07.17	운영자금	1,899	운영자금	1,899	-
유상증자 (보통주)	2016.11.07	운영자금	1,867	운영자금	1,867	-
유상증자 (보통주)	2015.12.10	운영자금	1,809	운영자금	1,809	-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파.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